

별 책 2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현철 · 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

Kang, Hyun-Cheol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0. 10. 31.

목 차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3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13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	30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0
(2) 검역법	41
(3) 결핵예방법	42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3
(5) 공중위생관리법	45
(6) 국민건강보험법	48
(7) 국민건강증진법	52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4
(9)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56
(10) 국민연금법	57
(11) 기초노령연금법	63
(12) 노인복지법	65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9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84
(15) 모자보건법	101
(16) 보건의료기본법	106
(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107
(18) 사회복지사업법	108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11

(2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3
(21) 식품위생법	125
(2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3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55
(24) 아동복지법	156
(25) 암관리법	164
(26) 약사법	165
(27) 영유아 보육법	203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6
(29) 의료기기법	210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26
(31) 의료법	230
(3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40
(3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42
(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45
(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55
(36) 장애인복지법	257
(37) 전염병예방법	262
(38) 정신보건법	269
(39) 지역보건법	273
(40) 혈액관리법	274
(41) 화장품법	277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81
(43) 가축전염병예방법	283
(44) 농산물 품질관리법	286
(45) 비료관리법	288
(46) 사료관리법	293

(47)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297
(48) 수산동식물 질병관리법	299
(49) 수산물품질관리법	300
(50) 식품산업진흥법	303
(51) 인삼산업법	304
(52) 축산물가공처리법	309
(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8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9
(5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0
(5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2
(5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45
(58) 대기환경보전법	346
(5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363
(60) 먹는물관리법	364
(61) 소음·진동규제법	378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84
(63) 수도법	389
(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95
(65) 습지보전법	406
(66) 악취방지법	407
(67) 야생동·식물 보호법	409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14
(6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16
(70) 자연공원법	429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32
(7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439
(7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43

(7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53
(75) 토양환경보전법	454
(76) 폐기물관리법	457
(7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3
(78) 하수도법	476
(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5
(8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88
(81) 환경보건법	489
(8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90
(83) 환경영향평가법	492
3. 산림 분야 총괄표	494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496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6
(2) 사방사업법	497
(3) 산림보호법	497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8
(5) 산지관리법	501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505
(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08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511
1. 공정거래 분야 총괄표	511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513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1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16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20
(4) 소비자 기본법	523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527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27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28
(8) 제조물 책임법	531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3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33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53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544
(1) 계량에 관한 법률	544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46
(3) 광산보안법	552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55
(5) 광업법	557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562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62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564
(9) 대외무역법	564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68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569
(12) 도시가스사업법	570
(1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586
(14)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법률	586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88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589

(17) 별정우체국법	592
(1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94
(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597
(2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597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99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603
(23) 산업디자인진흥법	604
(24) 산업발전법	604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605
(26) 산업표준화법	616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18
(28) 석탄산업법	624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627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629
(31) 수출보험법	630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631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33
(3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637
(35) 에너지법	637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639
(37)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643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645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647
(4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654
(41) 우편대체법	655
(42) 우편법	656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656

(44) 유통산업발전법	660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662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63
(4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667
(4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669
(49) 전기공사업법	670
(50) 전기사업법	673
(5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677
(52) 전력기술관리법	681
(53) 전시산업발전법	684
(54) 전원개발촉진법	684
(55) 전자거래기본법	686
(5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689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690
(5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692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692
(60) 집단에너지사업법	697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700
(6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700
(6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703
(6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708
(6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709
(6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718
(6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721

5. 금융 분야 총괄표	722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727
(1) 공사채등록법	727
(2) 공인회계사법	727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729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734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734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36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39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43
(9)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744
(10) 금융지주회사법	745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755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57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758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764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765
(16) 담보부사채신탁법	766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68
(18) 보험업법	775
(19) 상호저축은행법	797
(20) 신용보증기금법	803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04
(22) 신용협동조합법	810
(23) 여신전문금융업법	812

(24) 예금자보호법	819
(25) 은행법	822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32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03
(28) 전자금융거래법	905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10
(3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915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17
(3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19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건강검진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942호	2009.3.22	해당사항 없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	16	1	18	보건복지부	제8941호	2008.9.22	
3	검역법	1	·	·	·	1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7.7.12	
4	결핵예방법	1	·	1	·	2	보건복지부	제8728호	2008.12.22	
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2	·	·	·	2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8	공중위생관리법	·	·	6	1	7	보건복지부	제9026호	2008.7.1	
9	구강보건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10	국립암센터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11	국민건강보험법	·	·	8	5	13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12	국민건강증진법	·	1	·	1	2	보건복지부	제6983호	2009.1.1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	1	1	3	보건복지부	제9795호	2010.1.10	
14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1	1	·	2	보건복지부	제9431호	2009.8.7	
15	국민연금법	·	·	15	1	16	보건복지부	제9754호	2009.12.10	
16	기생충질환예방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7	기초노령연금법	·	·	2	1	3	보건복지부	제9617호	2009.10.2	
18	긴급복지지원법	·	·	·	·	·	보건복지부	제9751호	2009.5.28	해당사항 없음
19	노인복지법	·	2	14	2	18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4	3	7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0호	2008.4.18	해당사항 없음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029호	2008.6.29	해당사항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	·	10	1	21	보건복지부	제9717호	2009.11.28	
25	모자보건법	4	·	7	1	12	보건복지부	제9333호	2009.7.8	
2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840호	2009.12.29	해당사항 없음
27	보건의료기본법	1	·	·	·	1	보건복지부	제9034호	2008.9.29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	·	·	1	2	보건복지부	제9028호	2008.9.29	
29	보건환경연구원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30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법무부	제8655호	2008.1.18	해당사항 없음
31	사회보장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767호	2009.6.9	해당사항 없음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938호	2008.3.21	해당사항 없음
33	사회복지사업법	·	1	4	1	6	보건복지부	제9766호	2009.12.1	
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	·	9	1	15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3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	2	·	2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해당사항 없음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4	1	5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37	식품안전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121호	2008.12.14	해당사항 없음
38	식품위생법	9	·	12	2	23	보건복지부	제9692호	2009.8.7	
3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1	1	3	보건복지부	제8944호	2008.9.22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	·	1	1	4	보건복지부	제9025호	2009.3.29	
41	아동복지법	3	·	6	·	9	보건복지부	제9122호	2008.12.14	
42	암관리법	·	·	·	1	1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43	약사법	10	·	37	1	48	보건복지부	제9123호	2008.12.14	
4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432호	2009.8.7	해당사항 없음
45	영유아보육법	1	·	3	2	6	보건복지부	제9792호	2010.1.1	
4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9032호	2008.6.29	해당사항 없음
47	위생사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647호	2008.4.18	해당사항 없음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9	·	9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49	의료급여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50	의료기기법	3	·	24	1	28	보건복지부	제9185호	2009.6.27	
5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	7	1	9	보건복지부	제8650호	2008.4.18	
52	의료법	4	·	2	12	18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5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54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법률	3	1	·	1	5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5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1	1	2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14	1	15	보건복지부	제9030호	2008.5.26	
5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	2	2	보건복지부	제8974호	2008.3.21	
59	장애인복지법	·	·	6	1	7	보건복지부	제8652호	2008.4.18	
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9705호	2009.8.23	해당사항 없음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68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62	전염병예방법	7	·	5	1	13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3	정신보건법	·	·	8	1	9	보건복지부	제8939호	2009.3.22	
6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685호	2009.11.22	해당사항 없음
6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66	지역보건법	·	·	1	·	1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해당사항 없음
67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해당사항 없음
6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6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685호	2009.11.22	해당사항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7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028호	2008.9.29	해당사항 없음
7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644호	2008.10.18	해당사항 없음
74	한의약육성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75	혈액관리법	3	1	5	1	10	보건복지부	제9023호	2009.3.29	
76	화장품법	1	·	5	1	7	보건복지부	제8646호	2008.10.18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610호	2008.8.4	해당사항 없음
7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	·	·	2	보건복지부	제8940호	2008.9.22	
79	가축전염병예방법	·	·	2	1	3	농림수산 식품부	제9130호	2008.9.11	
80	농산물품질관리법	·	1	4	1	6	농림수산 식품부	제9759호	2009.12.10	
81	비료관리법	1	·	5	2	8	농림수산 식품부	제10017호	2010.8.5	
82	사료관리법	1	·	6	1	8	농림수산 식품부	제9432호	2009.8.7	
8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	4	1	5	농림수산 식품부	제9952호	2010.1.25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	2	1	3	농림수산 식품부	제8852호	2008.12.22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5	수산물품질관리법	1	.	4	.	5	농림수산 식품부	제10023호	2010.8.5	
86	식품산업진흥법	1	.	1	.	2	농림수산 식품부	제9951호	2010.1.25	
87	인삼산업법	1	.	11	.	12	농림수산 식품부	제9759호	2009.12.10	
88	축산물가공처리법	3	.	7	1	11	농림수산 식품부	제9665호	2009.11.9	
8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11	1	13	환경부	제9433호	2010.1.1.	
9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	7	1	11	환경부	제8852호	2008.2.29	
9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	.	.	3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	·	·	4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9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	·	1	2	환경부	제8654호	2007.10.17	
94	대기환경보전법	4	·	12	1	17	환경부	제9695호	2009.5.21	
9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	·	·	·	1	환경부	제9696호	2009.5.21	
96	먹는물관리법	1	3	31	1	36	환경부	제8952호	2008.9.22	
9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	·	0	환경부	제9037호	2009.1.1	해당사항 없음
98	소음·진동관리법 ¹⁾	2	·	5	1	8	환경부	제9770호	2010.7.1	

1)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은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법률 명칭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개정되어 2010. 7. 1.자로 시행 중임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5	1	1	8	환경부	제9772호	2009.12.10	
1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	환경부	제8371호	2007.4.11	해당사항 없음
101	수도법	1	.	8	1	10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1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11	1	12	환경부	제9697호	2009.5.21	
103	습지보전법	.	.	.	1	1	환경부	제8958호	2008.6.22	
104	악취방지법	1	.	2	1	4	환경부	제8957호	2008.3.21	
105	야생동·식물보호법	1	.	7	1	9	환경부	제8733호	2008.9.22	
10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	.	.	3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1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1	12	1	14	환경부	제8951호	2008.6.28	
108	자연공원법	.	.	1	.	1	환경부	제9313호	2008.12.31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09	자연환경보전법	·	·	·	·	0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4	·	1	5	환경부	제9685호	2009.11.22	
1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1	5	1	7	환경부	제9433호	2010.1.1	
1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9	·	1	11	환경부	제9433호	2010.1.1	
11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	·	·	0	환경부	제8612호	2008.2.4	해당사항 없음
11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	1	1	환경부	제10030호	2010.2.4	
115	토양환경보전법	·	2	4	1	7	환경부	제8469호	2007.11.18	
116	폐기물관리법	·	1	18	1	20	환경부	제8789호	2008.12.22	
1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	2	1	5	환경부	제8852호	2008.2.29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0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19	하수도법	·	·	16	1	17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1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	·	·	4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121	한국환경공단법	·	·	·	·	0	환경부	제9433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12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	·	·	0	환경부	제9433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123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	·	·	0	환경부	제9433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124	환경교육진흥법	·	·	·	·	0	환경부	제8949호	2008.9.22	해당사항 없음
12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	1	3	환경부	제9685호	2009.11.22	

1.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2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0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27	환경보건법	.	.	.	1	1	환경부	제8946호	2009.3.22	
1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1	2	3	환경부	제9590호	2009.7.1	
129	환경분쟁조정법	0	환경부	제8955호	2008.9.22	해당사항 없음
130	환경영향평가법	1		1	2	4	환경부	제9037호	2009.1.1	
131	환경정책기본법	0	환경부	제9037호	2009.1.1	해당사항 없음
	계	102	52	454	89	697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생산실적 보고(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매년 당해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별지 제27호 생산실적		보고
2	위생적 관리 및 영업 질서유지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법 제20조)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식품의약품안 전청장(대통령 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 을 포함함) 또 는 시장·군수· 구청장(특별시 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		별지 제5호 변경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허가증, 변경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서류(전 자문서 포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영업자 지위승 계에 의 한 변경 제외(시 행규칙 제 4 조 제 2 항 단서)
4	건강기능식품제조 업 폐업신고(법 제 5조 제2항, 시행규 칙 제7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	폐업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14호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허가증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5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법 제6조 제1 항, 시행규칙 제5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자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별지 제6호 영업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시설 배치도, 법 제 13조 제2항에 따른 교육	폐쇄조치(법 제35조제1항),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만원 이하의 벌 금(법 제44조)	
6	건강기능식품수입 업 변경신고(법 제 6조 제3항, 시행규 칙 제6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를 한 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지방식 품의약품안전 청장, 신고관청 을 달리하는 영 업소 소재지 변 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 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13호 건강기능식 품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영업신고증, 영업시설의 배치도,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 한 경우에 한정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영업자 지위승 계에 의 한 변경 제외(시 행규칙 제 6 조 제 2 항 단서)
7	건강기능식품수입 업 폐업신고(법 제 6조 제3항, 시행규 칙 제7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폐업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14호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허가증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법 제6조 제2 항, 시행규칙 제5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별지 제6호 영업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시설 배치도, 법 제 13조 제2항에 따른 교육 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건 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 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 문판매업에 한함)	폐쇄조치(법 제 35 조 제 1 항), 5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44조)	신고
9	건강기능식품판매 업 변경신고(법 제 제6조 제3항, 시행 규칙 제6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시장·군수· 구청장(신고관 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는 새로운 소		별지 제13호 건강기능식 품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영업신고증, 영업시설의 배치도, 보관시설 임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함),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10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조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15호 품목제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포함),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 제외),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법 제32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하의 벌금(법 제44조), 미변경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제1항)	
11	건강기능식품 품목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9조)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를 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18호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제조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유통기한의 연장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법 제32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미변경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제1항)	
12	건강기능식품 수입 신고(법 제8조, 시행규칙 제10조)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도착 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별지 제19호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우에는 즉시)	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운반용 포장 등으로 포장지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32조제1항)	
13	영업 양수신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양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28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4조)		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된 신고서 포함)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법제 32 조 제 1 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 45 조)	
14	법인합병신고(법제 11 조, 시행규칙 제 14 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 28 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법 제32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15	상속신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상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28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법 제32조제1항), 3년 이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16	품질관리인 선임신고(법 제12조 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29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명서류		신고
17	품질관리인 해임신고(법 제12조 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29호 품질관리인 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신고
18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22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29조의3)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6호의4 변경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 검역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 또는 착 륙한 때의 보고(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조)	선박, 항공기, 열차 및 자동차	해당 구역 관할 보건당국		-선박 : 별지 제1호 외항 선[도착·출발]통보서 -항공기 : 별지 제2호 항 공기도착통보서 -열차 및 자동차 : 별지 제 3호 열차·자동차 검역 통보(보고)서 검역전염병 환자나 사망 자 유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보고 -보고의 무자를 사람으 로 지정 할 필요 있음

(3) 결핵예방방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핵예방접종 실시 보고(법 제19조 제2 항, 시행규칙 제5조)	시장·군수·구 청장외의 자로서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매월	별지 제3호 결핵예방접종 실시현황보고		보고
2	결핵환자신고(법 제20조 제2항, 시 행규칙 제6조)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 무종사자	관할 보건소장	결핵환자를 진단하 였거나 결핵으로 인 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날부 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 결핵환자발생 (사망)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신고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근무실적 보고(법 제9조 제2항, 시행 규칙 제6조)	장학생으로 선정 되어 장학금을 지 급받은 자로서 의 사·치과의사 또 는 간호사의 국가 시험에 합격된 자	시·도지사	매월의 근무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근무실적보고서		보고
2	조건미이행 등 보 고(법 제9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장학생으로 선정 되어 장학금을 지 급받은 자로서 의 사·치과의사 또 는 간호사의 국가 시험에 합격된 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의 한 병역의무를 필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의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조 건을 이행하지 못	별지 제9호 조건이행유예 사유발생보고서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하게 된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의 수습을 받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때 또는 해소된 때 지체없이</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5) 공중위생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법 제 9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 의 소유자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2조 제1항)	보고(행 정 조사 적 성격)
2	공중위생영업신고 (법 제3조, 시행규 칙 제3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호 영업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법 제17조 제2 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 은 경우에만 해당함, 면허 증 원본(이용업·미용업 의 경우에만 해당함)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법 제10조), 영업 신고 위반시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 조제1항)	신고
3	공중위생영업변경 신고(법 제3조,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호 영업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6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신고 -영업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3조의2)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원 이하의 벌 금(법 제20조 제2항)	고증 전 산확인
4	공중위생영업폐업 신고(법 제3조 제2 항, 시행규칙 제3 조의3)	공중위생영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5호의2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2조 제1항)	신고
5	영업양수·도신고 (법 제3조의2, 시행 규칙 제3조의4)	양수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 계신고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 의 인감증명서[다만, 양 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 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사실확 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6	법인합병신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 제2항)	신고
7	상속신고	상속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 제2항)	신고

(6) 국민건강보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법 제84조 제1항)	사용자 또는 세대주	보건복지부장관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서류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보고·서류제출(행정조사적 성격적 성격)
2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법 제84조 제2항)	요양기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함)	보건복지부장관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또는 서류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보고·서류제출(행정조사적 성격)
3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보고(법 제84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 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법 제84 조 제4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필요한 자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5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신고/서류제출 (법 제82조 제1항)	사용자 및 세대주	국민건강 보험공단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 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 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또는 자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법명 및 법문상 으로는 신고라 는 용어 를 사용 하고 있 으나, 실질은 보고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 제 1항)	사용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부 터 14일 이내	별지 제5호의 사업장(기 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와 별 지 제3호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신고
7	사업장(기관)적용 변경신고(법 제6조 의2, 시행규칙 제4 조 제3항)	사용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14일 이내	별지 제5호의2 사업장(기 관)변경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 신고 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 호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를 함께 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신고
8	휴·폐업/합병/폐 쇄 등 신고(법 제6 조의2, 시행규칙 제	사용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14일 이내	별지 제5호의3 사업장탈퇴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에 별지 제4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조 제4항)				의2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와 사업장 탈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	(법 제99조 제2항)	
9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4호의2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신고
10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법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4호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신고

(7) 국민건강증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사항 보고(법 제28조)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를 한 자, 담배사 업법에 의한 담배 의 제조자 또는 수 입판매업자, 주세 법에 의하여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 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 는 자, 담배사업법 에 의한 지정소매 인 기타 담배를 판 매하는 자, 담배자 동판매기를 설치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4조 제2항)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20조의2)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보건복지부장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담배제조업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내역서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4조 제1항)	자료 제출(보고 적 성격)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급자의 고용비용, 지원금 사용내역 보 고(시행령 제26조)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자 로 채용하는 기업	보장기관(이 법 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매년	수급자의 고용비용, 지원 금의 사용내역		-보고 -법문상 피보고 자가 명 시되어 있지 아 니함 -법문상 정확한 보고 기 한 명시 되어 있 지 아 니함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 득·재산 및 건강 상태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법 제22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35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시장·군수· 구청장		군복무확인서·출입국사 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호 근로능력평가용 진 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 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 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소득·재산 신 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 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 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 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 기타 보건		자료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거주지역·세대의 구성변동신고(법 제37조)	수급자	관할 보장기관	지체없이	거주지역·세대 구성에 관 한 현저한 변동 사항		-신고 -‘현저한 변동’의 의미 불 명확함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급권자 사망신고 (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가족관계의 등록 에 관한 법률』 제 85조에 따른 사망	연계급여의 수급 권자가 가입하였 거나 가입한 연	1개월 이내	별지 제6호 사망경위신고서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신고의무자	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 금관리기관				
2	연계급여 수급권 발 생·변경·소멸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제출(법 제 26조 제1항)	사업자	연금관리기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 제1항)	자료 제출

(10) 국민연금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당연적용사업장 신 고(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당연적용사업 장 해당신고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사업장 탈퇴 신고 (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조)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 탈퇴 사실 증명서류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3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법 제21조 제1 항, 시행규칙 제13조)	가입기간 중의 소 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매년 5월 31일까지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소득세 법 제64 조에 따 라 지급 명세서 를 원천 징수 관 할세무 서장· 지방국 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 에게 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한 경우에 는 공단 에 신고 한 것으 로 봄
4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2호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5	가입자 내용변경신고(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변경사실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6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법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지역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변경된 소득신고 통지를 받은 자나 그 대리인	국민연금공단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 소득월액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지역가입자 등 내용변경신고(법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공단	변경사실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 별지 제1호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별지 제2호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8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등 신고(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6조)	노령연금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업무 종사일부터 15일 이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9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신고(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15일 이내	장애등급 구분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10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15일 이내	수급권 소멸 사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	국민연금공단	15일 이내	수급권 소멸 사실 또는 변경사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12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1조)	가입자 본인, 유족	국민연금공단		별지 제32호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 발생사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13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 신고(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2조)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변경사실/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사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1조)	신고
14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법 제1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54조 제1호)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별지 제6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법 제126조 제1항, 시행 규칙 제54조 제2호)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별지 제33호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16	자료제출(법 제122조)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 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 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 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 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서류나 자료	급여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지급 정지(법 제86 조 제1항), 50 만원 이하의 벌 금(법 제129조)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11) 기초노령연금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법 제7조 제1항)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국민연금공단)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서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법 제7조 제4항)	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수급권 상실신고(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국민연금공단)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1호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권 상실신고를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3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3	수급자 신상변경신고(시행령 제9조, 시	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의 인적사		-신고 -법적 근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8조)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민연금공단)	이내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거 필요함

(12) 노인복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실종노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39조의11 제2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의2 제1항)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법 제42조 제1항)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복지실시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사업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법 제39조의3 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법 제43조제1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3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제출(법 제42조 제2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5 현황보고서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33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6조)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별지 제13호 노인주거복 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 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기 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 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 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 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 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 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 정, 노인복지 주택, 노인요 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을 설치하거 나 운영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 조제2항), 신 고를 하지 아 니하고 양로 시설·노인 공동생활가	-신고 -양로시 설·노 인공동 생활가 정·노 인복지 주택의 미신고 설치· 운영자 에 대한 행정형 벌 규정 을 단일 화할필 요 있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7조)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35 조 제2항, 시행규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6호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 로시설, 노인	-신고 -노인요 양 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20조)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 구조내역서 각1부, 입소 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형벌 규정을 단일화할 필요 있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6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3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9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함), 사업 계획서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같음) 각 1부		
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3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0호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함),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함)		
8	노인학대 신고(법제39조의6 제2항)	누구든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료기관에서 의료 업을 행하는 의 료인, 노인복지시 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 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 폭력방지및피해 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 조의 규정에 의 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	수사기관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	실종노인 신고(법 제39조의10 제1항)	누구든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종노인(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 보호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의3)	신고
10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법 제39조의10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39조의10 제3항 제2호의 업무(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를 수행하는 기관		별지 제20호의12 실종노인 신상카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의2 제2항)	자료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변경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1호의2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의2 제2항)	신고
12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휴지신고(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휴지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1호 휴지신고서 시설(기관)의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의2 제2항)	-신고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름
13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장·군수·구청장	미리(폐지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1호 폐지신고서 시설(기관)의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노인전문병원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한 자			1부,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법 제61조의2 제2항)	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름
14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사항 변경신고(법 제40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변경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1호의2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의2 제2항)	신고
15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휴지신고(법 제40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휴지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1호 휴지신고서 시설(기관)의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의2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 시행규칙 제 30조 제1항)						
16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법 제40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 30조 제1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폐지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1호 폐지신고서 시설(기관)의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의2 제2항)	신고
17	양로시설 등 비용수납 신고(법 제 46조 제5항, 시행규칙 제33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미리	별지 제23호 비용수납신고서 비용의 산출내역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법 제43조 제1항)	-신고 -법상 피신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시행규칙상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피신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18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법 제46조 제7항, 시행규칙 제3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미리	별지 제25호 비용수납신고서 비용의 산출내역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법 제43조 제2항)	-신고 -법상 피신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시행규칙상 피신고자는 특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법 제60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	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9조)	
2	보수·소득 등 보 고/자료제출(법 제 61조 제1항, 시행 규칙 제42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보수·소득, 장기요양급 여를 받은 내용,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 용,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장기요양급 여의 전부 또 는 일부 제공 제한(법 제29 조 제2항), 지 정취소(법 제 3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9조)	보고/자 료 제출 (행정조 사적성격)
3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제출(법 제61 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 장 기요양급여를 받 은 자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 세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	장기요양급 여의 전부 또 는 일부 제공 제한(법 제29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 37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법 제32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4조)	재가장기요양급 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21호 재가장기요 양기관 설치신고서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 력을 갖춘 후 정관 1부(법 인만 제출), 위치도, 평면 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 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 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 하는 경우만 제출함), 시 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폐쇄명령(법 제37조제3항 단서)	-신고 -2명 이 상이 공 동으로 재가장 기요양 기관을 설치· 운영하 려는 경 우에는 각 구성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 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함), 일반현 황·인력현황 및 시설현 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사 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의료기 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 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 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함)		원의 연 명으로 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함(시행 규칙 제 24조 제 1항 제 2문)
5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변경신 고(법 제33조, 시행 규칙 제25조)	장기요양기관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3호 장기요양기 관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장기요양급여 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관할 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법인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신고 -장기요 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 가장기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표자, 입소 또는 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는 전산확인
6	장기요양기관 휴업신고(법 제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	장기요양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별지 제26호 휴업신고서 휴업의결서(법인만 제출) 1부,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는 전산확인
	장기요양기관 폐업	장기요양기관	시장·군수·	폐업 예정일 전	별지 제26호 폐업신고서	500만원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신고(법 제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		구청장	30일까지	폐업의결서(법인만 제출) 1부,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서류 등 제출(법 제43조)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취급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보고/자료 제출 (행정조사 적성격)
2	마약 수입보고(법	마약수입업자	식품의약품	수입한 날부터	별지 제35호 마약류수출	업무 또는 마	보 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9조, 시행규칙 제35호 제1항)		안전청장	10일 이내	입상황보고서(전자문서 로 된 보고서 포함) 마약 수입 증명서류	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 명 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 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69조 제1항)	(신고적 성격)
3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	수출입한 날부터	별지 제35호 마약류수출	업무 또는 마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출입보고(법 제 19조, 시행규칙 제 35조 제1항)	수출입업자	안전청장	10일 이내	입상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증명 서류	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69조 제1항)	(신고적 성격)
4	마약류생산(수출입)	마약류수출입업	식품의약품	매사업연도	별지 제37호 마약류생산	업무 또는 마	보고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실적 및 판매보고 서(법 제19조, 제23 조, 제25조, 시행규 칙 제35조 제3항)	자·마약류 제조 업자 또는 마약 류원료사용자	안전청장	종료후 2월 이내	(수출입)실적 및 판매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 고서 포함) 수출입에 관한 사항, 수 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	약류 사용의 진부 또는 일 부의 정지 명 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 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69조 제1항)	제출 (보고적 성격)
5	마약 등 생산완료보	마약류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생산 완료일부터	별지 제36호 생산완료보	업무 또는 마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법 제23조, 시행 규칙 제35조 제2항)		안전청장	10일 이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 고서 포함)	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4 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 1항), 1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64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69조 제1항)	(신고적 성격)
6	마약류 원료사용	마약류원료사용자	식품의약품	매 반기종료 후	별지 제38호마약류원료	업무 또는 마	보고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보고(법 제25조, 시행규칙 제36조)		안전청장	20일 이내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4 조 제1항), 2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 조 제1항),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 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69조 제1항)	제출 (보고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마약 도매보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마약류도매업자	허가관청	다음 달 1일까지	별지 제39호 마약도·소매 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 약판매(사용)보고서(전자문 서로 된 보고서 포함) 도매판매에 관한 사항	업무 또는 마 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4 조 제1항), 2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 조 제1항),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69조 제1항)	보고 (신고적 성격)
8	마약 소매보고(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7조)	마약류소매업자	약국 소재지 시·도지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9호 마약도·소매 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 약판매(사용)보고서(전자문 서로 된 보고서 포함)	업무 또는 마 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보고 (신고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소매 판매에 관한 사항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9	학술연구 사용보고(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8조)	마약류취급학술 연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매반기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40호 대마초 재배 및 연구현황 대마초 재배 및 연구현황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보고 -법률에 서는 대 마초 이 외의 마 약 사용 도 보고 하도록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대마초에 한 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10	대마재배자 보고 (법 제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8조)	대마재배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매년 2회(전반기 : 5월 31일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대마초 재배면적, 생산 현황, 수량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법 제42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11	대마폐기보고(법 제36조 제2항, 시 행규칙 제39조)	대마재배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폐기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2호 대마폐기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 고서 포함) 폐기 결과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 의 필요한 조 치(법 제42조 제2항), 1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64조)	-보고 -공무원 입회 하 에 폐기 및 확 인 필
12	사고마약류 신고 (법 제12조, 시행 규칙 제23조)	마약류취급자 또 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	허가관청(지방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22호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명령을 위반 하거나 보고 (제 43 조 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명령을 위 반하거나 허 위의 보고, 신 고 또는 기 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63 조제1항)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제 1항), 업무 또 는 마약류 사 용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 명령(법 제 44조 제1항)	
13	마약류 취급업무 휴 업신고(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마약류취급자허가증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14	마약류 취급업무 재개신고(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 재개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마약류취급자허가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신고
15	마약류 취급업무 폐업신고(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료(법 제69조 제1항)	
16	마약류 취급자 사망신고(법 제8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을 말함)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의2 사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신고
17	마약류 취급자 무능력신고(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후견인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의2 무능력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8	마약류 취급자 해산신고(법 제8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청산인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의2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신고
19	마약류 취급학술연구 종료신고(법 제8조 제3항 제4호,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관청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1호의2 학술연구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신고
20	마약류관리 인계신고(법 제33조 제2항)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	허가관청		관리 중의 마약류 인계 이유	-규정 위반 마약취급자 : 2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종사하는 의료 기관의 대표자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양도를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	
21	도난 등 사고발생 원료물질 신고(법 제51조,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48조)	원료물질취급자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48호 마약류 원료물질 거래 등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5) 모자보건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등(법 제15조의7 제1항)	산후조리업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1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 있음
2	임신 또는 분만 사실 보고(법 제8조 제2항)	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임신 또는 분만사실 보고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함)· 군수·구청장				
3	임산부·신생아 사망 등 보고(법 제 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별지 제7호 임산부·신생아 사망·사산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보고
4	미숙아 등 출생보고 (법 제8조 제4항, 시행규칙 제7조의2)	의료기관의 장	관할 보건소장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보고서		보고
5	임산부·영유아 이송사실 보고(법 제 15조의4 제4호)	산후조리업자	관할 보건소장	지체없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한 사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임산부 임신 또는 분만사실 신고(법 제8조 제1항, 시행 규칙 제2조)	임산부 또는 그 보호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별지 제1호 임산부신고서 임신 또는 분만 사실		-신고 -명칭은 신고이 나 법적 성격은 신청에 가까움
7	산후조리업 신고(법 제15조 제1항, 시행 규칙 제15조 제1항)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별지 제10호 산후조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건물평 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 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을 표시하여야 함) 및 설 비구조내역서,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 양사 면허증을 말함) 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본,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8	산후조리업 중요사항 변경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산후조리업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4호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변경사항[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해당함),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1/3 이상의 증감을 증명하는 서류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법 제15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3)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5호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제2항)	신고
10	산후조리업 휴업 신고(법 제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산후조리업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미리(휴업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9호 휴업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신고 -신고증 전 산 확인
11	산후조리업 재개업 신고(법 제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산후조리업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미리(재개업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9호 재개업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신고
12	산후조리업 폐업 신고(법 제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산후조리업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미리(폐업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9호 폐업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신고 -신고증 전 산 확인

(16) 보건의료기본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의심대상자 발견 보 고(법 제5조 제4항)	보건의료인	관계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 심되는 대상자 발견 사실		보고(법 문 에 는 신고 보 고, 통 지 라는 용 어 를 모 두 사 용 하 고 있 음)

(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13조 제1항)	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제5조 제4항(출연금 지급)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보고(시행령 제1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 내용 및 실적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 포함)		-보고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법령화 필요)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보고의 무 부과 근거 법 률 필 요함

(18) 사회복지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업무 보고· 자료제출(법 제51 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지도·감독상 필요한 업 무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	300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54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시설의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폐쇄명령(법 제40조 제1항)	
2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법 제34조 제2항, 시 행규칙 제20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5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 함) 1부, 시설운영에 필 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다만, 국·공 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음) 1부,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 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 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 도 각 1부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 거나, 시설의 폐쇄 명령(법 제4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54조)	-신고 -법 제40 조 제1 항의 제 재조치 중 시설 폐쇄 명 령만 유 의미할 것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사회복지시설 휴지 신고(법 제38조 제2 항, 시행규칙 제26 조 제1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시장·군수· 구청장	휴지 3월 전까지	별지 제20호 휴지신고서 시설의 휴지사용서(법인 의 경우에는 휴지를 결의 한 이사회 회의록 사 본) 1부, 시설거주자에 대 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 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사회복지 시설신고증 1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4	사회복지시설 재개 신고(법 제38조 제2 항, 시행규칙 제26 조 제1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시장·군수· 구청장	재개 3월 전까지	별지 제20호 재개신고서 시설의 재개사용서(법인 의 경우에는 재개를 결의 한 이사회 회의록 사 본) 1부, 사회복지시설신 고증 1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5	사회복지시설 폐 지신고(법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시장·군수· 구청장	폐지 3월 전까지	별지 제20호 폐지신고서 시설의 폐지사용서(법인 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6조 제1항)				한 이사회회 회의록 사본) 1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법 제58조 제1항)	
6	안전점검결과 제출 (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4)	법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매 반기마다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 결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자료 제출(보고 적성격)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38조, 시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내용, 자료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보고·자료 제출(행정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29조)	기관등·유전자 치료기관 또는 그 종사자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 령(법 제41조 제1항), 업무 정지처분에 같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 징금(법 제43 조 제1항)	조사적 성격)
2	잔여배아 보관· 제공 등 보고(법 제 20조 제3항, 시행 규칙 제12조)	배아생성의료기관 과 배아연구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12호 잔여배아 보 관·제공 현황보고서 당해 연도 잔여배아의 보 관 및 제공에 대한 기록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3	줄기세포주 제공 현황 보고(법 제20 조의3 제2항, 시행 규칙 제12조의5)	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별지 제12호의6 줄기세포 주 제공대장 줄기세포주 현황		보고
4	연구계획서 승인 보 고(법 제20조의4 제 3항, 시행규칙 제12 조의8)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별지 제12호의7 줄기세포 주 연구계획 승인보고서		-보고 -승인기 관의 장 이 내부 적으로 보건복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부장 관에게 승인사 실을 통 지하면 될 것임
5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 보고(법 제20 조의4 제3항, 시행 규칙 제12조의8)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별지 제12호의8 줄기세포 주 연구계획 변경승인보 고서		-보고 -승인기 관의 장 이 내부 적으로 보건복 지부장 관에게 승인사 실을 통 지하면 될 것임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유전자정보 제공여부 결정결과 제출 (법 제33조 제2항)	유전자은행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유전자정보 제공여부 결정결과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보고
7	유전자검사기관 등 신고(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신고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이 경우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폐기 명령(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사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함), 시설·인력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협약서		
8	유전자검사기관 등 변경신고(법 제 24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연구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변경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신고필증 원본, 변경사항(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유전자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	-신고 -변경신고의 기한, 제재수단 등을 신고의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하는 좋은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태료(법 제55 조 제1항)	입법례 (단, 원 신고보 다 변경 신고의 경우 제 재수단 이더무 집다는 것 은 문제가 있음)
9	유전자검사기관 휴업신고(법 제24 조 제4항, 시행규 칙 제16조)	유전자검사기관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휴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9호 유전자검사 기관 휴업 신고서 휴업 사유서, 검사대상 물·유전자 및 유전정보 처리계획서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	
10	유전자검사기관 폐업신고(법 제24 조 제4항, 시행규 칙 제16조)	유전자검사기관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폐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서,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유전정보 처리계획서, 유전자검사 기관 신고필증 원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 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과	-신고 -제재수 단중허 가등취 소나 업 무 정지 는 실익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태료(법 제55조 제1항)	
11	유전자은행 변경 신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23조)	유전자은행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6호 유전자은행 허가변경 신고서 유전자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변경사항(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관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	-신고 -변경신고시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증 원본은 전산확인가능
12	유전자은행 휴업신고(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	유전자은행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휴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8호 유전자은행 휴업신고서 휴업 사유서, 검사대상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물·유전자 및 유전정보 처리계획서, 검사대상물 관리대장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명령 (법 제41조 제 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55조 제1항)	
13	유전자은행 폐업신 고(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	유전자은행의 장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폐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8호 유전자은행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서, 검사대상 물·유전자 및 유전정보 처리계획서, 검사대상물 관리대장, 유전자은행 개 설허가증 원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명령	-신고 -제재수 단중허 가등취 소나 업 무 정지 는 실익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	
14	유전자치료기관 신고(법 제37조 제1항,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별지 제29호 유전자치료기관신고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이 경우에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사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유전자치료대상질환 및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 회협약서, 시설 및 인력 현 황을 기재한 서류, 의료기 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 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5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법 제37 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유전자치료기관	보건복지부장 관(질병관리본 부장)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9호 유전자치료 기관변경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신고필증 원본, 변경사항(유전자치 료기관의 소재지, 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유전자치 료 대상질환 또는 치료항 목, 기관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명령 (법 제41조 제 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55조 제1항)	신고

(2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0조 제1항)	기부식품제공자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기부식품 안전취급 위반 또는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때 그 업무 내용 또는 자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조 제1항)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임의신고(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호 사업자신고서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함),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시정명령 (법 제11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기부식품제공사업 자 당연신고(법제3 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2항)	매년 제공하는 기 부식품의 장부가 액이 3억원 이상 인 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호 사업자신고서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이용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 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함), 사업장을 설치할 토 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조 제1항)	신고
4	기부식품제공사업 철회신고(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 3조)	기부식품제공 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3호 철회신고서 철회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신고필증		신고
5	기부식품제공사업 폐업신고(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 3조)	기부식품제공 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폐업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신고필증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1) 식품위생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관리·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26조)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사항/자료		-보고·자료 제출(행정 조사적 성격)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2	영업자의 권고사항 불이행 보고(법	시민식품감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		영업자의 개선 등 조치 권고사항 불이행 사실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4조 제3항)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시민식품감시인 위촉보고(법 제34조 제5항,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시민식품감시인을 위촉하는 영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7호 시민식품감시인 위촉보고서 위촉한 시민식품감시인의 위촉 날짜와 인적 사항, 시민식품감시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이에 따라 개선한 사항 (법 제34조 제5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보고 -“시민식품감시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이에 따라 개선한 사항”은 위촉시에 보고할 수 있는 사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이 아 님. 직 무수행 에 관한 보고방 법에 대 해서는 시행규 칙에 별 다른 규 정 없음
4	시민식품감시인 해측보고(법 제34 조 제5항, 시행규 칙 제33조 제2항)	시민식품감시인을 해측하는 영업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시·도 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 청장		별지 제27호 시민식품감 시인 해측보고서 해측 날짜와 사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보고
5	품목제조 보고(법 제37조 제5항, 시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의 제조업·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또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별지 제43호 품목제조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	500만원 이하의	보 고 (신고적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45조)	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작 후 7일 이내	고서 포함) 제조방법설명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성격)
6	품목제조 변경보고 (법 제37조 제5항, 시행규칙 제45조)	품목제조 보고를 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별지 제45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보 고 (신고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구청장		변경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함)]	제2항)	
7	식품위생검사 관련 보고·자료제출(법 제26조)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자료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8	생산실적 보고(법 제4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6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0호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연보)(전자문서 포함)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1조 제2항)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위해식품 회수계획 보고(법 제45조, 시 행규칙 제59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가공·소분·수 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지방식 품의약품안전 청장), 시·도 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 청장	미리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 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회수계획량 (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 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 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 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회수 사유, 회수방법, 회 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 간,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보고 -회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므로 시 행규칙 차원이 아니라, 법률 차 원에서 규정하 는 것이 바람 직함 -회수계 획 작성 및 보고 →허가 관청 또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신고 관청의 공표명 령(검사) →회수 →회수 결 과 보고 -회수 계 획 자체 에 국민 에게 알 리는 방 법이 있 는 데 , 별도의 공표명 령을 발 할 필요 가 있는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 의 문임 -회수계 획보고 의 성격 은 자발 적 회수 인 데 , 공표명 령이 개 입하는 것그성 격을 애 매보호 하게 함
10	식품등의 이물 발 견보고(법 제46조, 시행규칙 제60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가공·소분·수 입 또는 판매한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시·도 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	지체 없이	별지 제51호 이물보고서 사진, 해당 식품 등 증 거자료 첨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8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영업자	칭장			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101조 제3항)	
11	식중독 조사 보고 (법 제86조, 시행 규칙 제93조)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 나 그 사체를 검 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 단급식소에서 제 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 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 견한 집단급식소 의 설치·운영자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	지체 없이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식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성명·생 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 지, 식중독의 원인, 발병 연월일,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수입식품 등 신고 (법 제19조, 시행 규칙 제12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식 품등을 수입하려 는 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지방식 품의약품안전 청장)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 할 수 있으며, 미 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 요 사항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식품등의 수 입신고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 관, 법 제24조 제2항 제 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 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 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 명서(별표 4 제2호에 따 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 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함),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 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 지를 포함함) 또는 한글 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법 제75 조 제1항),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95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류,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 ·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 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 여 재배·육성된 농·축 ·수산물 등으로서 안전 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 는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함. 이 하 같음)과 구분하여 관 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 말함]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 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 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아니한 경우만 해당함),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함), 다 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u>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		
13	영업신고(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		별지 제37호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	려는 자(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포함)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교육이수증(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시행령 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함), 시설사용계약서(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외한다), 제21조제8 호가목의 휴게음식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 업 및 같은 호 바 목의 제과점영업)			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시행령 제 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 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선장에서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함),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시</p>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함)		
14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3조)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41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함)에 해당하는 식 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1조 제2 호의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 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 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시 행령 제21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 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 가물(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함)을 제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려는 경우 :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		
15	식품조사처리업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1호, 시행규칙 제41조)	식품조사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36호 식품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허가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신고 -경미한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합), 영 업소의 명칭 또 는 상호, 영업장 의 면적
16	단란주점영업/유 흥주점영업 경미 한 허가사항 변경 신고(법 제37조 제 3항, 시행령 제33 조 제2호, 시행규 칙 제41조)	단란주점영업 허 가를 받은 자· 유흥주점영업 허 가를 받은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별지 제36호 식품허가사 항 변경신고서 허가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신고 -경미한 변경사 항 : 영 업자의 성명(영 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 의 성명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17	허가영업 폐업신고 (법 제37조 제3항, 시행규칙 제44조)	영업허가를 받은 자	허가관청		별지 제42호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허가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신고
18	신고영업 폐업신고 (법 제37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신고를 한 자	신고관청		별지 제42호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신고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9	검사기관 지위승계 (양수)신고	양수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1개월 이내	별지 제23호 식품위생검 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서, 양도·양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전자문서 포함), 그 밖 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영업시 설 인수 로 인한 승 계 규정
20	검사기관 지위승계 (법인합병)신고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이나 합 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1개월 이내	별지 제23호 식품위생검 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서, 그 밖에 식품위생검 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다른 입 법 레에 비하여 법인합 병의 경 우의 증 빙서류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정이 불명 확함
21	검사기관 지위승 계(상속)신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1개월 이내	별지 제23호 식품위생검 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 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 그 밖에 식 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 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2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49조 제3항,	식품이력추적관 리 등록을 한 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57호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71조)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법 제101조 제3항)	
2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별지 제68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교육이 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한 수질검사(시험)성적 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 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시행령 제 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당함),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 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함)		
24	관리·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법 제2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9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수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2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0조 제1항)	관계인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자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실종아동 인지신고 (법 제6조 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복지 지도원,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 또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9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3	신상카드 제출(법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신상카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9조 제2항)	자료 제출(보고적성격)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법 제 27조 제1항)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자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보고/자료 제출 (행정조 사적성격)
2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재해방지 결과 보고 (법 제18조 제2항)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폐쇄 등 필요한 조치 결과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보고 -『가축전염병예 방법』 제19조 준용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재해방지 결과 보고(법 제18조)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운영자 또는 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	폐쇄 등 필요한 조치 결과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가축전염병예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항)	리자		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법 제33조 제1항)	방법 제20조 준용
4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1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미리	별지 제14호 사용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동물실험계획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보고

(24) 아동복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시 행령 제4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 시설의 장	시장·군수· 구청장	매년 1회	시행령 별표 3의 교육기 준에 따른 교육(교통안 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보고 -법적 근 거 필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		요함 -실효성 확보수 단 필 요함
2	시설보호아동 퇴소 보고(법 제11조 제1 항과 결부한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지체없이	퇴소사실		-보고 -의무부 과 근 거법률 필요함 -실효성 확보수 단 필 요함
3	시설보호아동 보 호기간 연장보고 (법 제11조 제2항 과 결부한 시행규 칙 제7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지체없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기 간 등		-보고 -의무부 과 근거 법률 필요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법 제14조 제2 항, 시행규칙 제10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8호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 서, 시설의 평면도(시설 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및 건물 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 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 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 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지 아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아동복지시설 휴 지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휴지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휴지신고서 휴지사유서(법인인 경우 에는 휴지를 결의한 이사 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 함), 시설보호아동에 대 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 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신고 -실효성 확보 수 단 필요 (휴지 3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6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개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재개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재개신고서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 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의 사본을 말함)		-신고 -실효성 확보 수 단 필요 (재개 3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함)
7	아동복지시설 폐지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		폐지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폐지신고서 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의 사본을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신고 -실효성 확보 수단 필요 (폐지 3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서 특히 그 러함)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진 산 확인
8	아동학대 임의적 인 지 신고(법 제26조 제1항)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		아동학대 사실		신고
9	아동학대 당연 인 지 신고(법 제26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 원, 『의료법』 제3 조에 따른 의료기 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 동복지시설의 종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		아동학대사실		-신고 -실효성 확보수 단필요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 지도원					

(25) 암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암통계 자료제출(법 제8조 제4항, 시행규칙 제6조)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암	보건복지부장관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견		자료 제출(행정 조사적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성격)

(26) 약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부작용 발생 보고 (법 제21조 제3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보고 -보고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의약품 등 생산실적 보고(법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보고
3	완제의약품 생산 실적 보고(법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분기별 생산실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보고
4	의약품 수입실적 보고(법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등의 수입자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의 장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보고
5	완제의약품 수입 실적 보고(법 제38조 제2항, 시행	의약품등의 수입자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의 장		분기별 수입실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44조)					(법 제98조 제1항)	
6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계획 보고(법 제39조,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의 수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미리 -위해성 1 등급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위해성 2~3등급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38호 회수계획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 별 판매량·판매일자 등의 기록,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회수사유를 기재한 서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보고 -법률과 시행규칙상 선 후관계 불분명 (특히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법률적 근거 필 요함) -제재수단 약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상의 위해등급평가 의무위반(제45조 제1항), 공표의무위반 (제46조)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7	회수종료신고서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회수의무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회수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2호 회수종료신 고서 별지 제39호 회수확인서		-신고 -법률에 규정되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본, 별지 제40호 평가 보고서 사본, 별지 제41 호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제출)		어야 할 사항임 -의무위 반에 대 한 제재 수 단 없음 -폐기 확 인서의 경우 2 년간 보 관의무 부과되 어 있음 (법률)
8	안전성·유효성 자료·정보 보고(법 제38조 제1항 결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 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보고 -벌칙 적 용과 관 련하여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43조 제 3호)				정보사항 등(의약품 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 포함)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또는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준수사항’과 별도로 보고의무의 직접적 근거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9	신고사항 변경유무 보고(법 제38조 제 1항 결부 시행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을 신고한 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매년 1월말까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신고사항 변경 유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보고 -벌칙 적용과 관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43조 제16호)						련하여 또는 실 효성 확 보와 관 련하여 '준수 사항' 과 별 도로보 고의무 의 직접 적 근거 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 이 바 람직함 -신고사 항이 있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경우 에만 변 경신고 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 직함(변 경사항 이 없음 에도 불 구하고 매년 보 고하도 록 하는 것은 기 업에 부 담을 줄 수 있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완제의약품 생산· 공급 중단보고(시행 규칙 제44조 제3항)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생산·공급 중단 후 1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하는 완제의약품 생산· 공급 중단 사유		-보고 -특히 완 제의약품의 경 우에 생 산·공 급 중단 보고를 명하도 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하 는 것 이 바람 직함
11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법 제47조의2 제2항)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관리 종합센터의 장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8호 의약품 공급내 역 현황(전산매체에 수록하	100만원 이하의	-보고 -보건복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90조)	의약품 도매상			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완제 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의료용 고압가스 제외) 공급 내역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보고 생략 가능
12	약사·한약사신고 (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약사 또는 한의사	보건복지부장관(약사회·한약사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번호, 취업현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신고 -신고방법, 기한에 관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한 규정 없음
13	약사회 및 한약사 회 지부설치신고 (법 제14조 제2항)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시·도지사	설치 후 지체없이			-신고 -신고방 법에 관 한 규정 없음
14	약국개설자 휴업신 고(법 제22조, 시행 규칙 제89조 제1항)	약국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휴업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65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약국개설등록증, 휴업사 유서(전자문서로 된 사 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개월 미 만인 경 우 는 제외
15	약국개설자 재개 업신고(법 제22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약국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재개업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65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 포함) 약국개설등록증	100만원 이하의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6	약국개설자 폐업신고(법 제22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약국개설자	시장·군수·구청장	폐업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65호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약국개설등록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 제1항)	신고
17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신고(법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6조)	의약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14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료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제조판매품목을 신고하려는 의약품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에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3조 제1항)	-신고 -어떤 경우에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		지가 법 률상 명 확하지 아니함 -법률 및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신고의 기 준 , 조건 및 관리 등 에 관하 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식품의 약품안 전청장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 정할 수 있음 (시행규 칙 제 28조)
18	의약품 제조관리자 선임신고(법 제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 41조 제5항)	의약품 제조업자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		별지 제36호 제조관리자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등 신고서 제조관리자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 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		신고
19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관리자·안전 관리책임자 변경신 고(법 제40조, 시 행규칙 제89조 제 3항)	의약품 등 제조업자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		별지 제66호 제조관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 1호 또는 제42조의2제3 항제1호의 서류와 제조 업 허가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0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관리자 폐지신고(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의약품 등 제조업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67호 제조관리자 폐지신고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신고 -폐지 신고가 아니라 퇴사 또는 해임신고가 맞음 -신고의 무부과의 직접 법적 근거 필요함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1	의약품등 제조업자 휴업신고(법 제40 조, 시행규칙 제 89조 제1항)	의약품등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휴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증, 휴 업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개월 미 만인 경 우에는 신고하 지 아니 할 수 있음
22	의약품등 제조업 자 재개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의약품등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재개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 포함)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23	의약품등 제조업자 폐업신고(법 제40 조, 시행규칙 제 89조 제1항)	의약품등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폐업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증, 모든 제품품목의 허가증· 신고필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4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4항)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12호의2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법 제5조 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법 제3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3조 제1항)	-신고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음 (시행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 28조)
25	의약품 위탁제조판 매업 변경신고(법 제31조 제7항, 시행 규칙 제88조 제1항)	의약품 등 위탁제조 판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12호의2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 고서		-신고 -법률은 제31조 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시행규 칙은 제 88조에 서 규정 하 고 있음 -법률 및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변경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 28조)
26	의약품 위탁제조 판매업자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약품 위탁제조 판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66호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입자 변경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포함)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제1호의 서류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법 제98조 제1항)	
27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휴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의약품 등 위탁제조판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휴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휴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휴업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28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재개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의약품 등 위탁제조판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재개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재개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29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폐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의약품 등 위탁제조판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0	의약품 제조업신고(법 제31조 제4항, 시행규칙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 한약재 제조업 및 의약품 제조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12호 의약품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법 제5조 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1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3조 제1항)	-신고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률 및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변경신 고의 기 준, 조 건 및 관리 등 에 관하 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식품의 약품안 전청장 이 정할 수 있음 (시행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 28조)
31	의약부외품 제조업 변경신고(법 제31조 제7항, 시행규칙 제 88조 제1항)	의약부외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12호 의약외품제 조업 변경신고서		-신고 -법률은 제31조 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시행규 칙은 제 88조에 서 규정 하 고 있음 -법률 및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변경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 28조)
32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 88조 제4항, 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포장재질·제조원의 명칭변경 등 식		-신고 -신고예외사항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경내용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p>		<p>을 시행 규칙에 서 정하 고 그 적용 대 상을 시 행규칙 에서 식 품의약 품안전 청장 고 시로 위 임하고 있음</p>
33	<p>의약품등 수입품목 신고(법 제42조, 시행규칙 제26조)</p>	<p>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p>	<p>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p>		<p>별지 제14호·수입품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p>-신고 -신고대상 의약품의 품</p>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수입 품목을 신고하려는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에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추가	(법 제93조 제1항)	목 전부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외국에서 현지 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드는 경 비를 포 함) 를 내야 함 -시행규 칙 제26 조 제1 항의 문 언 해석 이 곤란 함 “제 1 호 부 터 제4 호까지 의 규정 에 해 당하는 품목이 신고대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 원료 의약품 인 경우 에는 제 1 호 부 터 제4 호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지 아 니한다.”
34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수입신고(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수입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15호 원료의약품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이 경우 특히 자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원료의약품공급자가 직접 식품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3조 제1항)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작 성요령,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신고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조·품질관리에 필요 한 시설에 관한 자료, 물리 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 포 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자료,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시 행규칙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동등 이상 임을 증명하는 자료, 원 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수료(외 국에서 현지실 사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는 이에 드는 경 비를 포 함) 를 내야 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용 원료의약품		
35	의약품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신고(법 제40조, 시행 규칙 제89조 제3항)	의약품 등 수입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장)장		별지 제66호 수입관리 자·안전관리책임자 변 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 또는 제 51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36	의약품 수입자 휴 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의약품 등 수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휴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휴업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수입업 신고증, 휴업사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전자문서로 된 사유서 포함)	(법 제98조 제1항)	
37	의약품 수입자 재 개업 신고(법 제 40조, 시행규칙 제 89조 제1항)	의약품 등 수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재개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 포함) 수입업 신고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38	의약품 수입자 폐 업 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의약품 등 수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65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 포함) 수입업 신고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39	의약품(한약) 도매 업무관리자 선임신 고(법 제45조 제5 항, 시행규칙 제41 조 제5항)	의약품(한약) 도매상	시·도지사		별지 제36호 제조관리자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제조관리자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		-신고 -법 제45 조 제1 항 을 위반한 경우에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칙을 부과하 도록 되 어 있음 (법 제 94조 제1항 제5호), 선임신 고의무 는 시행 규칙에 서 비 료소 부 과됨.
40	의약품(한약) 도매 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시행규칙 제	의약품(한약) 도매상	시·도지사		별지 제66호 도매업무관 리자변경신고 (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9조 제2항)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시행 규칙 제59조 제1항 제1 호 다목의 서류	(법 제98조 제1항)	
41	의약품(한약) 도매 업무 관리자 폐지 신고(시행규칙 제 89조 제2항)	의약품(한약) 도매상	시·도지사		별지 제67호 도매업무관 리자 폐지신고서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		-신고 -폐지 신 고 가 아 니라 퇴 사 도는 해임 신 고 가 맞음 -신고의 무 부과 의 직접 적 법률 적 근 거 규정 필요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2	규격품대상 지정 한약 제조판매신 고(시행규칙 제26 조 제4항)	규격품대상 한약 으로 지정한 한 약 중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한약 의 제조판매신고 를 하려는 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해당품목의 목록		-신고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차 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식품의 약품안 전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는 수 수료(외 국에서 현지실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드는 경비를 포함)를 내야 함
43	규격품대상 지정 한약 수입신고(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규격품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의 수입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당품목의 목록		-신고 -예측가능성 제거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식품의 약품안 전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는 수 수료(외 국에서 현지실 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이에 드 는 경비 를 포 함) 를 내야 함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4	약국 제제 제조신고(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약국개설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7호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4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신고(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별지 제8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46	약국제제 제조업무 폐지신고(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단서 뒤 제2문)	약국개설자	시장·군수·구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1항)	-신고 -신고의무를 시행규칙에서 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료소 규정하고 있음 -폐지신고에 관한 서식 미비
47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폐지신고(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단서 뒤 제2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 제1항)	-신고 -신고의무를 시행규칙에서 비료소 규정하고 있음 -폐지신고에 관한 서식 미비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8	관리·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59조)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그 밖에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한 서류, 그 밖의 자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 제1항)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27) 영유아 보육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육시설 관련 보고(법 제42조 제1항)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정 또는 변경명령(법 제44조 제6호)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비용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서류 등 자료제출 (법 제34조의5 제1항)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 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비용 지원의 신 청을 각하하거 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 는 변경(법 제 34조의5제4항)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3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법 제19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1조 제1항)	보육시설의장	시장·군수· 구청장	14일 이내	별지 제7호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보고
4	보육시설 폐지신고 (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보육시설을 폐지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폐지 2개월 전	별지 제18호 보육시설 폐 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轉園)조치 계획서, 시설 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 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 한 경우는 제외함), 보육	시정 또는 변 경명령(법 제 44조),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56 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보육시설종사자 인사기 록카드		
5	보육시설 휴지신고 (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보육시설을 휴지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 수·구청장	휴지 2개월 전	별지 제18호 보육시설 휴 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轉園)조치 계획서, 시설 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 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 한 경우는 제외함)	시정 또는 변 경명령(법 제 44조),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56 조 제1항)	신고
6	보육시설 재개신고 (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보육시설을 재개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 수·구청장	재개 2개월 전	별지 제18호 보육시설 재 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轉園)조치 계획서, 시설 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 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 한 경우는 제외함)	시정 또는 변 경명령(법 제 44조),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56 조 제1항)	신고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설치 신고 (법 제35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9호 응급의료기관 설치신고서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첨부	폐쇄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55조제2항)	신고
2	이송업자 변경신고 (법 제51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응급환자이송업자	시·도지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신고
3	이송업 휴업신고(법 제53조, 시행규칙 제43조)	응급환자이송업자	시·도지사	신고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22 응급환자이송업 휴업신고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첨부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법 제55조	-신고 -신고기한 명확화 필요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4	이송업 폐업신고 (법 제53조, 시행규칙 제43조)	응급환자이송업자	시·도지사	신고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22 응급환자이송업 폐업신고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첨부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법 제55조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신고 -신고기한 명확화 필요
5	이송업 재개업신고 (법 제53조, 시행규칙 제43조)	응급환자이송업자	시·도지사	신고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22 응급환자이송업 재개업신고서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법 제55조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	-신고 -신고기한 명확화 필요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태료(법 제62조제1항)	
6	이송업양수신고(법 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이송업 양수인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23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력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법 제55조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신고
7	이송업상속신고(법 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제	이송업 상속인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23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항 제1호)					령(법 제55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 제1항)	
8	이송업 합병 신고 (법 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이송업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23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1부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법 제55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 제1항)	신고
9	영업시설 인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법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영업시설 인수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23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법 제55조 제2항), 300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29) 의료기기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28조 제1항)	의료기기 취급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2	의료기기 생산실적, 수출실적의 보고(법 제12조 제2항, 시행규칙 제	의료기기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매년 4월 15일까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보고 -신고내용, 방법, 절차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조)						차 등 고시로 위임
3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보고(법 제27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32조)	의료기기 취급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사망이나 생명 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 7일 이내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 로 보고하여야 함) -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 요한 경우, 회복 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 쇄, 품목의 제 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 하는 기간 이 내의 범위에 서 그 업무 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법 제32조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	-보고 -관련 자 료 2년 간 보 존의무 있음 -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 부사항 고시로 위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15일 이내		금(법 제45조)	
4	위해의료기기 회수계획 보고(법 제27조 제2항, 시행규칙 제32조의2)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확인된 날부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 5일 이내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	별지 제28호의2 회수계획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자, 임대인별 임대량·임대일자 등의 기록, 시행규칙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회수사유를 적은 서류 첨부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32조제1항)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 15일 이내			
5	의료기기 제조업 변경신고(법 제11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제조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		-별지 제5호 의료기기 제조 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신고증과 변경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함) 첨부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 지원, 제조과정 등 제 품의 안전성이나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이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문서 등을 추가로 첨부		
6	의료기기 품목제조 신고(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라 제조공정을 전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3 제7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서 사본 첨부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의료기기 수입품목 신고(법 제14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8조 제2항)	의료기기 수입업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수입업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법 제14조제3 항에 따라 수 입업허가신청 과 동시에 수 입품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별지 제5호 의료기기 수입 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 1호의 서류. 다만, 수입 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 미 허가받은 품목과 동 일한 제조원(제조국가· 제조회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의 동일제품임을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생산국 정부, 생산국 정부 가 위임한 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품질관리 실태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서류. 다만,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함</p> <p>-시행규칙 별표 5 제11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입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서 사본</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의료기기 수리업신고(법 제15조 제1항)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23호 수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법 제6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법 제6조제6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법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26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법 제6조제6항제1호 본 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 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법 제6조제6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 니함)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의료기기 임대업신고(법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임대업으로 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6호 의료기기 임대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법 제6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법 제6조제6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신고(법 제15 조 제4항, 시행규 칙 제22조 제3항)	의료기기 수리업자			별지 제25호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함)와 신고증을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신고
12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신고(법 제16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24조 제3항)	의료기기 판매업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28호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신고
13	의료기기 임대업 변경신고(법 제16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24조 제3항)	의료기기 임대업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별지 제28호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의료기기 제조업 휴업신고(법 제13 조,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휴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제조업허가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월 미만 인 경우 는 제 외함
15	의료기기 제조업 재개업 신고(법 제 13조,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16	의료기기 제조업 폐업신고(법 제13 조,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제조업허가증과 모든 제 조품목허가증 및 제조품 목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7	의료기기 수입업 휴업신고(법 제14 조 제5항, 시행규 칙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휴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수입업허가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월 미만 인 경우 는 제 외함
18	의료기기 수입업 재 개업 신고(법 제14 조 제5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19	의료기기 수입업 폐 업신고(법 제14조 제5항,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수입업허가증과 모든 수 입품목허가증 및 수입품 목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0	의료기기 수리업 휴업신고(법 제14 조 제5항, 시행규 칙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수리업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휴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월 미만 인 경우 는 제 외함
21	의료기기 수리업 재 개업 신고(법 제14 조 제5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수리업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2	의료기기 수리업 폐업신고(법 제14 조 제5항, 시행규 칙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수리업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3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신고(법 제16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24조 제4항)	의료기기 판매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휴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월 미만 인 경 우 는 제외함
24	의료기기 판매업 재개업 신고(법 제 16조 제3항, 시행규 칙 제24조 제4항)	의료기기 판매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5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신고(법 제16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24조 제4항)	의료기기 판매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6	의료기기 임대업 휴업신고(법 제16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24조 제4항)	의료기기 임대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휴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휴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신고 -휴업기 간이 1 월 미만 인 경우 는 제 외함
27	의료기기 임대업 재 개업 신고(법 제16 조 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의료기기 임대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8	의료기기 임대업 폐업신고(법 제16 조 제3항, 제24조 제4항)	의료기기 임대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2호 재개업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함) 신고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15조 제1항)	안경업소의 개설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실태 및 취업현황 신고(법 제11조, 시 행령 제8조)	의료기사·의무기 록사 및 안경사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태 및 취업현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보고 -신고의 방법· 절차 기 타 신고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 건복지 부장관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 정하여 신고 개시 60일 전까지 공고
3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 13조, 시행규칙 제 16조)	안경업소 개설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시정명령(법 제2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3조 제1항)	신고
4	안경업소 폐업신고(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	안경업소 개설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시정명령(법 제2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3조 제1항)	신고
5	치과기공소 개설장소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치과기공소 개설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치과기공소 인정서 첨부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	-신고 -법적 근거 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 기공소의 인정 을 취소(시행 규칙 제5조)	요함
6	치과기공소 폐업 신고(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치과기공소 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치과기공소 인정서 첨부	시정을 명하 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 의 업무정지 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 의 인정을 취 소(시행규칙 제5조)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7	지도치과의사 변 경신고(시행규칙	치과기공소 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시정을 명하거 나 6월의 범	-신고 -법적 근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조 제4항)				치과기공소 인정서 첨부	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시행규칙 제5조)	거 필 요함
8	치과기공소 양수 신고(시행규칙 제 2조 제5항)	치과기공소 양수자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치과기공서 양수·양도신고서 치과기공서인정서, 면허 증 사본 및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 위내에서 치과 기공소의 업무 정지를 명하 거나 치과기 공소의 인정 을 취소(시행 규칙 제5조)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안경업소 양수신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안경업소 양수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13호 안경업소 양수·양도신고서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신고 -법적 근거 필요함

(31) 의료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61조 제1항, 제82조 제3항)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안마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2조 제2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법 제61조 제1항 후단)
2	의료법인 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의료법인	시·도지사				-서류제출(행정조사적 성격) -법적 근거 필요함
3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법 제27조의2 제3항, 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년3월31일까지	-의료기관의 경우 :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외국인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19조의9)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 (법 제63조)	
4	조선 수습의료기관 전년도 분만실적 보고(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조선 수습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월 15일까지	저년도 분만 실적		-보고 -법적 근거 필요함(보고를 근거로 수습의료기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
5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보고(법 제 25조, 제82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7조)	의료인, 안마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회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보고(조명 및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 성격은 보고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변사체 신고 (법 제26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사체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경 찰서장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 심되는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보고(조 명 및 법문)은 신고라 는 용어 를 사용 하고 있 으나, 법적 성 격은 보 고임)
7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 원 개설신고(법 제 33조 제3항, 법 제 82조 제3항, 시행 규칙 제25조)	의 원 · 치 과 의 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 려는 자, 안마사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4호 의료기관 개 설신고서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 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한다)인 경우 : 법인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첨부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변경신고(법 제 33조 제3항, 법 제 8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6조)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신고를 한 자, 안마사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4호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9	의료기관 개설특례 신고(부속의료기관 설치신고)(법 제3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0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첨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른 준정부기관 외 의 자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운영신 고(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운영 하려는 의료기관				시정 명령(법 제63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92조)	신고
11	의료기관 휴업신 고(법 제40조 제1 항, 법 제82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30조)	의료기관 개설자, 안마사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18호 의료기관 휴 업신고서	시정 명령(법 제63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92조)	신고(1 개월 이 상 휴업 하 려 는 경 우 에 만 신고)
12	의료기관 폐업신 고(법 제40조 제1 항, 법 제82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30조)	의료기관 개설자, 안마사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폐 업신고서	시정 명령(법 제63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92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부대사업신고(법 제49조 제3항, 시행규칙 제61조)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	시·도지사		별지 제22호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 제1항)	신고
14	부대사업변경신고(법 제49조 제3항, 시행규칙 제61조)	부대사업을 신고한 의료법인	시·도지사		별지 제22호 부대사업 변경 신고서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 제1항)	신고
15	해산신고(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청산인	시·도지사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신고 -법적 근거 필요함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관,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의 회의록 첨부		
16	청산종결 신고(시 행규칙 제59조)	청산인	시·도지사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 결신고서 제출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17	조산원 지도의사 신고(시행규칙 제 31조)	조산원 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도의사를 정하한 경우 변경한 경우	지도의사신고서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 첨부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18	조산원 지도의사변 경 신고(시행규칙 제31조)	조산원 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도의사를 변경한 경우	지도의사신고서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 증 사본 첨부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3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법 제23조 제1항)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의장 및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직은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25조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사항 보고 (법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조직은행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당해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별지 제5호 조직의 기증·관리보고서	시정명령(법 제2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	보고
3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결과 보고(법 제1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조직은행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당해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별지 제6호 조직이식결과 기록서	시정명령(법 제2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	보고
4	중대한 부작용 발생보고(법 제19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조직은행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정명령(법 제2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	-보고 -보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없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조직은행 폐업신고 (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조직은행	보건복지부장 관(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신고서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 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	신고

(3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법 제28 조 제1항)	등록기관·뇌사 판정기관·이식 의료기관 또는 뇌 사판정대상자관 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국립장 기이식관리기 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 식관리기관의 장 이 장기등의 기 증·적출 또는 이 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 는 이식의료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장기 등 기증 자 등의 등록,	보고 또 는 자료 제출(행 정조사 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30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30조제2항),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판정대상 자관리업무 의 정지 명령 (법 제30조제 3항), 2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48 조제2항)	
2	폐업 또는 업무종 료신고(법 제31조 제1항)	등록기관·이식 의료기관 또는 뇌 사판정대상자관 리전문기관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	폐업 또는 해당업 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 7일전까지	별지 제12호 폐업·업무 종료신고서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 48 조 제 3 항),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지 정을 취소하 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정대상자 관리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30조제3항)	

(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법 제37조 제1항,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 봉안시설·사설 자연장지의 설치· 조성자 또는 장 례식장영업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 별지 제25호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 : 별지 제26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매장신고(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매장을 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매장 후 30일 이내	별지 제1호(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3	화장신고(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화장을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6호 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함)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4	개장신고(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개장을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호 신고서 기존 분묘의 사진 첨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5	개인묘지 설치신고(법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	별지 제4호 신고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6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행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	별지 제4호 변경신고서 변경도면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5조)					(법 제42조 제1항)	
7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법 제15조 제1항)	사설화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7호 신고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2010. 9. 1.자 개정 법률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삭제
8	사설화장시설 변경신고(법 제15조 제1항)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7호 신고서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42조 제1항)	
9	시설방안시설 설치 신고(법 제15조 제1항)	시설방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신고서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방안담당 해당함) -법인방안당: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 도 및 구적도, 사용할 방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류, 방안당 건축 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 도, 조경, 전기통신, 도 로, 방재설비 등 기반 시설계획서, 방안당 건 축 및 공정계획서, 주 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함)		
10	시설방안시설 변경 신고(법 제15조 제1항)	시설방안시설 설치신고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신고서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11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별지 제16호 신고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함)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6호 변경신고서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신고
13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법인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한 때		사설 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의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	-신고 -관련 서식 없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명령 (법 제31조)	
14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변경신고(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사용료와 관리비를 변경한 때		시설묘지·시설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 및 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의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신고 -관련 서식 없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31조)	
15	장사시설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신고된 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3호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회의록 사본),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첨부		

(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법 제 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시설주	시설주관기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1항)	- 자료 제출 - 실태조사에의 대상 및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 한 세부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2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자 료제출(법 제22조 제1항)	시설주	시설주관기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련된 자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1항)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36) 장애인복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법 제61 조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8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 거나 해당 시 설의 폐쇄(법 제62조)	보고· 서류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59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4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외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20호 신고서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사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첨부		
3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법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 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신고서 에 장애인복지시설 신 고증 첨부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 별지 제21호 신고서에 시행규칙 제 43조 제1항 각 호의 서 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증 첨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할 것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의 변경 사유서, 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함),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4	장애인복지시설 중단신고(법 제60 조 제2항, 시행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시장·군수· 구청장	시설 운영 중단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 신고서 시설 운영의 중단 사유 서(법인인 경우에는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44조 제1항)				단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첨부	(법 제89조 제1항)	
5	장애인복지시설 재개신고(법 제60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44조 제1항)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시장·군수· 구청장	시설운영 재개 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 신고서 시설 운영의 재개사유서 (법인인 경우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9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신고(법 제60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44조 제1항)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시장·군수· 구청장	시설 운영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 신고서 시설 운영의 폐지 사유 서(법인인 경우에는 폐 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회의록 사본) 1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 서 1부, 시설거주자가 납부 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 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 부,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 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시설 재산 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1부, 장애인복지 시설 신고증 1부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9조 제1항)	
7	비용수납신고(법 제80조 제2항, 시 행규칙 제66조)	장애인 유료복지 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미리	별지 제40호 비용수납신 고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	신고

(37) 전염병 예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소독실시사항 관계 서류제출(법 제40 조의5 제1항)	소독업자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 청장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영업 의 정지를 명 하거나 영업 소의 폐쇄 명 령(법 제40조 의8제1항)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결과 보고(법 제21조 제2항, 시 행규칙 제10조의2)	시장·군수·구청 장외의 자로서 예방 접종을 실시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 예방접종실시 대장의 사본과 별지 제11호 의2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의 사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의2 제1항)	보고
3	소독실시사항보고 (법 제40조의6 제 2항, 시행규칙 제	소독업자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매분기 종료후	별제 제25호 /4분기 소 독실시보고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0조의7 제2항)		장·군수·구청장			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40조 의 8 제 1 항),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 56조의 2 제 1 항)	
4	전염병 및 예방접 종후 이상반응 발 생신고(법 제4조 제 1항, 시행규칙 제1 조의5)	의사 또는 한의사	보건소장	-제1군·제2군·제4 군 전염병 및 제3 군의 탄저와 예 방접종후 이상반 응의 경우 : 즉시 -탄저를 제외한 제3 군 및 지정 전염 병의 경우 : 7일 이내	-전염병환자등의 경우 : 별지 제1호 전염병발생 신고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 예방접종후 이상반응발 생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기타 제1군전염병 환자 발생 신고 (법 제5조, 시행규 칙 제2조)	일반가정에 있어 서는 세대를 같 이하는 세대주. 다 만, 세대주가 부 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 원, 관공서, 회사, 홍행장, 예배장, 선 박, 각종의 사무 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 타 다수인이 집 합하는 장소에 있어 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육· 해·공군소속부대 에 있어서는 그 소 속부대의 장	보건소장	즉시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 자와의 관계, 전염병환 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전염병환자등 의 주요 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 요증상), 전염병환자등 또 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질병관리본부장	지체없이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3 신고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 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4 신고서		신고
7	제1군 전염병환자 등의 퇴원·사망 등의 신고(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5)	의사 또는 한의사	보건소장	-제1군 전염병환자 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 변경이 있을 때 즉시 -제2군 전염병환자 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 즉시	별지 제1호 전염병발생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설치신고(법 제2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외의 자로서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3호 사립전염병예방시설설치신고서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 첨부		-신고 -제재수단 필요함
9	소독업신고(법 제40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9호서 소독업신고서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		신고
10	소독업변경신고(법 제40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소독업신고를 한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1호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독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고
11	소독업 휴업신고(법 제40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의5)	소독업자	시장·군수·구청장	휴업하려는 때	별지 제22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소독업신고증 첨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신고 -30일 이상 휴업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 8 제 1 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의 2 제 1 항)	하려는 때만 해당함
12	소독업 재개업신고(법 제40조의 4, 시행규칙 제20조의 5 제1항)	소독업자	시장·군수·구청장	재개업하려는 때	별지 제22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소독업신고증 첨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 8 제 1 항), 100만원 이하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과태료(법 제56조의2제 1항)	
13	소독업 폐업신고 (법 제40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의5 제1항)	소독업자	시장·군수·구청장	폐업하려는 때	별지 제22호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소독업신고증 첨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 8 제 1 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의2제 1항)	신고

(38) 정신보건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법 제39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1조 제1항)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보건복지부장 관(시장·군 수·구청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 수·구청장	연 1회 이상		정신요양시 설의 개선, 사 업의 정지, 시 설의 장의 교 체를 명하거 나 시설설치 의 허가취소 (법 제11조제 1항), 개설허 가의 취소 또 는 폐쇄를 명 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명령(법 제12조 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	
2	정신요양시설 휴지신고(법 제10조의 2,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휴지에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해당 시설의 휴지 및 그 결의서,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	신고
3	정신요양시설 재개신고(법 제10조의 2,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정신요양시설 폐지신고(법 제10조의 2,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신고서 해당 시설의 폐지사유 및 그 결의서, 입소자의 조치 계획서,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설치허가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5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신고서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별표 5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신고
6	사회복지시설 변경 신고(법 제15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8호 변경신고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 시행규칙 제8조)	로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신고(법 제17조, 시 행규칙 제10조의3)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휴지	별지 제10호 신고서 해당 시설의 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 함), 입소자의 조치계획 서,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8	사회복지시설 재개 신고(법 제17조, 시 행규칙 제10조의3)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9	사회복지시설 폐지 신고(법 제17조, 시 행규칙 제10조의3)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신고서 해당 시설의 폐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 함), 입소자의 조치계획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설치신 고필증 첨부	제1항)	

(39) 지역보건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건강진단신고(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1조)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 접종 또는 순회진 료등 주민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 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건강진단등 신고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6조 제1항)	신고

(40) 혈액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혈액의 품질관리 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법 제13 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혈액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3조 제1항)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2	부적격혈액 폐기 처분 결과보고(법 제8조 제2항)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9조)	보고
3	채혈금지 대상자 채혈결과보고(법 제7조의2 제3항, 시 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혈액원	대한적십자사총 재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		별지 제1호의9(전자문서 포함) 검사 대상자의 명단 및 검사결과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9조)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혈액검사 결과보고(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5항,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혈액원	보건복지부장관(대한적십자사총재)	채혈일부터 3일 이내	별지 제4호의2 통보서 헌혈자의 인적사항, 혈액 및 혈액제제 종류, 헌혈일자 및 헌혈증서번호, 혈액검사 결과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3조 제1항)	보고
5	품목신고(법 제6조 제4항)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신고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품 목 신고
6	혈액원 휴업신고 (법 제6조의4 제1 항, 법 제5조의5 제1항)	혈액원 개설자	보건복지부장관	휴업하려는 때	별지 제1호의5 혈액원 휴업 신고서		-신고 -제재수 단 필 요함
7	혈액원 재개업신고 (법 제6조의4 제1 항, 법 제5조의5 제1항)	혈액원 개설자	보건복지부장관	재개업하려는 때	별지 제1호의5 혈액원 재개 업신고서		-신고 -제재수 단 필 요함
8	혈액원 폐업신고 (법 제6조의4 제1 항, 법 제5조의5 제1항)	혈액원 개설자	보건복지부장관	폐업하려는 때	별지 제1호의5 혈액원 폐업 신고서 혈액원개설허가증 첨부		-신고 -제재수 단 필 요함
9	특정수혈부작용신 고(법 제10조 제1 항, 시행규칙 제13	의료기관의 장	당해의료기관소 제지의 보건소장 을 거쳐 보건복	특정수혈부작용발 생사실을 확인한 날 부터 15일이내, 사망	별지 제8호 신고서 특정부작용발생사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1항)		지부장관(시· 도지사)	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3조 제1항)	
10	부적격혈액폐기처 분현황 제출(시행 규칙 제11조 제2항)	혈액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매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4호 부적격혈액 처리현황		자료 제출

(41) 화장품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법 제16 조 제1항)	제조업자·수입 자·판매자 기타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지방식 품의약품안전 청장)			200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30조), 1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32 조 제1항)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조업자·수입업자	화장품업 단체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연간 생산·수입 품목수, 품목별 생산·수입량 및 생산·수입금액 등 당해 연도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1항)	보고
3	화장품 제조업신고 (법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시 별지 제1호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조업자가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8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시설의 내역서 첨부		
4	화장품 제조업 변경신고(법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화장품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3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 제조업자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조업자가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내역서 첨부		
5	화장품 제조업 휴업신고(법 제6조,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휴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9호 화장품 제조업 휴업신고서 신고필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	-신고 -1 개월 미만 휴업 제외
6	화장품 제조업 재개업신고(법 제6조,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재개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9호 화장품 제조업 재개 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	-신고 -1 개월 미만 재개업 제외
7	화장품 제조업 폐업신고(법 제6조,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 제조업자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9호 화장품 제조업 폐업 신고서 신고필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검안·진단사실 신고(법 제5조 제1 항,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감염인을 진단하 거나 감염인의 사 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보건소장	즉시	별지 제1호 인체면역결 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 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 (사망) 신고·보고서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 로,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가검물번 호, 감염인의 사망 및 검 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 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 함), 진단한 의사의 성명 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 관의 주소 및 명칭 기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신고 (보고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 발견 신고(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학술연구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즉시	별지 제1호의2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감염인 발견신고서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기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신고 (보고적 성격)
3	감염인(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사망신고(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의사 또는 의료기관	보건소장	즉시	별지 제1호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발견(사망) 신고·보고서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기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신고 (보고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신고(법 제8조 제5항,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	보건소장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 익명신고·보고서 감염인의 성별, 확인진단일, 가검물번호, 검진 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기재		신고 (보고적 성격)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가축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법 제51조 제1항)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축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축사육 현황,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방역조치 사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			축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2	죽거나 병든 가축신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지체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의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동물약품이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사료를 판매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60조 제1항)	
3	동물수입 사전신고 (법 제3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지정검역물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	사전에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원장이 정하는 동물수입 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신고 -동물수입신고서 제출기간을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44) 농산물 품질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 고·자료제출(법 제7조의4 제1항)	인증기관등(인증 기관, 우수관리시 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 증을 받은 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 제38조)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2	이력추적관리 자 료 제출(법 제7조 의7, 시행규칙 제 15조의25)	이력추적관리 농산 물을 생산·유통 또 는 판매하는 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 입고·출 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 리에 필요한 자료(서면이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료 제출
3	농산물우수관리인 증기관의 지정 변 경신고(법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국립농 산물품질관리 원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의9 농산물우 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 용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5조의10)				류 첨부	업무의 정지 (법 제6조의2 제1항)	
4	농산물우수관리시 설의 지정변경신고 (법 제7조 제2항, 시 행규칙 제15조의14)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로 지정받은 자	농림수산식품 부장관(국립농 산물품질관리 원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의12 농산물우 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우 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에 대한 우수 관리 업무의 정지(법 제7 조의2 제1항)	신고
5	농산물이력추적관 리 등록변경신고 (법 제7조의5 제4 항, 시행규칙 제15 조의21)	농산물이력추적관 리 등록신고를 한 자	농림수산식품 부장관(국립농 산물품질관리 원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의16 농산물이 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 경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8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지위승계신고(법 제7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의7)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승계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의13 승계신고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인증기관이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신고

(45) 비료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24조 제1항)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비료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서류제출 (법 제24조 제2항)	비료업자·비료 의 운송업자 및 창 고업자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 청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	자 료 제 출 (행 정 조 사 적 성 격)
3	비료생산업자, 비 료수입업자 반기별 보고(시행규칙 제 17조 제3항)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시장·군수·구 청장을 거쳐 농 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보고하 고, 농촌진흥청 장에게 통보	매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	-비료생산업자 : 별지 제 22호 생산한 비료의 종 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 산량·판매량·재고량 -비료수입업자 : 별지 제 22호 수입한 비료의 종 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 입국·수입량·판매 량·재고량		시 행 규 칙 제17 조 제3항 에 서 는 비 료 생 산 업 자, 비 료 수 입 업 자 에 대 한 반 기 별 보 고 의 무 부 과 의 법 적 근 거 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24조를 들고 있으나, 법제 24조는 이들에 대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비료생산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11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등록증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1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비료생산업자 폐업신고(법 제11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자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폐업연월일, 등록증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1조)	신고
6	비료수입업 신고(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0호 비료수입업 신고서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영업장의 소재지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	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법 제20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함) 첨부		
7	비료수입업 변경 신고(법 제12조 제 2항, 시행령 제14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1조 제1항)	비료수입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 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비 료수입업 신고증 첨부(정 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1조)	신고
8	비료수입업 폐업 신고(법 제12조 제 2항, 시행령 제14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1조 제2항)	비료수입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폐업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3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대표자의 성명), 폐 업연월일, 비료수입업 신 고증 첨부(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신고

(46) 사료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법 제27 조 제1항)	사료제조업자· 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6조 제1항)	보고(행 정조사 적성격)
2	사료안전관리인 보고(법 제10조 제 3항)	사료안전관리인	시·도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되는 사 실을 알았을 때 지 체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6조 제1항)	보고
3	사료제조업 제조 시설 변경신고(법 제8조 제3항 시행 규칙 제7조 제2항)	사료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3호 제조시설 변 경신고서 사료제조업등록증, 변경 내용 및 사유서 첨부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 업의 전부 또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일부의 정 지(법 제25조 제1항)	
4	사료제조업 휴업 신고(법 제8조 제4 항, 시행규칙 제7 조 제3항)	사료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4호 휴업신고서 사료제조업등록증, 사유 서 첨부		신고
5	사료제조업 재개업 신고(법 제8조 제4 항,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사료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4호 재개업신고서 사료제조업등록증, 사유 서 첨부		신고
6	사료제조업 폐업신 고(법 제8조 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제 3항)	사료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4호 폐업신고서 사료제조업등록증, 사유 서 첨부		신고
7	사료제조업 승계신 고(법 제9조 제3항,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시·도지사	지위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5호 제조업승계신 고서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8조)	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8	사료수입신고(법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료수입업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사료관련단체)	해당사료의 통관 전	별지 제15호 사료수입신고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	수입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25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위표본검정 대상 사료인 경우에만 제출함), 한글 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 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 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 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 명서, 상업송장(INVOICE),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p>		

(47)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²⁾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소의 소유자등(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함)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 제1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2	소 출생 등신고(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소의 소유자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위탁기관의 장)	-출생·폐사 : 출생·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입·수출 : 통관	별지 제1호출생등 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5백만원	신고

2) 법률에서 농림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절차가 완료된 날 -양도·양수 : 양 도·양수한 날부 터 30일 이내		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 제1항)	
3	도축업자 도축 신고(법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	도축업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	도축처리결과(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신고)		신고
4	포장처리업자 포장처리신고(법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2호)	식육포장처리업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함)	별지 제4호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신고)		신고
5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의 소유자등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별지 제5호 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48) 수산동식물 질병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법 제 44조 제1항)	수산동식물양식 자, 수산동식물집 합시설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죽거나 병든 수산 동물의 신고(법 제 9조 제1항)	수산동물양식자 와 그 수산동물을 진단하였거나 그 수산동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 병관리사 또는 수 의사 및 해당 수산 동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수산동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 청장	지체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죽거나 병든 수산 동물의 신고(법 제 9조 제2항)	수산동물운송업자 (차량·선박·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 하여 수산동물을 운 송하는 자)	수산동물의 출 발지 또는 도착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동물이 전염성질병에 걸 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체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신고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고(법 제 49조 제1항, 시행규 칙 제74조 제2항)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자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조사기 관의 장)		생산·원료입하·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제3항)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 제8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의5)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질검사원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의4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제1항)	신고
3	수산물가공업 신고(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하려는 자	당해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8호 수산물가공업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함)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의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제2항)	신고
4	수산물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1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3조의2)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		별지 제18호의2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9호 수산물가공업신고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제3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증, 등록 또는 신고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5	생산·가공시설 등록사항 변경신 고(법 제25조 제3 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수산물 생산·가공업자 등	농림수산식품 부장관(품질검 사원장)		별지 제26호의2 생산·가 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26호의3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 시설등록변경신고서 생산·가공시설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행시설등록증, 등 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고

(50) 식품산업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 보고(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식품명인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매년 1회)	별지 제3호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	지정취소(법 제14조 제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8조 제1항)	보고
2	지위승계신고(법 제30조 제1항)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농림수산식품 부장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	지위승계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5호 우수식품인증 승계신고서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함) 1부,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승계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8조 제1항)	신고

(51) 인삼산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15조 제3항)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 제2항)	보고
2	인삼경작신고(법 제4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	인삼식재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 인삼경작신고서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첨부		신고 (임의적 신고)
3	인삼경작변경신고(법 제4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항)	인삼경작신고를 한 자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		별지 제3호 인삼경작변경신고서 인삼경작신고필증 첨부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지위승계신고(법 제4조 제2항)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5호 인삼경작승계신고서 피승계인의 인삼경작신고필증 첨부		신고
5	인삼류제조업신고(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인삼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시설내역서(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 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	-신고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도 매의 목 적으로 수집하 는 자에 게 판매 하는 경 우에는 신고하 지 아 니함
6	인삼류제조업 변경신고(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인삼류제조업자	시장·군수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0호 인삼류제조업 변경 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신고
7	인삼류제조업 휴업 신고(법 제12조 제	인삼류제조업자	시장·군수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0호 인삼류제조업 변경 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항,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8	인삼류제조업 재 개업신고(법 제12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13조 제1항)	인삼류제조업자	시장·군수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0호 인삼류제조 업 변경 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신고
9	인삼류제조업 폐업 신고(법 제12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	인삼류제조업자	시장·군수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0호 인삼류제조 업 변경 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신고
10	인삼류제품류 부산 물제조·가공의 신 고(법 제12조 제4 항, 시행령 제3조)	인삼류제조업자	시장·군수		별지 제8호 인삼류제조 업등신고서		신고 (임의적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인삼류제조업자 지위승계신고(법 제14조 제2항,시 행규칙 제14조)	상속인, 영업을 양 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시장·군수	승계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12호 인삼류제조 업등승계신고서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 업신고필증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신고 -시행규 칙에서 비로소 수수료 납부의 무 부과
12	자체검사업체 시 설·인력 등 변경 신고(법 제17조의 2 제3항)	자체검사업체	국립농산물검 사기관의 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신고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9조 제1항)	영업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제3항)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품목제조보고(법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시·도지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	별지 제28호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 설명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함),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27조 제1항),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첨부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3	품목제조변경보고 (법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	시·도지사	변경일부터 7일이내	별지 제29호 변경보고서	허가를 취소 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 여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법 제27조 제1 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47조 제1항)	보고
4	생산실적 등 보고 (법 제34조 제1항,	도축업·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도축업 : 다음달 5일까지	-도축업 : 별지 제34호 월별 도축실적	허가를 취소 하거나 6월을	-보고 -영업자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청장	-집유업 : 다음달 5일까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 당해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	-집유업 : 별지 제35호 월별 집유실적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 처리업 : 별지 제36호 연도별 생산실적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법 제 27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가 생산 실적등 을 전산 으로 처 리하는 경우에 는 그 전산출 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음
5	도축장외에서의 가 축의 도살·처리신 고(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 1항)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시·도지사		별지 제1호 학술연구용 등도살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축산물수입신고 (법 제15조 제1항,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 고자 하는 자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검역원장)		별지 제10호 축산물수입 신고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 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시행규칙 별표 7의 축산 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 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 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 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 분규격 검토서 사본(식 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축 산물에 한함), 한글표시	허가를 취소 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법 제27조 제1항), 압류 또는 폐기하 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 유자 또는 관 리자에 대하 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 도록 용도·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함),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법 제36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제1항)	
7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변경신고(법 제22조)	도축업자·집유업자·축산물가공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0호 변경신고서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첨부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2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제1항)	
8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휴업신고(법 제22조 제5항, 시행규칙 제32조)	도축업자·집유업자·축산물가공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휴업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1호 휴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허가증 첨부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2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제1항)	
9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재개업신고(법 제22조 제5항, 시행규칙 제32조)	도축업자·집유업자·축산물가공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재개업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1호 재개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허가증 첨부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27조 제1항), 7년 이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제1항)	
10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폐업신고(법 제22조 제5항, 시행규칙 제32조)	도축업자·집유업자·축산물가공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1호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허가증 첨부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2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축산물운반업 또 는 축산물판매업 의 신고를 하려 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23호 축산물운반 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함)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시 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첨부	영업소 폐쇄 (법 제38조 제1 항),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45조 제4항)	신고
12	축산물운반업 또 는 축산물판매업 변경신고(법 제24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36조 제1항, 제2항)	축산물 운반업자 또는 축산물판매 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27호 신고사항변 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신고필증 첨부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 지를 변경하는 경우 : 신고필증,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에 한함), 작업장의 시 설내역 및 배치도, 『떡	허가를 취소 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법 제27조 제1항), 영업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물관리법』에 따른 먹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	소 폐쇄(법 제 38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	

(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관리·감독상 필 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41조)	법 제11조에 따 른 시설설치자, 제 25조에 따른 공 공처리시설설치 자등, 제27조에 따 른 재활용시설의	환 경 부 장 관,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관(법 제11 조에 따른 시 설 설치자에 대 한 경우에 한		관리·감독상 필요한 보 고/자료제출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53조 제2항), 가 축 분 뇨 관 련 영 업 자 의 허가를 취소	보 고 · 자 료 제 출 (행 정 조 사 적 성 격 적 성 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설치·운영자, 제28조에 따른 가축 분뇨관련영업자, 제34조에 따른 설 계·시공업자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하거나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 명령(법 제 32조 제1항), 설계·시공 업자의 등록 을 취소하거 나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 명령(법 제 35조 제1항)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개선명령 이행 보고 (시행규칙 제16조)	법 제17조 제4항 에 따라 개선명 령을 받은 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개선이행보 고서		-보고 -보고의 무의 직 접적 법 률 근거 필요함 -개선명 령을 받 은 사항 이 시행 규칙 제 5조 제 1 항에 따른 변 경허가 의 대상 이거나 같은 규 칙 제6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1 항 또는 제 7 조 제 2 항 에 따른 변경신 고의 대 상에 해 당하여 변경허 가를 받 거나 변 경신고 를 한 경우에 는 같은 규칙 제 12조 제 1 항 에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다른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같음함
3	배출시설 변경신고 (법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	별지 제5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제3항)	신고
4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시행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6호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7조 제1항)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첨부	제3항)	
5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시행규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	별지 제8호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을 변경하기 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제3항)	
6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가축분뇨 방 류 신고(=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 정상운영신고, 법 제17조 제2항, 시 행령 제13조, 시 행규칙 제14조)	배출 시설 설치 자·처리업자 또 는 시설관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 뇨를 방류하는 때 미리	별지 제10호 가축분뇨배 출시설및처리시설의비정 상운영신고서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 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 리시설을 개선·변경 또 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 계도서), 개선기간과 개 선비용, 개선기간 중 배출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 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 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첨부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 가축분뇨재활용신고서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재활용 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	-신고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가축분뇨 재활용 변경신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7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4호 가축분뇨재활용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신고
9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법 제28조,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일부더 30일 이내	별지 제17호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	
10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제4항)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0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5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100만원 이하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계·시공업자 휴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계·시공업자	시장·군수·구청장	휴업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3호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 신고서 허가증 또는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제3항)	신고
12	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계·시공업자 재개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계·시공업자	시장·군수·구청장	재개업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3호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재개업 신고서 허가증 또는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제3항)	신고
13	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계·시공업자 폐업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계·시공업자	시장·군수·구청장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3호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폐업 신고서 허가증 또는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제3항)	신고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법 제34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7조)	배출신고자,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 배출자	환 경 부 장 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 수·구청장	-배출신고자 : 해 당 건설공사 준 공 후 15일 이내 단, 배출기간이 2 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는 다음 연도 2월말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 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함)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 :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출자 : 건설공사	-배출신고자 : 별지 제 28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 수집·운반업자 : 별 지 제29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 30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실적보고서 및 별 지 제31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 -배출자 : 별지 제32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2항)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행정조 사적 성 격적 보 고· 자 료제출 임에도 보고· 자료제 출의무 자, 보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준공검사 전까지	보고서(해당 건설현장에서 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해당 건 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 별 사용량 포함) 이상의 보고서는 건설폐 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 용하여 전송		고내용 및 방법 등이 시 행규칙 에 비교 적 상세 하게 규 율되어 있음
2	건설폐기물처리시 설 설치 및 관리기 준 개선보고(시행 규칙 제22조 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시 설의 개선 또는 사 용중지명령을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시·도지사		개선내용		보고
3	중간처리업자 자 본금, 경영상태, 기 술능력 및 전년도	중간처리업자	협회	매년 2월 15일(재 무제표의 경우에 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 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역이행실적 등 신고(법 제14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6조)				<p>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 는 다음의 서류</p> <p>-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 제14호 각 목 의 공공 투자·출연기 관으로부터 수탁한 건 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 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 건 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p> <p>-위의 자 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p> <p>(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 역 수탁계약서 사본</p> <p>(2) 관할세무서에 제출 한 세금계산서합계표.</p>	(법 제66조 제1항)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함)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법 제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 투자액을 증명할 수</p>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는 서류, 시행령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첨부		
4	배출자 폐기물처리 계획서 신고(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배출자	시장·군수·구청장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당해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신고(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배출자	시장·군수·구청장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당해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신고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법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시·도지사		별지 제18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영기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첨부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법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9조)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		별지 제18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첨부		
8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0조)	건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 27조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2항)	신고
9	권리·의무 승계신고(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시·도지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1호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필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2항)	신고
10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법 제33조 제1항, 시행규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27호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25조)				증,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첨부	(제66조 제1항)	
11	건설폐기물처리업 재개업신고(법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27호 건설폐기물 처리업 재개업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 제1항)	신고
12	건설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법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27호 건설폐기물 처리업폐업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증.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첨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 제1항)	신고
13	건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배출신고자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자료 (보고서)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이 내를 말함)까지			
14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시·도지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자료(보고서) 제출

(5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배출량줄이기계획 의 제출(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0조)	특정수질유해물 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하는 자	환경부장관(광 역 시장·시 장·군수)	-최초의 배출량줄 이기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허가 를 받은 해당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 일까지 -그 후의 배출량줄 이기계획: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 획이 광역시장 또 는 시장·군수에 게 제출된 날을 기	별지 제15호 배출량줄이 기계획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	자료(계 획)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준으로 하여 매 2 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2	관거(管渠)의 검사· 조치결과 제출(법 제 19조)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 수관거 또는 『수 질 및 수생태 보전 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른 배수 관거를 설치·운 영하는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거의 검사와 조치결과	시설의 개선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 제19조 제 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43조 제2항)	자료 제출
3	최종방류구별 배 출량 내용 등 제출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오염부하 량할당대상자)	관리청	시행규칙 제2항 제 2호에 따른 이행시 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 구별 배출량 내용, 할당 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 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 기기 부착 내용		- 자 료 제출 -법적 근 거 필 요함

(5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배출량줄이기계획 의 제출(법 제19조, 시행규칙 제36조)	특정수질유해물 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하는 자	환경부장관(광 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	-최초의 배출량줄 이기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허가 를 받은 해당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 일까지 -그 후의 배출량줄 이기계획: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 획이 광역시장 또 는 시장·군수에 게 제출된 날을 기	별지 제15호 배출량줄이 기계획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제2항)	자료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준으로 하여 매 2 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2	관거(管渠)의 검사· 조치결과 제출(법 제 20조)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 수관거 또는 『수 질 및 수생태 보전 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른 배수 관거를 설치·운 영하는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지체없이	관거의 검사와 조치결과	시설의 개선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 제19조제 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46조 제2항)	자료 제출
3	폐수재이용계획의 제출(법 제22조, 시 행규칙 제41조)	산업단지에 입주하 는 사업자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	환경부장관(광 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	-최초의 폐수재이 용계획: 해당 시설 의 설치·운영일 부터 3년째가 되 는 해의 10월 31일 까지 -그 후의 폐수재이	별지 제17호 폐수재이용 계획서		자료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계획 : 최초의 폐수재이용계획 이 관리청에 제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 일까지			
4	최종방류구별 배 출량 내용 등의 제 출(시행규칙 제23 조 제3항)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오염부하 량할당대상자)	관리청	시행규칙 제2항 제 2호에 따른 이행시 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 구별 배출량 내용, 할당 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 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 기기 부착 내용		자료 제출

※ 완충저류시설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 보고(법 제18조), 폐수재이용 개선계획서 자료 제출 및 보고(법 제22조) 검토할 것

(5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6조 제2항)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시장·군수·구청장	주민입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6조 제2항)	자료 제출

(58) 대기환경보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합확인검사 및 결합의 시정(법 제51조)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제1항)	보고
2	부품의 결합 보고 및 시정/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합 현황의 보고/내용 등(법 제53조,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77조)	자동차제작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 요구율”이라 한다)이 4 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제1항)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보고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보고		
3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법 제53조)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제1항)	보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보고와 검사 등/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출입·검사 등(법 제82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31조)	사업자 ³⁾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게 위임)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제2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5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40조)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	환경부장관	지체없이	개선명령 이행 보고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		보고

3)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인증의 방법 등 (시행규칙 제65조)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	환경부장관(수 입자동차의 경 우에는 국립환 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지체없이	인증시험 결과의 보고		보고
7	인증의 변경신청 (시행규칙 제67조)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수 입자동차인 경 우에는 국립환 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 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 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		보고
8	자동차제작자의 검 사 인력·장비 등 (시행규칙 제70조)	자동차제작자	환경부장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 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 과 등을 보고		보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운행차 정밀검사 (시행규칙 제89조)	정밀검사대행자 나 지정사업자	시·도지사	지체없이	정밀검사 결과의 보고		보고
10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교육결과 보 고(법 제77조, 시 행규칙 제128조)	교육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	환경기술인 교육결과의 보고		보고
11	지도(시행규칙 제 129조)	교육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 명령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12	배출시설의 설치 허 가 및 신고 등/변경 신고(법 제23조, 시 행령 제11조, 시행 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을 설치하 려는 자 / 변경신고 를 하려는 자	환경부장관	변경신고시 신고 사유가 제1호·제 1호의2·제2호 또 는 제5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변 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시 배출시설 설치신 고서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 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	배출부과금 을 부과·징 수(법 제35조 제1항), 배출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폐 쇄명령(법 제	-신고 -변경 신 고시 별 지 제4 호서식 의 배출 시설 변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1. 양을 예측한 명세서(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 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 석과 황산화물 배출농 도 및 배출량 등을 예 측한 명세서(법 제41 조제3항 단서에 해당 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 경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첨부	38조), 5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90조), 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취소하거나 배출 시설의 폐쇄를 명하 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 시설 조업정 지명령(법 제 36조), 1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94 조제2항)	경 신고 서에 배 출 시설 설치신 고증명 서와 변 경내용 을 증명 하는 서 류를 첨부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변경 신고(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배출시설 그 밖에 사항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 명령(법 제36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4조제2항)	신고
14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변경 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	사업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미리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모 등(법 제30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4조)				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 변경신고시 별지 제6호 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 명령(법 제36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1조)	
15	환경기술인/자격 기준 및 임명기간 /환경기술인의 신고(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53조)	사업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	환경기술인 임명 신고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또는 개입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 명령(법 제36조)	
16	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 발생사업/발생사업의 신고(법 제43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8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시·도지사	신고시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 변경신고시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4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 려는 자		이를 변경한 날부 터 7일 이내)			
17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규제/배출시설의 신고 등/배출시설의 변경신고(법 제44 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을 배출하는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에게 위 임) 또는 시·도 지사	신고시 시설 설치 일 10일 전까지 변경신고시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 경 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 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시 별지 제27호서식 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 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 · 방지사설 설치명세서 를 첨부 변경신고시 별지 제29호 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 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 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명서를 첨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8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법 제45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시·도지사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신고 -제44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
19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전문 정비업자의 정비 등(법 제63조, 시행규칙 제94조)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재검 사시 정비점검확인서의 제출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		제출
20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계획서(시행)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	환경부장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개선계획서의 제출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령 제21조, 시행규 칙 제38조)	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4)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5)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6)		

4)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5)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6)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첨부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1	개선계획서의 제출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9조)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환경부장관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굴 뚝 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 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 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배 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 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 선계획서 에 제38조 제1항 각 호의 구 분에 따 른 사항 을 적어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지		
22	저항유의 사용(시행령 제40조)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의 제출		제출
23	방지시설의 설치 등/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8조)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서류 제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4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시행 규칙 제31조)	사업자	시·도지사		자가방지시설의 설계· 시공 관련 서류의 제출		제출
25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시 행규칙 제32조)	공동 방지시설 운 영기구(이하 “공 동 방지시설 운영 기구”라 한다)의 대표자	시·도지사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변경내용의 제출		제출
26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시행규칙 제45조)	확정배출량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 려는 자	시·도지사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 배출량 명세서에 1. 황 함유분석표 사본 (황 함유량이 적용되 는 배출계수를 이용하 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첨부		
27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55조)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시·도지사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서류 제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					
28	운행차 정밀검사 (시행규칙 제89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	시·도지사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 제출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		제출
29	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70조)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운행차 개선 확인결과의 보고		보고
30	운행차의 개선명령 (시행규칙 제106조)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	확인검사대행자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	운행차 개선명령서의 제출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		제출
31	교육계획(시행규칙 제126조)	교육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기술인 교육계획의 제출		제출

(5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제한행위 신고/통 보(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군사·항해·조난 구호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으로 인 하여 그 방재를 위 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 양자원개발행위, 도 서관발촉진법 제6 조제3항의 사업계 획에 의한 개발행위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행위를 한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행위 종료 후 30일 이내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행위자, 행위의 기간, 행 위대상지역(도면 포함), 행위의 내용·규모, 행위 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 는 복원계획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6조 제1항)	신고· 통보(보 고적 성 격 - 보 고로 봄)

(60) 먹는물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국민건강상의 위 해를 방지하고 검 사기관의 적정 운 영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보고(법 제42조)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 관련영업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 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이 나 지방환경청 장) 또는 시· 도지사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1조제2항),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 분(법 제48조 제1항)	보고(행 정 조사 적 성격)
2	환경영향평가 조 사대행자 등록사 항 변경보고(시행 규칙 제8조)	환경영향평가 조사대행자	지방환경관서 의 장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무실소재지, 시설·장 비 또는 기술능력		-보고 -시행규 칙 제8 조 제5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의 등 등록사항 변경등 등록과의 관계 불 분명(이 중등록 여부 확인)
3	정수기 제조업신고 (법 제21조 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정수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	시·도지사		별지 제9호 정수기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정수 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고 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 를 말함), 정수기의 사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58조), 폐쇄조치(법 제46조제1항), 등록을 취소하 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후관리계획서 첨부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제1항)	
4	정수기 제조업변경 신고(법 제21조 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정수기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0호 정수기 제조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첨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폐쇄조치(법 제46조제1항),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제1항)	신고
5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법 제21조 제4항, 시행규칙 제	정수기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시·도지사		별지 제9호 정수기 수입판매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조 제1항)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함), 보관시설명세서,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첨부	금(법 제58조), 폐쇄조치(법 제46조제1항),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제1항)	
6	정수기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법 제21조 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0호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첨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폐쇄조치(법 제46조제1항),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개월 이내의 영 업정지처분(법 제48조제1항)	
7	먹는샘물 제조업 휴업신고(법 제21 조 제6항, 시행규 칙 제11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8	먹는샘물 제조업 재개업신고(법 제 21조 제6항, 시행 규칙 제11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9	먹는샘물 제조업 폐업신고(법 제21 조 제6항, 시행규 칙 제11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먹는샘물 제조업 가벼운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21 조 제6항, 시행규 칙 제11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11	먹는샘물 제조업 지위승계신고(법 제25조 제3항, 시 행규칙 제15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 영업자의 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고
12	먹는샘물 수입판 매업 휴업신고(법 제21조 제6항, 시 행규칙 제11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13	먹는샘물 수입판 매업 재개업신고 (법 제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폐업신고(법 제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15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가변운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16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지위승계신고 (법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17	수처리제조업 휴업신고 (법 제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수처리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8	수처리제조업 재 개업신고(법 제21 조 제6항, 시행규 칙 제11조)	수처리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19	수처리제조업 폐업 신고(법 제21조 제 6항, 시행규칙 제 11조)	수처리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0	수처리제조업 가벼 운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 제21조 제 6항, 시행규칙 제 11조)	수처리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1	수처리제조업 지 위승계신고(법 제 25조 제3항, 시행 규칙 제15조)	수처리제조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 영업자의 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2	정수기 제조업 휴업 신고(법 제21조 제6 항, 시행규칙 제11조)	정수기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3	정수기 제조업 재 개업신고(법 제21 조 제6항, 시행규 칙 제11조)	정수기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4	정수기 제조업 폐업 신고(법 제21조 제6 항, 시행규칙 제11조)	정수기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5	정수기 제조업 가벼 운 등록사항 변경신 고(법 제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정수기 제조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6	정수기 제조업 지위승계신고(법 제 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정수기 제조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7	정수기 수입판매업 휴업신고(법 제 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8	정수기 수입판매업 재개업신고(법 제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9	정수기 수입판매업 폐업신고(법 제 21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0	정수기 수입판매업 가벼운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21 조 제6항, 시행규 칙 제11조)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15호 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함) 허가 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명서 원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31	정수기 수입판매업 지위승계신고(법 제25조 제3항, 시 행규칙 제15조)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 영업자의 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 제2항)	신고
32	먹는샘물수입신고 (법 제26조, 시행 규칙 제11조)	먹는샘물을 수입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6호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 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먹는샘물의 원 수가 법 제3조 제2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3	수처리제·용기수 입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1조)	수처리제·용기를 수입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6호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제조일자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자가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자가기준 및 자가 규격검토서,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 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 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 명하는 서류 첨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4	지정받은 사항의 중요사항 변경 신고 (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	지정검사기관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8호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함)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와 검사기관 지정서 첨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법 제43조 제6항)	신고
35	취수량 측량결과 제출(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8호의2 샘물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취수량·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 첨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	자료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36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 제출(법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도지사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전산망을 통하여 수위, 수량, 수질 등 측정결과 제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제1항)	자료 제출
37	수입실적보고서 제출(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환경부장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8호의3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자료 제출

(61) 소음·진동규제법⁷⁾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47조, 시 행규칙 제71조)	사업자,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대상 인 자, 법 제25조 에 따라 폭약을 사 용하는 자, 자동차 제작자, 확인검사 대행자, 소음발생 건설기계제작자 등, 법 제45조 제1 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법 제15조·제16 조·제17조·제 18조·제23조 또 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 행 여부를 확인하 려는 경우 -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 나 법 제33조에 따 른 제작차의 소음 검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에 따른 준수 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7)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법률 명칭(소음진동관리법) 및 내용 변경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진동의 적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 등의 지도·점검 계획 에 의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정당 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2	인증시험 결과보 고(시행규칙 제31 조 제4항)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	환경부장관(외 국에서 반입하 는 자동차의 경 우에는 국립환 경과학원장)	지체없이	인증시험 결과		
3	인증시험 변경보 고(시행규칙 제34 조 제2항)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	환경부장관(외 국에서 반입하 는 자동차의 경 우에는 국립환 경과학원장)	지체없이	인증시험 변경내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검사 결과 보고(시행규칙 제 36조 제2항)	자동차제작자	환경부장관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검사결과		
5	배출시설 설치신 고(법 제8조, 시행 령 제2조, 시행규 칙 제9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호 배출시설 설 치신고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 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 금(법 제58조)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 령(법 제18조)	
6	배출시설 설치변 경신고(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시 행규칙 제10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해당 시설의 변경 전 (사업장의 명칭을 변 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별지 제5호 배출시설 변 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0일 이내)	치허가증 첨부	업정지 명령(법 제17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	
7	가동개시신고(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	별지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명령(법 제1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신고
8	가동개시일자 변경신고(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시	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미리	별지 제7호서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일자 변경신고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13조)					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명령(법 제17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9	환경기술인 임명신고(법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자(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시장·군수·구청장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 명령이행결과보고(법 제20조), 개선결과보고(법 제38조)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36조 제1항)	사업자, 법 제23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자, 제26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제30조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39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제2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자발적 협약 이행 결과 보고(시행규 칙 제21조)	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자발적 협 약을 체결한 자	수도권대기환 경청장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3	자발적 결합시정 계 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시행규칙 제36 조의8 제3항)	제조사등(배출가 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 조·공급 또는 판 매하는 자)	국립환경 과학원장	스스로 결합을 시정 할 것을 통지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결함시정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 진의 판매 명세서, 결합발 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결합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결 함시정대상 장치 소유자 에 대한 결합시정내역의 통지계획서 첨부		보고
4	사업장 설치신고 (법 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대기관리권역을 정 할 당시 해당 대기 관리권역에서 『대 기환경보전법』 제 23조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	환경부장관(서 울특별시장등)	대기관리권역이 정 하여진 날부터 3개월	별지 제4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고 제1항 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 치 중인 자					
5	배출량 산정결과 제 출(법 제16조 제5항, 시행규칙 제15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환경부장관(수 도권 대기 환경 청장)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배출량 산정결과		-자료제 출(보고 적 성적) -법 제16 조 제 4 항에 따 라 측정 기기를 부착· 가동하 는 총량 관리사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자는 같은 조 제 8 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
6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출(법 제 23조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판매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실적,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성능점검 결과제출 (법 제26조의4 제4 항, 시행규칙 제36 조의11)	배출가스저감장 치나 저공해엔진 을 제조·공급 또 는 판매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수 도권 대기 환경 청장)·서울특 별시장 등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 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 차 성능점검 결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제1항)	자료 제출
8	미사용 배출허용총 량 계속사용 제출(시 행령 제21조 제2항)	총량관리사업자	환경부장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 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 용하려는 경우 그 내용		자료 제출
9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저공 해엔진 개조교체증 명서 제출(시행규 칙 제30조 제3항)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서울특별시장등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 체한 경우	별지 제6호 배출가스저감장 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증명서		자료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63) 수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법 제66 조 제1항)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인가관청(환경 부장관,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87조 제2항), 인가를 취소 하거나, 그 효 력의 정지, 공 사의 중지, 공 작물의 개축· 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 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 치(법 제63조 제2항)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수질검사 및 수량 검사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등 에 대한 통계자료 보고(시행규칙 제 19조 제4항)	일반수도사업자	환경부장관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 결 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 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보고 -보고기 한 필 요함
3	상수원보호구역 내 에서의 경미한 행위 신고(법 제7조 제4 항, 시행령 제14조)		시장·군수· 구청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의 경미한 행위(상하수도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 거,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농업개량시 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 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 지의 형질변경,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4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신고(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3조)	일반수도사업자	환경부장관	지체없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위탁계약[체결·해지]신고서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법 제63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7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저수조청소업 신고 (법 제34조 제1항)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정 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 쇄명령(법 제 35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84조)	-신고 -『수도시 설의 청 소 및 위생관 리 등에 관한 규 칙』 참조
6	저수조청소업 변경신 고(법 제34조 제1항)	저수조청소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정 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 쇄명령(법 제 35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신고 -『수도시 설의 청 소 및 위생관 리 등에 관한 규 칙』 참조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벌금(법 제 84조)	
7	저수조청소업 휴 업신고(법 제34조 제2항)	저수조청소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7조 제3항)	-신고 -『수도시 설의 청 소 및 위생관 리 등에 관한 규 칙』 참조
8	저수조청소업 폐 업신고(법 제34조 제2항)	저수조청소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7조 제3항)	-신고 -『수도시 설의 청 소 및 위생관 리 등에 관한 규 칙』 참조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전용상수도 인가 사항 변경신고(법 제52조 제2항)	전용상수도를 설치한 자	특별시장·광 역시장·시 장·군수(광역 시의 군수는 제 외함)				신고
10	전용상수도 휴지 신고(법 제52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26조 제2항)	전용상수도 설치자	특별시장·광 역시장·시 장·군수(광역 시의 군수는 제 외함)		별지 제8호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 휴지신고서		신고
11	전용상수도 폐지 신고(법 제52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26조 제2항)	전용상수도 설치자	특별시장·광 역시장·시 장·군수(광역 시의 군수는 제 외함)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 폐지신고서		신고

(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68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101조)	사업자, 종말처리 시설(공공하수처 리시설 중 환경 부령이 정하는 시설 을 포함한다)을 설 치·운영하는 자,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60조의 규 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 고를 한 자, 제6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자, 제7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유 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2조 제3항)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를 위탁받은 자					
2	수질오염사고 신고 (법 제16조)	유류·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	당해 물질로 인하 여 수질을 오염시 킨 때 지체없이			신고
3	배출시설 설치신고 (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시 행규칙 제38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의 사용명세 및 제품 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 서와 그 도면.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 령(법 제42조 제1항), 배출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같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만 제출한다) 첨부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배 출시설의 설 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에는 그 배 출시설의 폐 쇄명령(법 제 44조), 5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76조)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법 제33조 제1 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8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5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 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 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 령(법 제42조 제1항), 배출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 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 인 경우에는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법 제4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6조)	
5	배출시설/방재시설 가동신고(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자(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이하 같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미리	별지 제16호 가동개시신고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법 제42조 제1항), 년 이하의 징역 또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	
6	배출시설/방재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미리	별지 제17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 령(법 제42조 제1항), 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78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환경기술인 임명신고(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63조)	사업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별지 제30호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2조 제1항)	신고
8	환경기술인 개입신고(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63조)	사업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사유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30호 환경기술인 개입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2조 제1항)	신고
9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법 제53조,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7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서에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 장(이하 “개발사업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 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 금(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82조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업을 하려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자,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p>한 자료</p> <p>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p> <p>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p> <p>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p>		
10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법 제53조, 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이나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별지 제35호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령 제73조, 시행 규칙 제73조)	자	지방환경청장)	다른 환경영향평 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 19 조 제 2 항 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 나 사업계획을 확정 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53조제1항제2 호 또는 영 제72 조 제 5 항 제 2 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 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 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 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첨부	만원 이하의 벌 금(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82조제2항)	
	기타 수질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을	환경부장관	시설을	별지 제37호 기타 수질	1년 이하의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설치신고(법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제86조)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자하는 자	(시·도지사)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서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첨부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8조)	
1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신고(법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제86조)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자를 한 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변경 전,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	별지 제40호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 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2조 제3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판청과 기타 수질 오염원이 같고, 입지 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까지	하는 서류 첨부		
13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행령 제51 조 제1항)	사업자	환경부장관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을 위한 자료		자료 제출
14	최종방류구별 배 출량 명세 등 제 출(시행규칙 제15 조 제2항)	오염할당사업자등 (오염부하량을 할당 하거나 배출량을 지 정받은 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 류구별 배출량 명세, 할 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 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자료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의 제출		

(65) 습지보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습지의 훼손 또는 보전·관리사업의 시행자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1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66) 악취방지법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자(악취관리 지역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환경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 제2항)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연구원장)		별지 제7호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악취검사기관지정서 첨부		보고 (신고적 성격)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악취방지계획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첨부		
4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변경 전	별지 제4호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내역서,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제2항),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법 제13조)	신고

(67) 야생동·식물 보호법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한 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제3항)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의하여 양도 등의 신고를 한 자,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물·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자					
2	수렵장운영실적 보고(법 제50조 제4항,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수렵장설정자	환경부장관	수렵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수렵장운영실적(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포획상황,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현황, 수렵장 운영경비내역 및 수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입금의 사용내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신고(법 제14조 제4항, 시행규칙 제17조)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 또는 이식을 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포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	별지 제9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 수·장소·시간 및 포획 방법 등 기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제2항)	신고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관신고(법 제14조 제5항, 시행규칙 제18조)	위생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당해 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관신고서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제2항)	신고
5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 신고(법 제16조 제6항,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25호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 는 서류, 양도하려는 국제 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 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 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 함), 양수받으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 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 호시설이 필요한 동·식 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첨부	제3항)	
6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신고(법 제16 조 제6항,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국제적멸종위기 종의 수입·반입 을 허가받은 자 또 는 국제적멸종위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 종 폐사·질병신고서 수의사진단서(질병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기종을 양수한 자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함),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제3항)	
7	야생동물 포획신고 (법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27조)	누구든지	시장·군수· 구청장	포획 후 5일 이내	별지 제28호 야생동물포획허가증 포획한 개체수·장소· 시간 및 포획방법 등 기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제3항)	신고
8	보호구역 출입신고 (법 제33조 제5항, 시행규칙 제44조)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야생동 물의 번식기에 시· 도보호구역 또는 보 호구역 안으로 들어 가려는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별지 제40호 (시·도)야 생동·식물보호구역 출 입신고서 출입예정장소를 표시한 입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함)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제3항)	신고
9	수렵신고(법 제50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64조)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수렵 한 자	수렵장 설정자 (시장·군수· 구청장)	수렵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66호 수렵동물 포 획승인서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 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기재	제3항)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법 제18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32조)	특정수질유해물 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하는 자	환경부장관(광 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	-최초의 배출량줄 이기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허가 를 받은 해당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 일까지 -그 후의 배출량줄 이기계획 : 최초의	별지 제15호 배출량줄이 기계획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	자료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배출량줄이기 계획이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2	물이용부담금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 제출(법 제 30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수도사업자	영진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원수(原水)의 취수량,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자료 제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	관리청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 기기 부착 내용 제출		

(6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검사 등·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을 신청한 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제6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				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 27조제2항), 취급 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36조제2항)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제37조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유독물의 수입신고·수입신고 면제(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환경부장관(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 -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변경신고 - 별지 제1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확인증 원본 첨부		
3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등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시·도지사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독물영업의 등록사항(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첨부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27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200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63조제1항)	
4	폐업 등의 신고/취 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등(법 제26조, 제34조, 시 행규칙 제26조)	유독물영업자, 취 급제한·금지물 질영업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에게 위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	유독물영업의 폐업, 휴 업신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 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 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 우만 해당한다)를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조 제1항)	-신고 -해당 영 업자의 사업장 에 있는 유독물 로 인하 여 사람 의 건강 이나 환 경을 해 칠 우려 가 있다 고 인정 되면 해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권리·의무의 승	유독물영업자의 권	환경부장관(시	승계한 날부터	권리, 의무 승계 신고	200만원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계 등/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법 제28 조, 제34조, 시행 규칙 제27조)	리·의무를 승계한 자, 취급제한·금지 물질영업자	· 도지사에게 위임)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 서에 1. 등록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조 제1항)	
6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공 동활용의 변경신 고(법 제30조, 시 행규칙 제30조)	유독물영업자	시·도지사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 소, 공동활용하는 유독물취 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공동활용하는 업무 대행자의 대행범위, 유독물 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 독물 사고 시의 공동대 처방안 변경 신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 서에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조 제1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첨부		
7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신고면제(법 제3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31조)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환경부장관(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 -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 변경신고 -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미변경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3조제2항)	신고
8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허가 신청 등(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첨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 36조제2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9	사건의 보고 등 (법 제4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신고		신고
10	화학물질 확인(법 제9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	환경부장관(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조 제1항)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다.)					
11	유해성심사/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조 제1항)	자료 제출 요청
12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법 제17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법 제27조제2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	자료 제출 명령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6조제2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13	위해성평가(법 제18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조 제1항)	자료의 제출 명령
14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자체방제 계획의 수립·제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	해당 사고대비물질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	자체방제계획의 제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	-제출 -자체방제 계획을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 대상/자체방제 계획의 수립·제 출(법 제39조, 시 행령 제22조, 시 행규칙 제37조)	하는 자	는 지방환경청 장에게 위임)	부터 30일 이내, 제조량·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 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보관· 저장시설의 증가 에 따른 경우: 증 가된 날부터 30일 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 물영업 이나 취 급제한 ·금지 물질영 업을 하 려는 자 는 유독 물영업 의 등록 또는 취 급제한 ·금지 물질영 업의 허 가를 신 청하는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우 자체방제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0) 자연공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경미한 행위 신고 (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공원관리청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 명령(법 제3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4조)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자연마을지 구 또는 밀집마을 지구 안에서 상업 시설 또는 숙박시 설을 주택으로 용 도변경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보고/자료제출 (법 제36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6조 제1항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보고/자료제출 (행정조사적 성격)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따라 재활용의무 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제27조에 따른 조합					
2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재활용의무생산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해당 연도 1월 말일까지	-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함) 및 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계획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5조)				<p>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p> <p>별지 제10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 포함함)</p> <p>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첨부</p>	제2항)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 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함)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의 회수·재사용 계획,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 한 홍보 계획		
3	재활용의무결과보 고서 제출(법 제18 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3호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 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제2항)	보고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호 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첨부		
4	전년도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매년 3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 보고서 등 제품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함) 첨부		- 자료 제출 -법적 근거 필요함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 출고 실적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적, 수입업자의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있음(시행령 제15조제1항)
5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관련 자료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매년 4월 15일까지	별지 제9호의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 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 자료 제출 - 법적 근거 필요함 - 관계 공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첨부		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 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 활용을 위탁 받은 자의 출고량, 재 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시행령 제29조제1항)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미반환보증금 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 서 제출(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	비용기보증금이 포 함된 제품의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	한국환경공단		별지 제9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 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법 제15조의3 제 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 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 는 경우에만 해당함) 첨부		-계획/보 고 서 제출 -법적 근 거 필 요함

(7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자료 제출(법 제29조 제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배 출사업자, 법 제23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자료 제 출(행정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항, 시행규칙 제 23조 제1항)	조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법 제37조 제3항)	조사적 성격)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신고(법 제 20조 제2항)	배출사업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	배출시설의 고장·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제1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따른 공공수역 으로 배출된 경우 지체없이			
3	잔류성유기오염물 질함유폐기물 보관 시설 및 재활용시 설 신고(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 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 질함유폐기물을 재 활용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		별지 제6호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 용신고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제2항)	신고
4	잔류성유기오염물 질함유폐기물 보관 시설 및 재활용시 설 변경신고(법 제 23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9조 제4항)	잔류성유기오염물 질함유폐기물 보관 시설 및 재활용시설 신고를 한 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		별지 제6호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 용변경신고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제2항)	신고
5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법 제24조 제 2항, 시행령 제23	관리 대상 기기 등 (변압기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 일 이내	별지 제8호 관리대상기 기 등 신고서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기·설비·제품)의 소유자			서류 첨부	(법 제37조 제2항)	
6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관리대상기기등 신고를 한 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제2항)	신고
7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 제출(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3년마다(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5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자료 제출

(7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함) 또는 국토해양부장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에 한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5조 제5항)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자, 파쇄재 활용업자,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2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 결과 보고(법 제13조)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32조 제1 항,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15조 제1항)	자동차재활용업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별지 제18호 폐자동차재 활용업 변경신고서(전자 문서 포함)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 명세서, 시설설 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 공정도, 수집·운반·재활 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 획서, 재활용시설 운전계획 서 첨부		신고
4	폐자동차재활용업 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35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환경부장관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1호 폐자동차재활 용업자 지위승계신고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증 원본 1부, 변경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 수의 경우에는 양도·양 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 상속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4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5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 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 1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와 시행령 제1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계획서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함)에 제출할 수 있음	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1부 첨부		
6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환경부장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보고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제출(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자동차폐차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14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폐차업자용)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5조 제5항)	보고서 제출
8	파쇄재활용업자 결과보고서 제출	파쇄재활용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15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	100만원 이하의	보고서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4조 제2호)		국환경공단)		용업자용)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 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폐자동차를 재 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잔재물재활 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9	파쇄잔재물재활용업 자의 재활용과 에너 지 회수실적 제출 (법 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3 항, 시행규칙 제14 조 제3호)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한 국환경공단)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16호 파쇄잔재물 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 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 용사업자용)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 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파쇄잔재물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보고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제출(법 제31조 제4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14조 제4호)	폐가스처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17호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보고서 제출
1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처리, 에너지 회수 실적 제출(법 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행령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보고서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1조 제5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5항)	
12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 관리표 제출(법 제39조)	폐전기·폐전자 제품이나 폐자동 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제5항)	-관리표 제출 -환경부 장관이 국토해 양부장 관과 협 의하여 고시한 지침에 따름 -운영관 리정보 체계에 인계· 인수 등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
13	제품 출고량 관련 자료 제출(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 행규칙 제5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환경부장관(한국 환경자원공사)	매년 4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 고·수입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 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 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 료 제출 -제재가 가해지 지 않거 는 하 나, 법 적 근거 를 두는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말함) 1부,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첨부		것이 바람직함

(7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법 제18조의2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호의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					

(75) 토양환경보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2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자	시장·군수·구청장/환경부장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2항), 토양관련전문기관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그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 23조의6 제3항)	
2	토양오염 누출·유출신고(법 제11조 제1항)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체없이			신고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4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첨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5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서 변경(폐쇄)내역서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2항)	신고
5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 지위 승계 신고(법 제23조의 12 제3항, 시행규칙 제31조의5)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환경부장관	승계일부 1월 이내	별지 제17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 신고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첨부		신고
6	오염토양정화계획 제출(법 제15조의6 제2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제2항)	오염원인자	시장·군수·구청장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 포함)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계획서 제출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첨부	제2항)	
7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법 제15 조의6 제2항, 시행규 칙 제19조의3 제3항)	오염원인자	시장·군수· 구청장	정화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의3 오염토양 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 서로 된 계획서 포함)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2항)	계획서 제출

(76) 폐기물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39조 제1항)	관계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구청장			제3항)	성격) -2010.07. 03 개정 사 항 참조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법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별지 제6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별지 제7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시행규칙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별지 제8호 사업장폐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착공일을 말 함)까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물 배출자 신고서		
3	사업장폐기물배출 자 변경신고(법 제 17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8조 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 자 신고를 한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자의 경우 :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4	폐기물 수출신고(법 제2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항)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폐기물 을 수출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유 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5조의2 폐기물 수출신고서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 격(F.O.B)으로 명시된 수출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66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출 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수출 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첨부		
5	폐기물 수입신고 (법 제2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환경부장관(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5조의3 폐기물 수입신고서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시행규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지 제5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수입 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입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6	폐기물 수출변경신고(법 제24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7항)	폐기물 수출신고를 한 자	환경부장관(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5조의2 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명서 원본[본조 신설 2008.8.4]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7	폐기물 수입변경신고(법 제24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7항)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	환경부장관(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5조의3 폐기물수입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명서 원본[본조 신설 2008.8.4]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8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법 제25조)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	-상호변경·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별지 제21호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폐기물처리업자 허가를 취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1항, 시행규칙 제33조)	처리업허가를 받 은 자	의 장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연락장소나 사무 실 소재지 변경, 임 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의 경우 : 변경 전	허가증, 변경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를 명령(법 제27조제2항),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65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8조제2항)	
9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법 제29조 제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았 거나 받으려는 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25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66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항 단서,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외의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함),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함) 첨부		
1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법 제29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별지 제2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3항,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자 외의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 전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함),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함) 첨부		
11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팩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법	해당시설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 또는 별지 제28호 사용개시신고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소각시설(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함), 매립시설, 열균분쇄시설(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의 경우 :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첨부	제3항)	
12	권리·의무승계신고(법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7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계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5호 권리·의무승계신고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거나 신고한 자의 권리·의무승계자			서·신고증명서와 변경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13	휴업신고(법 제37조, 시행규칙 제59조)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 고를 한 자	허가 또는 신고관청	휴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48호 휴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미처리된 폐기물 의 처리계획서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14	재개업신고(법 제 37조, 시행규칙 제 59조)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 항에 따라 신고 를 한 자	허가 또는 신고관청	재개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48호 재개업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 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 만 해당함)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15	폐업신고(법 제37 조, 시행규칙 제 59조)	폐기물처리업자 또 는 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한자	허가 또는 신고관청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48호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미처리된 폐기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처리계획서 첨부	(법 제68조 제2항)	
16	폐기물재활용신고 (법 제46조 제1항, 시행규칙 제67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 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	시·도지사	재활용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56호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6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그</p>			<p>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첨부</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17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법 제46조 제3항, 시행규칙 제67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	변경 전	별지 제56호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 신고증명서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법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9조)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8호 사용종료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사후관리 추진일정, 빗물배제계획, 침출수 관리 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외함),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발생가스 관리계획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함),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첨부		
19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신고(법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9조)			폐쇄예정일 1개월 (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8호 폐쇄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사후관리 추진 일정, 빗물배제계획,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 시설은 제외함),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함),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0	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 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 하는 자, 『유통산 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 규모점포를 개설 한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 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관 장·농수산물중 합유통센터를 개 설·운영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p>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영위하는 자,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7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22조 제1항)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2항)	-보고·자료제출(행정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출폐기물을 운반 하는 자, 법 제10 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입허 가를 받은 자, 법 제1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입폐 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법 제 1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입폐기 물을 양수한 자					조사적 성격) -2010.09. 23 시행 법률 제 10153 호에 따 라 과태 료 규정 조문 변 경(이하 같음)
2	폐기물수출계획 취소신고(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5 조 제2항)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은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별지 제3호 폐기물미수 출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2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수입폐기물 양수 신고(법 제13조 제 2항, 시행령 제14 조 제1항)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양수일부터 5일 이내	별지 제6호 수입폐기물양 수신고서 당해 폐기물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당해 폐기물 사용 또는 처리계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2항)	신고
4	수입폐기물 처리결 과 제출(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	수출국 주무관 청과 수출한 자	처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7호 Receipt & Com- 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Notification Form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2항)	자료 제출
5	폐기물수출실적보고 서 제출(시행령 제19 조 제1항)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출허가를 받은 자, 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법 제13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	환경부장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8호 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 은 자 : 별지 제9호 수입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보고서 제출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 별지 제10호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 적보고서 제출		

(78) 하수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오수·분뇨의 유 출로 인하여 오염 피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69조 제1항, 시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 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채	환경부장관(지 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80조제3항), 분뇨수집·운 반업자의 허가 를 취소하거 나 6개월 이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허가취 소, 등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령 제40조)	활용하는 자, 분 뇨수집·운반업 자, 처리시설설 계·시공업자, 처 리시설제조업자, 처 리시설관리업자				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명령(법 제 49조제1항), 처리시설설 계·시공업 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또 는 처리시설 관리업자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 지명령(법 제 54조제1항)	등록취소 는 과다 한 제재 조치임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배수설비 설치신고 (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시 행규칙 제22조)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공공하수도 관리청		별지 제7호 배수설비 설 치신고서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 량, 배수설비설계서, 공 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 자,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 방법 기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4항)	신고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법 제34 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개인하수처리 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3호 오수처리시 설·정화조 설치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도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 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 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첨부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법 제 34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규모·처리 방법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3호 오수처리시 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 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 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 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 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5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법 제34 조 제2항, 시행령	개인하수처리 시설 을 폐쇄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4호 오수처리시 설·정화조 폐쇄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4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 수관로 약식 도면 첨부	(법 제80조 제3항)	
6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법 제39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34조 제1항)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	시장·군수· 구청장	미리	별지 제19호 오수처리시 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 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 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 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그 밖의 경우에는 비정상운 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 내용에 관한 서류 첨부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 관리·유지 에 필요한 운영기 구 설치신고(법 제 39조 제6항, 실령 령 제26조 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공동으로 이용하 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에 오수를 유입시 키는 건물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건물등의 소 유자	시장·군수· 구청장	대표자가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0호 오수처리시 설·정화조 운영기구설 치신고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 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 를 기재한 서류, 건물 등에 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 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 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 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 한 규약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8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대	개인하수처리시 설 공동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0호 오수처리시 설·정화조 운영기구설치 변경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표자변경신고(법 제39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4항, 시행규칙 제35조)	기구 설치신고를 한 자				(법 제80조 제3항)	
9	분뇨재활용신고(법 제44조 제1항, 시행규칙 제40조)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 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22호 분뇨재활용 신고서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퇴비 저장 시설 설치명세서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7조)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분뇨재활용변경신고(법 제44조 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분뇨재활용 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22호 분뇨재활용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11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법 제45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45조)	분뇨수집· 운반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5호 분뇨수집· 운반업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 신고(법 제51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9호 개인하수처 리시설설계·시공업변경 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1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변경신고 (법 제52조 제1항, 시행규칙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 설제조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된 날부터 30 일 이내	별지 제31호 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변경신고 (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개인하수처리시 설관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7호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업 변경신고서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15	휴업신고(법 제56 조, 시행규칙 제 66조)	분뇨수집·운반 업자, 처리시설설 계·시공업자, 처 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 리업자	허가 또는 등록 관청	영업을 휴업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9호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 설설계·시공업, 개인하 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 업신고서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16	재개업신고(법 제 56조, 시행규칙 제 66조)	분뇨수집·운반 업자, 처리시설설 계·시공업자, 처 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 리업자	허가 또는 등록 관청	영업을 재개업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9호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 설설계·시공업, 개인하 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업 재 개업신고서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7	폐업신고(법 제56조, 시행규칙 제66조)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	허가 또는 등록 관청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9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폐업신고서 등록증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0조 제3항)	신고

(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법 제1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최초 배출량줄이기계획 : 허가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별지 제6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제품생산공정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량, 특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1항)	-계획서 제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해의 10월 31일까지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 :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시·도지사에 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 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p>	<p>수질유해물질의 배출공 정과 배출량,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내용, 처 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 량,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 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 접 치수시설 내용, 특정수 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 출량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 자계획, 법 제15조의2 제 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 획 포함</p>		과태료 상 한 높음
2	배출량줄이기변경 계획 제출(법 제15 조의2 제1항, 시행	특정수질유해물질 의 배출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변경 사유와 내용 등을 기 재한 변경계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획서 제출 -별도의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13조 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양 식 없음
3	관거 검사결과의 제출(법 제15조의3 제2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下水管渠)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配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등)	지체없이	관거의 정기검사와 조치의 결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1항)	- 자 료 제출 -유사 입 법 레에 비추어 과태료 상 한 높음
4	물이용부담금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제출(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수도사업자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수의 취수량, 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자료 제출

(8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법 제 28조 제2항,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법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자,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제1항)	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환경친화기업 지정 내용 변경신고(법 제 16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33조의3)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환경부장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사항		-신고 -신고절차, 양식 등에 관한 규정 미비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인증기관 변경신고(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인증기관	환경부장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함)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첨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19조)	신고

(81) 환경보건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2.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제1항)	성격) -유사 입 법례에 비추어 과태료 상한 높음

(8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관련 업무사항 보고 (법 제28조 제1항)	법 제5조에 따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확립사 업을 수행하는 자	환경부장관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지도·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법 제28조 제2항)	법 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법 제12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검사대행자, 측정대행업자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도지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5조 제2항)	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3	측정기기 수입신고(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별지 제4호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5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	신고

(83) 환경영향평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의 적절한 이 행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보 고·자료제출(법 제42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제2항)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2	협의내용 이행에 관 련된 자료제출(법 제26조 제2항)	사업자(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환경부장관(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의 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제2항)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보고(법 제43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6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부장관(환경 영향평가협회)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 환경영향평 가대행 실적보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4조 제3항)	보고
4	환경영향평가대행 업 폐업신고(법 제 38조, 시행규칙 제 24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부장관(환경 영향평가협회)		별지 제13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신고

3. 산림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	1	.	2	산림청	제9962호	2010.1.25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9401호	2009.1.30	
3	사방사업법	.	1	.	.	1	산림청	제9176호	2008.12.26	
4	산림기본법	산림청	제9723호	2009.5.27	해당 없음
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10116호	2010.3.17	
6	산림보호법	.	.	1	.	1	산림청	제10250호	2010.4.12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5	.	7	산림청	제10250호	2010.4.12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	산림조합법	·	·	·	·	·	산림청	제8980호	2008.3.21	해당 없음
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	·	산림청	제10026호	2010.2.4	해당 없음
10	산지관리법	·	5	4	·	9	산림청	제9722호	2009.5.27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1	2	·	3	산림청	제9960호	2010.1.25	
1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	3	·	4	산림청	제9763호	2009.6.9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	·	·	산림청	제9177호	2008.12.26	
1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	·	·	·	산림청	제8852호	2008.2.29	
15	계	1	10	16	0	27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경영계획 신고(법 제9조제3항,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자	산림청장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 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 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립·벌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 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신고
2	권한 행사 보고(시 행령 제28조제3항)	권한을 위임받은 자	산림청장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 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 사방사업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방사업계획제출 (법 제6조제1항 단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		사방사업계획을 제출		자료 제출

(3) 산림보호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산불 신고 및 보고 (법 제36조)	산림이나 산림 인 접지역에서 불씨 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	산림청, 지역산 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	즉시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법제14조제3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사업 착수 5일 전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2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시행규칙 제10조제7항)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3	채종립등에서의 벌채신고(법제19조제5항, 시행규칙	산림소유자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립등의 지정목적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1조)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법 제79조 제1항제1호)	
4	입목벌채의 신고(법 제36조제4항, 시행 규칙 제44조)	벌채등을 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 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입목벌채등을 하 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9조 제1항제2호)	신고
5	필요보고 및 자료 제출(법 제67조)	중요생산업자, 산 림조합 또는 산림 조합중앙회, 산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보고 및 자료 제출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사업법인,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녹색사업단</p>			<p>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법제25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79조제2항제5호)</p>	

(5) 산지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산지전용 경미사항 변경신고(법 제14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		신고
2	산지전용신고 및 변 경신고(법 제15조제 1항)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 시설 등 산촌개발사업 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를 하지 아니 하고 산지전용 을 하거나 거 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산지전 용신고를 하 고 산지전용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변경 신고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용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법 제55조제1호)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 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에 의 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 물·야생화 및 관상 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 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3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57조제1항제1호)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토석채취 경미사항 변경신고허가(법 제 25조제1항 단서)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 하고 자 하는 자	산림청장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 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 및 제7호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5	토사채취신고 및 변경신고(제25조 제2항)	토석을 굴취·채취 하고자 하는자	산림청장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 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변경 신고
6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						
7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및 변경 신고(법 제30조)	지정된 채석단지 에서 석재를 굴 취·채취하고자	산림청장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 재를 굴취·채취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신고 -변경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는 자			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의 벌금	
8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채석경제성의 평가 결과제출(법 제26조 제1항)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		자료 제출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발견신고(법 제7조)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	신속하게	발견사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신고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견한 자	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사무소 등 인근행정기관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발견신고(법 제10조)	산림소유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유림관리소장	지체없이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관련 자료제출(법제13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휴원신고(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 제출		신고
2	수목원의 폐원신고 (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 등록의 말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3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자	국립수목원장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I.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관련 자료제출(법 제17조제3항)	수목원을 운영하 는 자	산림청장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Ⅱ.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 공정거래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3	1	·	8	공정거래위원회	제8630호	2008.2.4.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	6	·	9	공정거래위원회	제9554호	2009.7.1.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3	5		9	공정거래위원회	제10171호	2010.3.22.	
4	소비자 기본법	5	4	·	1	10	공정거래위원회	제10170호	2010.3.22.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	·	·	1	공정거래위원회	제8979호	2008.3.21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	·	·	1	공정거래위원회	제10169호	2010.3.22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3	3	·	7	공정거래위원회	제10172호	2010.3.22	
8	제조물책임법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제6109호	2002.7.1	해당없음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1	·	3	공정거래위원회	제10167호	2010.3.2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1		·	3	공정거래위원회	제9616호	2009.4.1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제9084호	2008.9.29	해당없음
	계	16	18	16	1	51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법 제6조의2제1항, 시행령 제5조의3)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내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률 제43조 제7항 제1호)	변경 신고
2	자율규약의 심사요청(시행령 제16조)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한 서면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협회의회의 회의 (법 제19조 제4항)	소회의	전체회의		협회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회의 의결은 협회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협회의회의 회의 (법 제19조 제6항)	가맹사업당사자 (분쟁당사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는 협회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의견서)
5	조정 등(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		보고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조정 등(법 제23조 제5항)	분쟁당사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 까지 분쟁당사자에 게 통지	협의회는 당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 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조사서)
7	분쟁의 조정 등 (시행령 제25조)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협의회는 법의 규정에 의 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주소 등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 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8	보고(법 제40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 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 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보고 -임의보 고지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독과점적 시장구조 의 개선등(법 제3조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통계)
2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법 제8 조, 시행령 제15조)	지주회사를 설립 하거나 지주회사 로 전환한 자	공정거래위원회	설립등기일부터 30 일 이내 합병등기일 또는 분 할등기일부터 30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1억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68조제1호)	신고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 일부 4개월 이내			
3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에 관한 보고(법 제8조의2제7항, 시행 령 제15조의6)	지주회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 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억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68조제2호)	보고
4	기업결합의 신고(법 제 12조, 시행령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	기업결합 신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1 억원 이하, 회 사 또는 사업 자단체의 임원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 인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주식소유현황의 신고(법 제13조제1 항, 시행령 제20조)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또는 채무 보증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	공정거래위원회	매년4월말까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 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 유현황·채무상황 및 다 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1억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68조)	신고
6	채무보증현황 신고 (법 제13조제2항, 시 행령 제20조)	채무보증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공정거래위원회	매년4월말까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	1억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68조)	신고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7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신고(시행령 제 32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8	입찰관련 정보 제출 (법 제19조의2제2 항, 시행령 제34조)	공공기관의 장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보고 자료 제출
9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법 제 55조의6제4항, 시행 령 제64조의3)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		(내부) -서면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법 제5조1항, 시행령 제6,7,8조, 시 행규칙 제6조)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 로 신고한 자-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2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 생한 날(자산·부채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신고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물 제58조제2항제1호)	
3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법 제5조제3항, 시행령 제7조제5항, 시행규칙 제8조)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물 제58조제2항제1호)	신고
4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변경신고(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다단계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	허위로 신고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8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 개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	허위로 신고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6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자료제출 (법 제13조제4항, 제5 항, 시행령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정보공개를 위한 관련 자 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함.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55조제 3의2호)	자료 제출
7	공제조합의 보고 서 제출(법 35조의 2제1항)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		자료 제출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을 명할 수 있다.		
8	시정권고 시정조치 명령 보고(법 제40조, 시행령 제4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내부 보고
9	평가·인증사업의 공 정화(법 제39조제3항)	평가·인증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 ·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4) 소비자 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함정보의 보고의 무(법 제47조, 시행령)	사업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중대한 결함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4조, 35조, 36조)		장	되면 그 날부터 5 일 이내	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제86조제1항 제3호)	
2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법 제48조, 시행령 제36조)	사업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보고
3	위해물품등의 시정 명령 등(시행령 제 38조제1항)	소비자안전센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
4	위해물품등의 시정 명령 등(시행령 제 38조제3항)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제출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률 제84조 제1항제1호)	
5	위해물품등의 시정 명령 등(시행령 제 38조제6항)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84조제1항제1호)	보고
6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법 제52조 제2항)	소장	원장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보고
7	수거·파기 등의 권고 (시행령 제37조제1항)	소비자안전센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
8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비자안전센터	중앙행정기관의	분기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지정·운영 등(시 행령 제39조제5항)		장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 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위해 정보 보고
9	검사와 자료제출 등 (법 제77조제1항, 시 행령 제64조)	사업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공무원에게 사업자 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 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업무에 관한 보 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 로 보고한 자 또 는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제출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또는 자료 제출
10	자료 및 정보제공요 청 등(법 제78조제1 항, 시행령 제65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 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자료 제출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법 제16조)	조합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시정조치명령 (법률 제16조 제2항)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표준약관(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 13조, 제14조, 제15 조, 제40조, 시행규 칙 제8조)	통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 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신규로 신고하는 경 우로서 인터넷도 메인 이름 및 호스 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고증의 교	통신판매업자 신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 42조제1호)	신고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일부터 30일 이 내에 이를 보완(시 행규칙 제8조)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40조, 시행규칙 제9조)	통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 제2항 제3호)	-신고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3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 영업재개의 신고(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7	통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营业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營業을 재개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 제2항 제3호)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40조, 시행규칙 제10조)			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자료제출(법 제27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29조)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시정 조치 명령 (제32조)
5	평가·인증사업 운용상황 자료제출 (법 제29조 제3항)	평가·인증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평가 인증사업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자료 제출
6	시정권고 시정조치 보고(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시·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내부 보고 -전자문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에 의 하여 보 고할 수 있음.
7	시도지사의 소관사항 자료제출(법 제 30조 제2항)	시·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내부)

(8) 제조물 책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없음.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사업자 등의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5조 제2항, 제 3항, 시행령 제5조)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실증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사업 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 태료, 법인 또 는 사업자단체 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률 제20조)	자료 제출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 리결과에 관한 자 료 제출	자율심의기구등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 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 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3	표시 광고의 자율 심의기구 신고(법 제14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16조의 2)	자율심의기구등 을 운영하는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 하는 자의 신고		-신고 -서면 또는 전자 문서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	----------	---------	-----------	--------------	------------------	----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급사업자의 증거서류 제출(법 제 21조 제3항)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보고(법 제 24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보고
3	공탁사실의 보고(시행령 제14조)	공탁을 한 원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지체없이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서면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지식경제부	제9495호	2009.3.18	해당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552호	2009.3.25	해당없음
3	계량에 관한 법률	2	2	·	·	4	지식경제부	제9496호	2009.3.18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	6	·	8	지식경제부	제9679호	2009.5.21	
5	광산보안법	1	1	4	·	6	지식경제부	제9506호	2009.3.18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	·	1	·	4	지식경제부	제9010호	2008.3.28	
7	광업법	1	2	6	·	9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해당없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	국가표준기본법	·	·	·	·	·	지식경제부	제9590호	2009.4.1	해당없음
10	기술개발촉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630호	2009.4.22	해당없음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	·	·	·	1	지식경제부	제9582호	2009.4.1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9980호	2010.1.27	
1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1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881호	2009.12.30	해당없음
15	대외무역법	2	3	1	·	6	지식경제부	제9630호	2009.4.22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3	·	·	3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332호	2009.1.7	
		·	·	·	·	·			2008.2.29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8	대한석탄공사법						지식경제부	제8852호		해당없음
19	도시가스사업법	4	3	11	2	20	지식경제부	제9533호	2009.3.25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	1	.	1	지식경제부	제9685호	2009.5.21	
2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9708호	2009.5.22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1	.	.	2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2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	3	2	.	6	지식경제부	제9884호	2009.12.30	
24	별정우체국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2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2	.	.	5	지식경제부	제9583호	2009.4.1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	.	.	1	지식경제부	제10230호	2010. 41.5	
2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500호	2009.3.18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9687호	2009.5.21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	1	·	3	지식경제부	제9368호	2009.1.30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31	산업디자인진흥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9688호	2009.5.21	
32	산업발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1	11	·	14	지식경제부	제9626호	2009.4.22	
34	산업표준화법	2	2	1	·	5	지식경제부	제9535호	2009.3.25	
35	상공회의소법	·	·	·	·	·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	·	4	·	8	지식경제부	제10246호	2010.4.12	
37	석탄산업법	1	·	3	·	4	지식경제부	제9774호	2009.6.9	
3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1	2	·	3	지식경제부	제10012호	2010.2.4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9	송유관 안전관리법	·	·	3	·	3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40	수출보험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617호	2009.4.1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3	·	·	3	지식경제부	제10253호	2010.4.12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	6	·	8	지식경제부	제9534호	2009.9.26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929호	2010.2.8	해당없음
44	에너지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4.14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3	7	·	1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4.14	
4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1	·	1	·	2	지식경제부	제9502호	2009.3.18	
4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1	4	·	6	지식경제부	제9503호	2009.3.18	
48	외국인투자 촉진법	1	·	8	·	9	지식경제부	제9774호	2009.6.9	
		1	·	·	·	1			2009.1.30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제9401호		
5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375호	2009.1.30	해당없음
5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	·	·	지식경제부	제9628호	2009.4.22	해당없음
52	우편대체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10126호	2010.3.17	
53	우편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9636호	2009.4.22	
54	우편환법	·	·	·	·	·	지식경제부	제10125호	2010.3.17	해당없음
5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	·	7	·	8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56	유통산업발전법	1	2	2	·	5	지식경제부	제9774호	2009.6.9	
5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685호	2009.5.21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	7	·	10	지식경제부	제9780호	2009.6.9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2	3	·	·	5	지식경제부	제9685호	2009.5.21	
6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61	전기공사사업법	3	1	4	·	8	지식경제부	제9680호	2009.5.21	
62	전기사업법	1	3	7	·	11	지식경제부	제9680호	2009.5.21	
6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	1	1	·	3	지식경제부	제9535호	2009.3.25	
64	전력기술관리법	·	4	5	1	10	지식경제부	제9680호	2009.5.21	
65	전시산업발전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10027호	2010.2.4	
66	전원개발촉진법	·	1	3	·	4	지식경제부	제9376호	2009.1.30	
67	전자거래기본법	1	1	5	·	7	지식경제부	제9708호	2009.5.22	
6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	1	·	1	지식경제부	제9705호	2009.5.22	
6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1	2	·	3	지식경제부	제9981호	2010.1.27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885호	2009.12.30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	7	.	.	9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해당없음
73	집단에너지사업법	.	1	6	.	7	지식경제부	제9933호	2010.1.18	
74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7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	.	2	지식경제부	제10029호	2010.2.4	
7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	.	2	.	5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77	한국가스공사법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해당없음
7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지식경제부	제9182호	2008.12.26	해당없음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9	한국석유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9681호	2009.5.21	해당없음
80	한국전력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9618호	2009.4.1	해당없음
8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589호	2009.4.1	해당없음
8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	2	2	·	6	지식경제부	제9886호	2009.12.30	
8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2	1	1	·	4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84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	·	·	·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8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3	9	·	13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8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3	5	·	·	8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1	·	·	1	지식경제부	제9686호	2009.5.21	
	계	64	90	151	3	308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계량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시행령 제10조 2항)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	시도지사	제작 또는 수입할 때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2	보고 및 검사 등/계량기 등의 제출	제작업자·수리업자·차체수리업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요구할 때, 공무원이 요구할 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시서(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8조)	수입업자·판매 업자 및 법정계량 을 행하는 자			업자·수리업자·자체수 리업자·수입업자·판매 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수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한 자, 제34 조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 여 계량기 또 는 상품의 제 출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률 제51조 제1항)	
3	교육기관에 대한 보 고(시행령 제29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	지식경제부장관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 과 보고		법률에 보고 근 거없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협회에 대한 보고 (시행령 제31조)	한국계량측정협회	지식경제부장관	장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위 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법률에 보고 근 거없음 보고 요건이 추상 적임.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고압가스의 제조허 가 등/고압가스제 조의 신고대상(법 제4조 2항,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를 제조하려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 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 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4조제2항 전 단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 하고 고압가스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조)				<p>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를 제조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 41조)</p> <p>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 43조제1항)</p> <p>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p>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43조 제3항)	
2	사업 개시 등의 신고(법 제7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자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42조)	개시 신고 중단 신고 폐지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승계/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3조제4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안전관리규정/작성요령(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자등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4항이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3조제1항)	제출
5	안전성 평가 등/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안전성평가대상시설(법 제13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시행규칙 제24조,	사업자등	허가관청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5조)				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40조)	
6	사용신고 등/특정고압가스(법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16조)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42조)	신고
7	고압가스의 수입	고압가스를 수입	시장·군수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제7조나 제21조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신고(법 제21조, 시행규칙 제49조)	하려는 자	또는 구청장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42조)	

(3) 광산보안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신고(법 제8조제1항, 제2항, 영 제33조의3, 제33조의4, 규칙 제19조, 제20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공사착수일 20일이전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6조제1항)	공사 계획 승인·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영 제33조의3(신고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제19조(공사계획의 신고)	제1호)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	승인을 얻은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 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를 한 자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6조제1항 제2호)	완료 신고 폐지 신고
2	보안관리직원 선임·해임신고(법 제13조제3항, 규 칙제36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규칙 제36조)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 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 령에 따라 신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 서로 신고(규칙 제36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를 한 자 -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률 제26조제 1항)	선임 신고 해임 신고
	대리자 선임신고(법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3조제5항, 규 칙 제37조)			선입후 15일 이내 (규칙 제37조)	관리직원이 여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직무를 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식경 제부령에 따라 미리 대리 자를 선입하고 이를 신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 서로 신고(규칙 제37조)	과태료 규정 없음	대리인 선입 신고
3	광산보안사항 보고 (법 제16조, 영 제 38조부터 제40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사건발생시 (영 제38조) 공사착수전 (영 제39조) 위험발생시 (영 제4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 영 제38조(재해·사고의 보고), 제39조(도급공사의 보고), 제40조(보안보고)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 를 한 자 -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률 제26조제 1항)	보고
4	광산보안도의 작성 제출(법 제17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광 산보안도를 작성하여 이	제17조의 규 정에 위반한	서류 비치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46조)				를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분을 제출 규칙 제46조 (광산보안도의 작성)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6조제1항)	부분 제출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변경등록 등(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2	사업완료 및 추진	광해방지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	다음 연도 3월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제16조제1항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실적 보고/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20조)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자		31일까지	광해방지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9조제1항)	
3	긴급광해방지사업(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광해방지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체 없이	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보고
4	보고 및 검사(법 제29조제1항)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			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 자, 광해방지시설의 소 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 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 무에 관한 보고를 명 할 수 있다.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률 제47조)	

(5) 광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동 광업출원인/ 대표자의 선정신고/ 변경신고(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 13조, 제14조)	공동 광업출원인	지식경제부장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 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 광업출원 인”이라 한다)는 그 중 1 명을 대표로 정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야 한다.		
2	출원인의 명의 변경/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법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20조)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3	사업을 시작할 의무 등/사업 시작 유예신청 등(법 제40조제4항, 시행령 제40조제4항)	광업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한 광업권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태료(법률 제104조제2항)	
4	탐광계획의 신고 등 (법 제41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광업권자	지식경제부장관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
5	사업을 시작할 의무/ 사업의 중단 사유 등 (법 제60조제3항, 시행령 제38조 3항)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중단한 조광권자가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 200만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4조제2항)	
6	토지 사용·수용의 인정/권리취득 등의 신고(법 제72조제3항, 시행령 제56조)	토지 사용·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토지 사용·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7	생산 보고서(법 제83조, 시행령 제59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률 제104조제1항	
8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비치 (법 제84조, 시행령 제60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분(副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4조제2항)	제출
9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감독(법 제89조제2항)	지원을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4조제3항)	보고 제출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자료의 제출	기술이전·사업화	관계중앙행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36조)	촉진사업에 참여한 자	기관의 장		은 제15조의 규정에 따 른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 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 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산업단지내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법 제16조제 4항, 시행규칙 제5	산업단지 안의 입 주기업체	관리기관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 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 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 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의 2)				측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부담금의 예치 등 (법 제7조제3항)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	전기사업자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출

(9) 대외무역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출입의 제한 등 (법 제11조제3항)	수출입승인을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식경제부장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65조)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등을 선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 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수입수량 제한조치 (법 제39조제7항)	이해관계인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 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 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출
5	무역거래자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 (법 제44조제2항)	무역거래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 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 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 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제44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 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있다.	(법률 제59조 제1항)	
6	보고와 검사 등(법 제48조제1항)	수출허가나 상황 허가를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 조제4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등, 전략물자 또는 제19 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 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 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 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 제출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4조제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법 제14조제2항)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3	자료의 제출 등(법 제4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3조제1항)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 등(법 제14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

(12) 도시가스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의 승계 등/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 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승계자 -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2항)	신고
2	사업의 휴업·폐 업 등/사업 휴업 · 폐업의 신고(법 제8조, 시행규칙 제10조)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 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 업을 휴업하 거나 폐업한 자 -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 51조)	
3	천연가스수출입 업의 등록 신청 (시행규칙 제10 조의5제1항)	천연가스수출입업 의 등록을 하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 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 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 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 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4	사업의 개시·휴 업 및 폐업의 신 고(법 제10조의4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	제10조의4 제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고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3항)	
5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법 제10조의5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	신고
6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시행령 제6조 제3항)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지식경제부장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승인대상 등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법 제 11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제 12조)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 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1조제 2항 또는 제 39조의 2 제 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제 11조제 2항 또는 제 39조의 2 제 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	
8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법 제11조 제6항)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계 제출하여야 한다.		
9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설치신 고(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공급시설이 멸실·손괴 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 급한 사유로 제11조제1 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 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 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 치한 후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 급시설을 설 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 한 도시가스 사업자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	신고
10	시공기록등의 보 존·제출/시공기 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법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 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 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제14조제3항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4조제3항, 시행 규칙 제20조 4항)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 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을 위반 하여 완공도 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 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 장에게 제출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 자 또는 도시 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 급시설설치자 ·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률 제54조 제2항)	
11	가스의 공급계획 (법 제18조제1항, 제2항, 3항, 시행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제출 보고 제 18 조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규칙 제28조)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 제18조 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 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도시 가스사 업자 또 는 자가 소비용 직수입 자, 제 18조제 3항에 따른 보 고를 하 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 한 도시 가스사 업자 - 3 천만원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54조 제1항)
12	가스공급량 측정 의 적정성 확보 (법 제21조제3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가스공급 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 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3항)	보고
13	안전관리규정/작 성요령(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 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 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제26조제1항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6조, 제37조)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	
14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3조)	
15	가스안전 영향평가/가스안전 영향평가의 작성요령 (법 제30조의4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4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출하여야 한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0조)	
16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법 제39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62조의2제2항)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 시설설치자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11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7	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 시행규칙 제62조의5)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지식경제부장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18	배관시설이용규정 등/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법 제39조의8제3항, 시행규칙 제62조의10, 제62조의1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도지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53조)	신고
19	배관시설이용규정 등/제조시설이	가스도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요령의 신고/변경신고(법 제39조의8제4항, 시행규칙 제62조의12, 제62조의13)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3조)	
20	보고 등(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도시가스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보고
21	보고 등(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63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다른 법률과의 관 계(법 제15조제3항)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 (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 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 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14)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보고·조사 등 (법 제23조제1항)	민·군겸용기술사 업에 참여한 자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민·군겸용기술사업 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 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제출
2	참여기업의 지원 등(시행령 제19조 의2제1항)	민·군겸용기술사 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 용화하기 위한 지 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민·군겸용기술사업으 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 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 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산보고(법 제8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2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19조제1항)	지원사업 시행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보고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조제1항)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제1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법 제8조제2항)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출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법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법 제15조제5항)	원자력발전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제1항)	제출
5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법 제17조제2항)	원자력발전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6	보고와 검사/보고와 자료의 제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보고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등(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12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라 한다)에 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 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나 시설·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자료 제출 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45조 제1항)	

(17) 별정우체국법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장부의 검사 등 <개정 2001.12.19> (법 제19조제1항)	연합회	급여에 관련된 자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제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시 또는 출석설명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에 응할 때까지 지급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부품· 소재전문투자 조 합의 조직 및 등록 요건 등(법 제6조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기재된 조합결성계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항, 시행령 제7조 4항)				회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3항)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출 보고
3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소재전문기관 등 (법 제16조의2제2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 시행령 제7조의 2)				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보고·검사 등 (법 제38조제1항)	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44조제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항)	
5	보고·검사 등 (법 제38조제2항)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뢰성보증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뢰성보증사업자 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고·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 는 허위의 보 고를 한 자 -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제44조제1항)	보고

(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자료보고(법 제23조)	사업시행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

(2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법 제16조)	조합	지식경제부장관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검사(법 제17조 제1항)	조합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률 제19조 제1항).	보고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국가핵심 기술의 수출신고 (법 제11조제4항, 시행령 제16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 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 술을 보유·관리하고 있 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 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를 하여야 한다.		-신고 -지식경 제부장 관은 국 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 관이 제 1 항 의 규정에 따른 승 인을 얻 지 아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승인 을 얻어 국가핵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심기술 의수출 을한 경우또 는 제4 항의규 정에따 른 신고 대상국 가핵심 기술을 신고하 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 고 국가 핵심기 술의수 출을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우에 는 정보 수사기 관의 장 에게 조 사틀 의 뢰하고, 조사결 과를 위 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해당 국가핵 심기술 의 수출 중지· 수출금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원 상회복 등의조 치를명 령할수 있다.
2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 제17조제2항)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산업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 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 출이나 조사업무의 수 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의 규정을 위 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39조 제1항)	제출
3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료요청 등(법 제27조제1항)	당사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출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법 제21조제3항)	주관기관등	지식경제부장관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에 대한 지원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 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한다.		신고

(24) 산업발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자료 제출/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 이 되는 법인(법 제47조, 시행령 제3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제32조 에 따른 한국생산성본 부,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 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자료	제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를 제출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0조제1항))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장설립등의 승인/변경신고(법 제 13조제1항, 시행 규칙 제7조의 2)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제 13조제 1항 단서, 제 14조의 3제 1항 단서 및 제 20조제 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 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제55조제2항)	
2	제조시설설치승 인/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의 변경 신고(법 제14조 의3제1항, 시행규 칙 제8조의 5)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 축면적 500제곱미터 이 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 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 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 항 단서에 따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법 제 15조제1항, 시행령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		-신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 가동하는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5조 제2항)
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20조의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관리기관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5조제2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개정 2009.2.6> (법 제20조제2항)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의 3제1항 단서 및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5조제2항)	신고
6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시행령)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설립승인신청서 등(법 제2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 36조, 시행규칙 제24조)			제36조제2항)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아파트형공 장 설립완료신고를 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등 (법 제28 조의6제2항, 시행 규칙 제26조의 3)	관리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개월(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관 리단은 관리단이 구성 된 날부터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 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제28조의6제2 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 만원 이하의 과 태료(법률 제55 조제2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해외산업단지의 개발등/해외산업단지의 신고 등 (법 제35조의2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 2)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5조제2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또한 같다.		
9	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등 <개정 2009.2.6>/산업단지의 양수 등 (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45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10	입주계약 등/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법 제38조제4항, 시행규칙 제36조)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산업용지 등의 처 분제한 등/공장등 의 처분신고(법 제 39조제3항, 시행령 제50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관리기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 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 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 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 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 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 는 제4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 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500 만원 이하의 과 태료(법률 제55 조제1항)	신고
12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	관리기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특/경매 등에 의 하여 취득한 산업 용지 등의 처분신 고(법 제40조제2 항, 시행령 제52 조의 3)				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또는 제43조제2 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산업용 지 또는 공장등 을 양도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5조제1항)	
13	입주계약 해지 후 의 재산처분 등/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 도기간(법 제4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3조)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 유로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 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 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 고한 후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 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 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제55조제1항)	
14	보고 및 검사(법 제 48조제1항, 제2항)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 업체·지원기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식경제부장관은 시· 도지사에 대하여, 시·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 는 점유자에 대하여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 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를 한 자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 55조제2항)	보고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6) 산업표준화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인증심사 (법 제17조제3항)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	인증기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 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 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 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 요한 최소량의 시료(試 料)를 인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
2	정기심사 (법 제19조제5항)	인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 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 품(이하 “인증제품”이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승계(법 제35조 제2항)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식경제부장관, 인증기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44조 제1항)	신고
4	보고 및 감사 등	인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제38조 제1항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38조제1항)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4조제1항)	
5	보고 및 감사 등 (법 제38조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인증받은자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46조)	신고
2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 1년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47조)	
3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석유판매업 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4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법 제12조제2 항, 시행규칙 제 15조)	또는 석유판매업자			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 시·휴업 또는 폐업하 였을 때에는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휴업 및 폐업 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률 제 49조제2항)	
5	품질검사/검사기 록의 작성·보존 등(법 제25조제6 항, 시행규칙 제 31조)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석유관리원, 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야 하며,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검사실적을 보 고하여야 한다.		보고
6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제1항,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45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수·구청장은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 조업자등에게 그 사업 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 업자,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 관리법』에 따 른 송유관설치 자 및 송유관관 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9조제2항)	
7	보고 및 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	제38조제1항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법 제38조제2항,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5조)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			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9조제2항)	
8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석유제품 판매가 격의 보고 및 공 개 등(법 제38조 의2제1항, 시행령 제42조의2)	석유정제업자·석 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정제업자·석유수 출입업자 및 석유판매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 매가격을 보고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 제업자·석유 수출입업자 또 는 석유판매업 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49조 제1항)	보고

(28) 석탄산업법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석탄가공업의 등록등/변경신고(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제2항)	신고
2	승계/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등(법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제3항)	신고
3	석탄가공업의 휴·폐지신고등(법	석탄가공업자	시장·군수·구청장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휴·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 한 제재수단	비 고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6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제3항)	
4	보고 및 조사 등 <개정 2005.12.23> (법 제36조제1항)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킬 때,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100만	보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5조제2항)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 관리 등 (법 제14조제3항)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른 소프트웨어공제 조합			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 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 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신고/신고사항 및 절차 등(법 제 24조제1항, 시행 령 제17조, 시행 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 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 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 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 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
3	소프트웨어기술 자의 신고/신고절 차 등(법 제24조 의3제1항, 시행규	소프트웨어기술자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 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13조)				요한 사항을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사계획의 인가 등/인가대상/공사 계획의 신고등(법 제3조제1항, 시행 령 제2조, 제4조)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제3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17조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2	공사계획의 인가/인가대상/신고 등(법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송유관설치자	지식경제부장관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7조 제1항)	신고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	지식경제부장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7조제1항)	

(31) 수출보험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보고 및 조사(법 제 56조제1항)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공사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 약이나 그 밖에 수출보험 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또는 수 출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고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법 제13조 제3항)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설비인증기관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 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 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2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법 제17조제4항)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 액을 지원받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 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관련 통계의 작성 등 (법 제25조제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 ·사용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출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와 조사/보고 와 조사의 절차 등 (법 제38조, 시행규 칙 제55조)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	지식경제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52조제2항)	제출
2	사고의 통보(법 제 39조, 시행규칙 제 56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한국가스안전 공사	즉시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 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 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 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 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 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52조제2항)	-신고 -별표 25에 따른다.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발생 통보		
3	사업 개시 등의 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15조)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시장·군수·구청장)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7일 전까지	사업 개시, 폐업, 재개업 신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제1항)	신고
4	승계/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법 제8조, 시행규칙 제16조)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	허가관청	승계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지위승계신고서에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제1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공급자의 의무(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20조)	액화석유가스 충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 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해예 방조치 신고서		신고
6	안전관리자/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6조, 시행규 칙 제27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지체 없이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	신고
7	공급규정/공급규 정의 변경신고/변 경신고서(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허가관청		공급규정 신고 및 변경신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 정 신고서·변경신고서에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 내용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첨부		
8	안전관리규정(법제1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허가관청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2조제1항)	-제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

(3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	----------	---------	-----------	--------------	------------------	----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당사항 없음						

(35) 에너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법 제19조, 시행 규칙 제14조)	유관기관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	지식경제부장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에너지 사용자 가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받은 때 에는 특 별한 사 유가 없 는 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검사 등(법제66조, 시행령 제33조)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78조제4항), 에너지절약전	보고 명령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문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제26조), 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33조)	
2	지도·감독(시행령 제44조)	시공업자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명령		보고 명령
3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측정결과의 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 9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76조)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측정 결과의 신고(법 제 19조, 시행령 제16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공단에 위탁)	대기 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76조)	신고
5	대기 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신고(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8조)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공단에 위탁)	대기 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신고
6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에너지사용량 신고 (법 제31)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 (에너지다소비사	시·도지사 (공단에 위탁)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27조)	업자)			기자재의 현황, 전년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의 신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7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설치자	시·도지사 (공단에 위탁)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법 제40조)	검사대상기기설치자	시·도지사(공단에 위탁)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	신고
9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법 제10조, 시행령 제20조)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1항)	제출
10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법 제11조)	사업주관자	지식경제부장관(공단에 위탁)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	자료 제출
11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	평균효율관리기 자재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법률 제 17조)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78조제4항)	

(37)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검사등 (법 제19조)	협회 또는 조합	지식경제부장관		업무사항 파악에 필요한 보고 명령		보고 명령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변경신고(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 1. 엔지니어링활동 전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자	지식경제부장관 (협회에 위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 -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1. 영 제3조제7호의 규정	지원 배제(법 제1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1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엔지니어링활동 중 일부의 양도· 양수의 경우 : 양 도자 및 양수자 3.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합병의 경 우 : 합병 후 존속 하는 자 4.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분할의 경우 : 분할 후 존 속하는 자 5.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 은 자			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 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 구조직도(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 업의 경우에는 해당부 서의 기구조직도)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 원현황(영 제3조제8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 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현황) 1부 첨부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 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 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 고증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계인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검사(법 제25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1조)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실적 등의 보고 명령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판매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보고 명령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적 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판매실적 보고서		
2	제조업의 허가/허가 신청 등(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경미한 제조업 변경신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제2항)	신고
3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지위승계 신고 (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식경제부장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제2항)	신고
4	제조업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제조업자	지식경제부 장관	사업의 휴업·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	제조업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제2항)	신고
5	제조 수량의 허가/허	특정물질을	지식경제부장관	매년 11월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	1백만원 이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가신청(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제조하려는 자		15일까지	정물질의 제조 수량 신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 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	의 과태료(법 제32조제2항)	
6	파괴확인/파괴확인 신청 등(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제조업자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정밀화학 산업진흥회에 위탁)		특정물질 파괴보고서의 제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제출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조사 및 시 정 등(법 제28조)	외국투자자, 외국 인투자기업, 기술 도입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의 보고 명령		보고 명령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 관계 금융기관 의 장, 그 밖의 이 해관계인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 한 외국인투자/외국 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신주 등의 취 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법 제5조 시 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	지식경제부장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장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 ·지사 및 사무 소의 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 의 장이 지정하 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	미리	외국인의 신주 취득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변경신고시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 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의/신고/절차/변경신고사항 등 (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외국인	지식경제부장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	미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신고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2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주식등의 취득신고(법률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	지식경제부장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신고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신고
5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외국인	외국인	지식경제부장관(대한무역투자	미리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등(법률 제8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진흥공사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 2부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6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신주 등의 취	외국인	지식경제부장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	미리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려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특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신고 등(법 제 8조의2 시행령 제6 조 시행규칙 제2조)		자진홍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		는 별지 제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신고내용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7	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자본재의 처분신고(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8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식경제부장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미리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 신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 2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			의 벌금(법 제 34조)	
8	주식등의 양도 등/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법 제23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외국투자자	지식경제부장관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 439조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회생절차	주식 양도 신고 별지 제2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개시의 공고일 부터 30일 이내			
9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신고대상 기 술도입계약의 범 위(법 제25조 시행 령 제31조 시행규 칙 제22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에 게 위탁)		외국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신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 서 2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신고

(4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경영에 관한 의견 제출등/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	출자회사	지식경제부 장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 제출 / 지체없이 보고	출자회사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 요구	출 자 회 사 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자료	자료제 출 또는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사항(법 제19조 시 행령 제16조)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	의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 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지 도,감독규정).	요구

(41) 우편대체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수표의 분실 등(시 행규칙 제30조)	가입자	우편대체관서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 표의 분실·도난 등의 사 고 신고		신고

(42) 우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우편물 내용의 신고(법 제27조)	발송인	우편관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편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신고 요구		신고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검사(법 제 3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 취소(법 제17조제1항), 1천만원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생산신고를 한 자,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제1항)	
2	수입승인 등/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신고(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경미한 사항의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 취소 (법 제17조제1항), 1천만원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 제1항)	
3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수입승인 및 신고(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1조)	신고
4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법 제10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체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 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제1항)	신고
5	생산승인/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사항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 취소(법 제17조제1항), 1천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제1항)	
6	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15조)	고시된 품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국가책임기관의 장		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생산 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제1항)	신고
7	경유신고(법 제21조 시행령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국가책임기관의 장		경유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경유신고서 제출 별지 제21호서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1조)	신고
8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에 관한 서식(법 제22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연구시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1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4 호서식의 연구시설설치· 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서	제44조제1항)	

(44) 유통산업발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등(법 제45조 시행규칙 제25조)	우수체인사업자· 중소유통공동도 매물류센터운영자 · 우수도매배송서 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시행자, 유통사업자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		사업실적 등의 보고 명령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52조제1항)	보고 명령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신고(법 제12조 시행 규칙 제6조)	대규모점포개설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 점포관리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신고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 조제2항)	신고
3	대규모점포 휴· 폐업의 신고(법 제 13조의 2, 시행규 칙 제6조의 2)	대규모점포개설자	시장·군수· 구청장		대규모점포 휴·폐업의 신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 모점포휴업·폐업신고서		신고
4	전문상가단지 건 립의 지원/지원요 건 등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전문상가단지 건립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 획의 제출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법 제32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	공동집배송센터 신탁계 약서의 제출		제출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통계 및 실태조사 (법 제27조)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	정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 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도, 감독규정).		자료 제출 요구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토지취득신고의 통보(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	관리권자		토지취득신고의 신고		신고
2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공장등의 양도신고 등(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	관리권자		공장등의 양도신고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사용)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0조제3항)	신고
3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	세관장		물품 반입 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0조제1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신고(법 제30조 시행령 제19조)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 서 국외로 반출(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자	세관장		국외반출 신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신고
5	역외작업/신고 등(법 제34조 시행령 제 24조)	입주기업체	세관장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 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 하고자 하는 물품을 포함 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 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 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작 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 하여 신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역외작업신고서를 세관 장에게 제출		
6	역외작업물품의 반출신고 등(법 제 35조)	입주기업체	세관장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	신고
7	재고기록 등(법 제38 조 시행령 제26조)	입주기업체	세관장		외국물품 멸실, 분실 신고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	제출
8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법 제29조)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	세관장		물품 수입 신고	수입신고 및 관 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에서 관세영역 으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제 270조 및 『특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법 제57조제2항).	
9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법 제31조)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세관장		내국물품확인서·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0조제2항)	제출
10	입주기업체의 재고 관리상황의 조사 등 (법 제39조)	입주기업체	세관장		회계장부, 원재료 및 제품의 관리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	자료 제출 요구

(4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보고명령 등 (법 제19조 시행령 제22조)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위탁)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 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 보고 명령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을 중단(법 제17조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24조제1항)	보고 명령
2	보고/보고명령 등 (법 제19조 시행령 제22조)	무역조정지원근 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위임)		사업에 관한 사항 보고 명령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24조제1항)	보고 명령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법 제6조)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	지식경제부장관 이나 무역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출 요청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보고(법 제19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위탁)	무역조정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 및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의 제출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법 제17조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4조제1항)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정계획의 완료 보고서를 제출			
5	보고 명령(시행령 제22조)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보고서의 제출		제출

(4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제규정(법 제9조 의 2)	조합	지식경제부 장관		공제규정의 보고		보고
2	보고서의 제출과 서 류의 검사 등(법 제 41조)	조합	지식경제부 장관		조합 해당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제출 명령

(49) 전기공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법 제29조의2)	공사업자	시·도지사		공사업자의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 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보고 명령
2	감독(법 14조)	공사업자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기타 공사업자 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보고		보고
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시행규칙 제12조의2)	지정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의 보고		보고
4	공사업의 등록/등록기준/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의2)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	3년이 지날 때마다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등록취소(법 제28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공사업의 승계/승계 신고 등(법 제7조 시 행규칙 제7조의2)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시·도지사(공 사업자단체에 위탁)	양도·양수의 경 우에는 그 계약일 (분할 또는 분할합 병에 의한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부터 30 일 이내, 합병의 경 우에는 그 등기일 부터 30일 이내, 상 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	공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 기공사업승계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신고
6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공사업자 의 변경신고사항/ 등록사항 변경신 고/공사업의 폐업 신고(법 제9조 시	공사업자	시·도지사(변 경신고의 경우 공사업자단체 에 위탁)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업자의 등록사항 변 경신고 및 폐업신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 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사 업폐업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1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7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공사 실적등의 제출(법 제31조 시행규칙 제18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공사업자단체에 위탁)	매년 2월 15일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인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인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1항)	신고
8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자료의 제출요청등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17조)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기관및단체등	지식경제부장관 (공사업자단체에 위탁)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 제출 요청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50) 전기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법 제96조의2, 시행규칙 제50조의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		보고
2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사업개시신고(법 제9조/시행규칙 제8조)	전기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에 위임)		사업개시 신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2항)	신고
3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법 제26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1조)	전기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매년 12월 말까지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2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법 제61조,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전기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2항)	신고
5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법 제61조, 시행규칙 제28조,	전기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신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6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명령(법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9조)					제12조제1항)	
6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법 제6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공사를 하려는 자	시·도지사(안 전공사에 위탁)	공사를 시작하기 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 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공 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 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 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 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2항)	신고
7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전기안전관리 자의 선임신고사 항 변경신고 등(법 제73조의 2, 시행	전기안전관리자 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	지식경제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전력기술 인단체)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및 변경신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선임 (해임)신고서, 별지 제42호 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2항)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45조, 제45 조의 2)						
8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법 제73조의5,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 73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업무 대행 신고 및 변경신고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2항)	신고
9	사실조사 등(법 제 22조)	전기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1항)	제출 명령
10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법 제25조)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지식경제부장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제출 요구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법 제 73조의 8)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제1항)	자료의 제출 명령

(5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와 검사 등/보고사항(법 제20조, 시행령 제10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 명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1항)	보고 명령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p>공사업자, 안전인 증대상 전기용품 을 부분품이나 부 속품으로 사용하 여 전기용품을 제 조하는 자, 안전인 증대상 전기용품 을 수입하거나 판 매 또는 대여하는 자,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 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하는 자,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 품의 수입·판매 ·대여업자, 공급</p>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적 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공급자적 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2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자율안전확인 신고/ 자율안전확인 신고 등의 변경신고(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19조, 제22조)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안전인증기관에 위탁)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후 이를 신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기 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자 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한 기간을 정 하여 그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 명 령(법 제19조 제2항), 3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25조)	
3	사실의 공표 및 안 전인증대상전기용 품등의 교환·환 불·수리 등의 명 령/이행계획서 등 (시행령 제9조, 시	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등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받은 자	시·도지사		이행계획서의 제출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27조)						

(52) 전력기술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검사 등(법 제23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 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한 보고 명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1항)	보고 명령
2	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원 배치현황신 고(법 제12조의 2, 시 행규칙 제21조의 2)	감리업자등	시·도지사 (전력기술인단 체에 위탁)	15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 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2항)	신고
3	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설계업·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시·도지사	양도·양수계약 일 또는	설계업·감리업의 양도, 양수, 합병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29조의2)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	
4	휴업 등의 신고/영업의 휴업등의 신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0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시·도지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1항)	신고
5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경력확인 등(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		신고
6	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시행령 제27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시·도지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변경 신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27조)						
7	감리원의 배치 등/ 공사감리완료보고 서의 제출 등(법 제 12조의2,시행규칙 제21조의 3)	감리업자등	시·도지사(전 력기술인단체 에 위탁)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15일 이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 사감리완료보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2항)	제출
8	전력기술인의 관 리 등/현황제출 등 (시행령 제7조, 시 행규칙 제8조)	설계업자, 공사업 자, 전기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 사·전기안전관 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 기설비의 설치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 관련 부문 엔 지니어링활동주체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 직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 술인현황신고서		자료 제출 요구
9	신기술활용실적의 제	새로운	지식경제부장관	다음 연도 2월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시행규칙 제6조)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28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실적서		
10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시행규칙 제6조의2)	시험시공을 한 발주자와 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의 장	지식경제부장관		시험시공결과의 제출		제출

(53) 전시산업발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전시산업의 지원 등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원금 사용실적의 보고		보고
2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전시산업정보의 제출 요청(법 제13조, 시행규칙 제6조)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 관련 정보의 제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산업 정보제출요구서		제출 요청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54) 전원개발촉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경미한 사항의 변경/실시 계획 중 경미한 사 항의 변경신고(법 제 5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전원개발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에 변경이유서를 첨부		신고
2	다른 법률과의 관 계/인·허가등의 신고(법 제6조, 시 행규칙 제8조)	전원개발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미리	인허가의 신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신고
3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신청/실	전원개발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실시계획의 제출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계획의 제출 등(시 행령 제12조, 시행규 칙 제3조)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			
4	공공시설 등의 귀 속 등(법 제14조, 시행령 제25조)	전원개발사업자	관리청	공사완료시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 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 록을 통지		신고

(55) 전자거래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검사 등/자료 의 제출·보고 등(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자료의 제출 또는 보 고 명령	1천만원 이하의	자료제출 또는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1조의11, 시행)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보고 명령
2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법 제31조의8, 시 행규칙 제13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경제부장관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의 신고 및 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 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변경신고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법 제31조의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신고
3	전자문서보관등업 무준칙의 신고 등/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법 제31 조의 8, 시행규칙 제13조의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경제부장관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 자문서보관소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신고
4	공인전자문서보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경제부장관	1개월 이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	1천만원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법 제31조의 4, 시행규칙 제15조)	의 지위를 승계한자			위승계 신고 별지 제9호서식의 승계신고서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영업 폐지의 통지 등(법 제31조의15, 시행규칙 제16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경제부장관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폐지 신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폐지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신고
6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영업 폐지의 통지 등(법 제31조의15, 시행규칙 제16조)	영업폐지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경제부장관	지체 없이	업무인계 불가신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인계불가 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2항)	신고
7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법 제28조)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자료제출 요구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			제출 요구		자료의 제출 등 을 요구 받은 국 가 기관 등, 전자 거래 사 업자 또 는 전자 거래관련 법인·단 체는 이 에 협조 하여야 한다.

(5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이용요금의 신고(법 제8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법 제10조)	신고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등(법 제38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식경제부장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제1항)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청 관련 서류 또는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법 제35조, 시행규칙 제14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식경제부장관	미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신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신고
3	휴업·폐업·재개/	지식정보보안	지식경제부장관	휴업·폐업 또는	휴업·폐업·재개의 신고	1천만원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휴업·폐업·재개의 신고(법 제36조, 시행규칙 제15조)	컨설팅전문업체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제1항)	

(5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조사/보고 명령 및 자료제출 명령(법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	관리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수수료의 사용내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0조제1항)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표시제거 등의 명령 (법 제1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	인증기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표시제거 시정결과의 보고	인증취소 (법 제13조)	보고
2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에 대한 감독· 검사 등(법 제25조)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 지능형 로봇투 자회사의 자산운용 회사·자산보관회 사 및 일반 사무관 리 회사, 지능형 로 봇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지 능형 로봇기업,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	지식경제부장 관, 금융위원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이나 보고 요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9조제1항)	자료제출 또는 보고 요구
3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4조)	인증기관, 자본재공제조합, 사업자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인증기관의 경우 기술표준 원장에게 위임)		업무에 관한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9조제1항)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산업통계 및 실태 조사(법 제7조)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단체	지식경제부장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을 요구 받은 지 능형 로 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 능형 로 봇 관련 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없는 한 이에 협 조 하 여 야 한다.
5	영업보고서의 제출 (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제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7조제2항)	제출
6	준공확인(법 제37조)	사업시행자	지식경제부장관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의 제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7조제2항)	제출
7	지원금의 지급 등 (시행령 제15조)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의 제출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투자위험보증사업 의 업무방법서 등 (시행령 제22조)	투자위험보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 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 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 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 법서, 투자위험보증계정 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 한 연간 계획, 투자위험보 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의 제출		제출
9	품질보증사업의 실시(법 제14조)	품질보증사업을 하는 자(품질보증사업자)	인증기관		사업운영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		자료 제공 요구 인증 기관은 정당 한 사 유가 없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60) 집단에너지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의 승계 등/사업 의 승계신고(법 제12 조,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식경제부장관	30일이내	사업승계 신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	신고
2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지식경제부장관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재개 신고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재개신고(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3	공급규정/공급규정의 신고등(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신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	신고
4	공사계획의 승인 등/경미한 공사등의 신고(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6조)	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 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신고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	신고
5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의 신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40조)	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사업개시전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9조)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지식경제부장관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변경일부더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0분의 20 미만 인 경우에만 해당 된다),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하 려는 자					
7	검사등(법 제23조)	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자체검사 기록의 제출		제출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시행령 제16조)	카지노사업자	지식경제부장 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 무제표 제출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시행령 제16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		제출

(6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법 제7조)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의 보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제1항)	보고
2	보고 및 검사 등/자료의 제출 및 보고/제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기술표준원장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제1항)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절차(법 제32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30조)	판매업자	계 위임)		별표 3		
3	개선·수거·파기 명령 등/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이행계획서의 내용 등(법 제31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제조업자·외국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	시·도지사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출 및 보고
4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신고 등(법 제19조, 시행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지식경제부장관(안전인증기관에 위탁)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칙 제19조)	수입업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신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법 제31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미변경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제2항)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 변경신고 등(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안전인증기관에 위탁)	출고 또는 통관 전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신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보호포장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변경신고서	기 명령(법 제 31조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1조제1항)	

(6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법 제13조의 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해외자원개발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요구		자료제출 또는 보고 요구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투자전문회사					
2	보고 및 검사(법 제 19조, 시행령 제16 조, 시행규칙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주무부장관	사업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5조제1항)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3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의 신고/신고의 구분/신고서 등 (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에, 광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4조)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 석유에 관련 된 업무 : 한국 석유공사 사장, 석유외의 광물 에 관련된 업무 : 한국광물자원 공사 사장 및 『 대한석탄공사 법』에 의한 대 한석탄공사 사 장 /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 는 자: 한국농 어촌공사 사장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산림청장의 업무[석재(화 강암·사암· 섬록암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위 탁받는 자: 녹 색사업단 이사 장 등에 위탁)				
4	공동신고(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동일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주무부장관		공동신고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영업보고서의 제출 (법 제13조의 5, 시행령 제12조의 2)	해외자원개발투자 회사등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 서 제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4조의2 제2항)	제출
6	투자위험보증사업 의 업무방법서 등 (시행령 제12조의 8)	투자위험보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 결산 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 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업무방법서 및 투자위 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 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제출		제출

(6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	----------	---------	-----------	--------------	------------------	----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채취권의 설정/해저광물의 발견 보고/채취권의 설정출원(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의 3, 시행규칙 제5조)	탐사권자	지식경제부장관	7일 이내	해광물 발견보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		보고
2	보고 및 조사(법 제26조, 시행령 제13조의 2)	해저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의 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	보고
3	변경신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8조)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 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	신고
4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법 제19조, 시행	해저조광권자	지식경제부장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12조의 2)				해저조광권 포기서의 제출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 조광권포기서		

(6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권한의 위임·위탁/ 업무의 위(법 제23조, 시행령 제14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법인이나 단체	지식경제부장 관 및 주무관청 단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명령		보고 명령
2	1종화학물질의 제 조허가/제조허가 신청 등(법 제5조,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 학물질 제조변경허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2조)				청서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3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조신고 등(법 제 5조의 2, 시행령 제 6조의 2, 시행규칙 제2조의 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함	지식경제부장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생 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생 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 고서	제조폐쇄명령 (법 제8조의2 제1항), 미신 고시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27조), 미변경 신고시 2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28조)	신고
4	지위 승계/허가제 조자 또는 신고제 조자의 지위승계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식경제부장관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 조자 지위승계 신고	제 조 허 가 를 취 소 하 거 나 3 월 이내의 기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허가제조자 지위승계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신고제조자 지위승계신고서	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1항)	
5	제조의 폐지신고 (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	지식경제부장관	미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 신고 별지 제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신고서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8조제1항), 3월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령(법제8조의2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30조제1항)	
6	폐기/양도신고(법제10조, 시행규칙제5조의 2)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		양도신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양도 신고 1종화학 물질의 경우는 승인신청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폐기/폐기의 신고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폐기의무자	지식경제부장관		폐기신고 별지 제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8조 제1항),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령(법 제8조의2제1항), 2년 이하의 징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28조)	
8	수출,수입규제/1종 화학물질 또는 생 물작용제등의 인 도·인수신고/수 출입물품 인도· 인수신고(법 제11 조, 제12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수출허가를 받은 자 수입하고자 하는 자	허가기관의 장	인도, 인수 40일 전까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 용제 인도, 인수신고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 학물질 인도(인수)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 (인수)신고서	제 조 허 가 를 취 소 하 거 나 3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제 조 행 위 의 전 부 또는 일 부 의 정 지 를 명 령 (법 제 8 조 제 1 항), 3 월 이 내 의 기 간 을 정 하여 제 조 행 위 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 지 를 명 하 거 나 제 조 시	신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설의 폐쇄를 명령(법 제8조의2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9	특정화학물질/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특정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 단일 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특정 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지식경제부장관(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해마다	계획 및 실적을 신고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대상·신고사항 및 신고기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8조제1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의 2, 시 행령 제9조의 2, 시 행규칙 제9조의 2)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	지식경제부장 관(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매년 2월에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 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28조), 3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 조시설의 폐 쇄명령(법 제8 조의2제1항)	신고
11	시설협정의 체결 (법 제14조)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	외교통상부장관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 도면 등의 제출 명령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30조)	제출 명령
12	주무관청의 권한	사찰대상자	사찰단장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등(법 제17조)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 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 명자료를 제출		
13	장부의 비치등/자료 제출(법 제21조, 시 행령 제12조의 2)	비치의무자	지식경제부장관	10일 이내	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 무기금지협약 자료의 제 출 명령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30조), 제조 허가를 취소 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제 조행위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 령(법 제8조 제1항), 3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제 조행위의 전 부 또는 일부	자료 제출 명령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명령(법 제8조의2제1항)	

(6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국내인정기관	지식경제부장관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의 보고		보고
2	출연금의 지급 및 관	지원 또는 출연을	지식경제부장관	해당 사업연도 종료	출연금 사용실적의 보고		보고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리(시행령 제11조)	받은 기관		후 3개월 이내			
3	보조금(시행령 제 14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	지식경제부장관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보고
4	품질인증 등(법 제 10조)	대행기관 또는 단체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에 위임)		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의 제출 요청
5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인증기관의 자료 제출/인증기관 관리대행자(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인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제1항)	자료 제출
6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법 제16조의 2)	인증기관과 기업	지식경제부장관		환경경영체제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 제출 요청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7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수요조사(시행령 제4조)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지식경제부장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 제출 요청
8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시행령 제22조)	대규모 에너지사용자	지식경제부장관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자료 제출 명령

(6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자료의 제공요청 등(법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 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지식경제부장관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청 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 기관 및 환경 친 화 적 자 동 차 와 관 련 된 기 관 이 나 단 체 는 특별 한 사 정 이 없 는 한 이에 응 하 여 야 한다.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금융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공사채등록법	·	·	·	1	1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2	공인회계사법	·	1	5	·	6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4	3	·	·	7	금융위원회	제9742호	2009.7.28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	1	·	·	2	금융위원회	제10061호	2010.3.12	
5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	·	·	금융위원회	제10042호	2010.2.4	해당없음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2	1	1	·	4	금융위원회	제9703호	2009.6.1	

5. 금융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6	2	·	10	금융위원회	제10066호	2010.3.12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7	·	·	8	금융위원회	제9324호	2008.12.31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	·	·	1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1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1	1	·	·	2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3.22	
11	금융지주회사법	17	3	4	·	24	금융위원회	제9788호	2009.12.1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5	1	·	6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	·	·	1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	3	3	·	8	금융위원회	제9584호	2009.5.8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1	·	·	1	금융위원회	제10064호	2010.3.12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법률	1	·	·	·	1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17	담보부사채신탁법	1	·	4	·	5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1	4	·	8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19	보험업법	6	8	11	·	25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20	상호저축은행법	3	2	1	·	6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21	신용보증기금법		1			1	금융위원회	제9685호	2009.5.21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3	3		8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4.1	
23	신용협동조합법	2	1	·	·	3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5. 금융 분야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4	여신전문금융업법	5	4	2	·	11	금융위원회	제9932호	2010.1.18	
25	예금자보호법	1	1			2	금융위원회	제9406호	2009.2.3	
2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금융위원회	제10045호	2010.2.4	해당없음
27	은행법	10	7	1		18	금융위원회	제9784호	2009.6.9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34	10	·	76	금융위원회	제10063호	2010.3.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	·	2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4.1	
30	전자금융거래법	2	5	·	·	7	금융위원회	제9325호	2008.12.31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4	·	·	9	금융위원회	제9408호	2009.2.3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	4	·	·	4	금융위원회	제10044호	2010.2.4	
								제10065호	2010.3.12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3	중소기업은행법	·	·	·	·	·	금융위원회			해당없음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	·	·	2	금융위원회	제10043호	2010.2.4	
35	한국산업은행법	·	·	·	·	·	금융위원회	제9401호	2009.1.30	해당없음
3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	·	·	·	금융위원회	제9741호	2009.5.27	해당없음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	·	·	금융위원회	제9969호	2010.1.25	해당없음
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	·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해당없음
3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1	·	·	1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4.1	
	계	106	111	52	1	270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공사채등록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법 제14조 제2항)	등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등록 취소(법률 제15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9조 제2항)	내부 보고

(2) 공인회계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등록(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		자격 등록	500만원 이하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5조)					벌금(법률 제53조제5항)	
2	등록(법 제7조 제4 항, 시행령 제11조)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	5년마다,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등록 갱신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3조제5항)	신고
3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시행령 제13조)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 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 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		신고
4	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회계법인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의 등록	등록 취소(법률 제39조)	신고
5	회계처리등(법 제 30조 제2항)	회계법인	금융위원회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 출/공인 회계사 회에 위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탁한다 (시행령 제38조).
6	정관변경의 신고 (법 제38조,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	회계법인	금융위원회		정관 변경 신고		신고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적자금관리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조 제3항)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 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					
2	자료요구 등(법 제 11조, 시행령제5조 의2)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 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보고/ 자료 제출
3	최소비용의 원칙 (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금융위원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		최소비용의 원칙의 준수 를 입증하는 자료 및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 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	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15조 제1항)	금융위원회	국회	공적자금의 사용 · 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 - 분기별 1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 공적자금을 사용·회수후 재사용하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회 이상, 공적자금을 사용·회수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 - 매년 3월 말까지	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5	감사원의 감사 등 (법 제16조)	감사원	국회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자료 제출
6	금융기관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법 제17조 제4항)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정부 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장에 게 시정하게 하거나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당해 임 원에 대 한 해임 · 직무정 지·경고 · 주의 또는 직 원에 대 한 징계 · 주의를 요 구 할 수 있다.
7	금융기관과의 이 행약정 체결 등(법 제17조 제5항)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 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자 료제출/ 정 부 등 은 공적 자 금 이 지 원 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금융 기 관의 장 에게 시 정 하 게 하 거 나 당해 임 원에 대 한 해임 · 직 무 정 지 · 경 고 · 주 의 또 는 직원 에 대한 징 계 · 주 의 를 요 구 할 수 있다.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계산제도(법 제7조 제4항)	금융위원회	국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의 보고		보고
2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금융위원회	국회		공적 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제출		자료 제출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법 제30조 제3항)	공사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		
2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발행등(법 제40조 제5항)	공사	금융위원회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 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 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3	기금의 운용계획등 (법 제42조 제2항)	공사	위원회, 금융위원회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 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자 료제출
4	보고·검사등(법 제48조 제1항)	공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사에 대 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 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	----------------	----------	---------	-----------	--------------	------------------	-----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인가사항 실행의 보 고 및 인가의 실효 (법 제7조 제1항)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은 합병 또는 전 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금융기관-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제1항제1호) 금 용 기 관 의 임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제28조제2 항제1호)	보고
2	적기시정조치(법 제10조 제1항)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 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 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 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제1항제6호)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17조의4)	공공기관등	금융위원회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4	예금자표의 제출 (법 제21조 제1항)	파산참가기관	법원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		자료 제출
5	예금자의 참가(법 제22조)	예금자	법원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6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법 제23)	정책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의5 제2항)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법 제23조의6 제5항)	정책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8	금융기능제고계획(법 제23조의7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2)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	정책금융공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금융기능제고계획 제출		자료 제출
9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법 제23조의9 제3항)	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법 제24조 제6항)	동일계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동일계열 금융기관 승인 심사 자료 제출		자료 제출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의4)	금융위원회	국회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 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 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2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 항 제1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금융기관의 임· 직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 업원으로서 금융거 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 무에 사실상 종사 하는 자)	법원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 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자료 제출
3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 항 제2호)	금융기관에 종사하 는 자(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 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 한 정보 또는 자료 를 취급·처리하는	세무 소관 관서의 장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 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 서의 장이 상속·증여재 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 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3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자료 제출
5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 한 정보 또는 자료 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 사하는 자)	예금보험공사 사장		·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 항 제5호)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자료 제출
7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 항 제6호)	금융기관에 종사하 는 자(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 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 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 감독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					
8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7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자료 제출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자료의 제출요구등 (법 제40조 제1항)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 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 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법률 제41조)	보고자료 제출

(9)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금융위원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	금융중심지 지원 센 터(법 제13조 제3항)	금융지원센터의 장	금융중심지추 진위원회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장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금융지주회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인가받을 의무 등(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	인가대상금융 지주회사	금융위원회	기준일부터 4개월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제1항제1호)	보고
2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금융지주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신고/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3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6조의2)	동일인	금융위원회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제1항 제1호)	보고
4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법 제8조의4제3항, 시행령 제8조제8항)	비금융주력자	금융위원회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72조제1항)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실을 안 날을 말한 다. 이하 제9 항에서 같 다)부터 5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 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5	사모투자전문회 사등의 보고사 항(법 제8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	금융위원회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 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72조제1항)	
6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	금융위원회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70조제5항)	신고
7	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16조)	비은행지주회사	금융위원회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8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법 제24조 제2항)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	금융위원회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70조제5항)	
9	자회사등의 편 입승인 등(법 제 30조 제2항)	금융투자지주회 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 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70조제5항)	신고
10	대주주와의 거 래 등의 제한 등 (법 제34조 제6 항, 시행령 제16 조의5 제5항)	비은행지주회사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 용공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 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 는 행위,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 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 사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제1항)	보고
11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법 제34조 제7항, 시행령 제16조의5 제7항)	비은행지주회사	금융위원회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비은행지주회사들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제1항)	보고
12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법 제34조 제8항, 시행령 제16조의5 제8항)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제1항)	보고
13	비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의 특 례(법 제37조 제 1항)	비은행지주회사 등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4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법 제39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8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임직원	금융위원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 제2항)	보고
15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법 제41조의5 제7항)	금융지주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16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은행지주회사등	금융위원회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	5천만원 이하의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법 제45 조의2 제5항)				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 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과태료(법률 제72조 제1항)	
17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법 제45조의3 제4 항, 시행령 제24 조의3)	은행지주회사	금융위원회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 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
18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법 제45 조의5,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 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 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 출
19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법 제 4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26조)	금융지주회사	금융위원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 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보고
20	고객정보의 제 공 및 관리(법 제 48조의2 제5항)	고객정보관리인	금융위원회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 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 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2조 제1항)	보고
21	검사(법 제51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 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 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자 료제출
2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법 제	주요출자자등	금융감독원장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		보고/ 자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1조의2)				여 이를 준용한다.		제출
23	업무보고서(법 제54조, 시행령 제30조)	금융지주회사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일부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 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 과 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률 제72조 제2항)	자료 제 출/전자 문서에 의한 제 출(법률 제55조 의2)
24	보고사항(법 제 61조, 시행령 제 33조)	금융지주회사	금융위원회		임원이 변경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 또 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상호를 변경한 경우,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 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 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타 금융 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업무계획(법 제32 조 제2항)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법 제42조 제2항)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기금이 예산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결산(법 제43조)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경과후 2월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보고·검사(법 제 47조 제1항)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자료 제출
5	업무의 위탁(시행령 제30조)	기금	금융위원회		기금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6	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50조 제1항))	공공단체	기금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회생계획의 사전 제출(법 제15조 제1항)	주채권은행	법원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법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법률 제54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고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62조)	
2	변경등록(법 제10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금융감독위원회	2주 이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료(법률 제66조제1항)	
3	결산서류의 승인등 (법 제26조 제2항)	이사	금융감독위원회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66조제1항)	자료 제출
4	해산보고(법 제29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	금융감독위원회	해산일부터 30일이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재산목록등의 승인등(법 제34조 제2항)	청산인	금융감독위원회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	청산의 종결(법 제37조 제2항)	청산인	금융감독위원회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7	자산관리회사의 등록(법 제42조 제1항)	자산관리회사	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한 경우 등록 을 취소하거 나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 하여 영업정 지(제55조)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산 관 리 회 사 의 업무를 영 위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 42조제1항 또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등록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률 제62조)	
8	감독 및 검사등(법 제53조 제1항)	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자산관 리회사·자산보 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 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 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 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 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 구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의 규정에 의 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보 고요구에 불 응한 자 -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66조제1항)	보고/ 자료 제출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	감독(법 제14조 제 2항)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 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 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 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 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 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 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등(법 제17조)	저축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16) 담보부사채신탁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신탁업의 등록등 (법 제5조 제1항)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다(법률 제 103조).	
2	업무의 검사(법 제 8조 제1항)	신탁업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보고
3	사채의 국외모집 (법 제11조 제4항, 시행규칙 제3조)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	금융위원회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4	승계의 요식행위 (법 제89조 제2항,	위탁회사와 신구신탁업자	금융위원회		신탁업무의 승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9조)				탁회사와 신규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문서로써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인계절차(법 제93조 제2항)	위탁회사, 신구신탁업자	금융위원회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규신탁업자는 공동하여 문서로써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등록 등(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시·도지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이하 “대부업등”이라 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의3)	하려는 자			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등록취소(법률 제13조 제2항)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19조)	
2	등록갱신(법 제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조의4)	대부업자등	시도지사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등록취소 (법률 제13조 제2항)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19조)	
3	변경등록 등(법 제 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대부업자등	시도지사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조 제1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21조 제1항)	
4	변경등록 등(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대부업자등	시도지사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조제1항 또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증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21조 제1항)	
5	검사 등(법 제12조 제1항)	대부업자등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	보고/자료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21조 제2항)	
6	검사 등(법 제12조 제5항)	대부업자등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원 이	보고/자료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의 과태료 (법률 제21조 제2항)	
7	검사 등(법 제12조 제7항, 시행령 제7 조의3)	대부업자등	시도지사	대부업자등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보고서를 6 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 일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 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부 업자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항 을 위반하여 보 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하거나, 기 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 니하고 제출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21조 제1항)	자료제 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업무의 위탁(법 제 18조의7)	협회	시도지사	매분기별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18) 보험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법 제74조 제2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금융위원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보험설계사의 등록 (법 제84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등록의 취소 (법률 제86조 제1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률 제204조 제1항)	
3	보험대리점의 등록 (법 제87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등록취소(법률 제88조제1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조제1항)	
4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등록취소(법률 제90조제1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조제1항)	
5	신고사항(법 제93조, 시행령 제101조제1항)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금융위원회		등록신청서류 변경,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발생, 모집업무의 폐지, 본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단체의 소멸 등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3항)	신고/신고사항 수리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한 사항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 93조제1항 제 1호·제3호 및 제 7호에서 정한 사항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법 제111조 제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항, 시행령 제57 조 제1항)				<p>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법 제111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항, 시행령 제 57조 제2항)				공여 또는 당해 보험회사 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공시하 지 아니한 때 -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1항)	
8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법 제112조)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 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12조의 규 정에 의한 자 료제출을 거부 한 자 - 5백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률 제 209조제3항)	자료제 출
9	자회사의 소유(법 제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5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제1항)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10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법 제 117조 제1항,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1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법 제 117조 제2항, 시행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령 제60조 제2항)				조표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무제표 등의 제출(법 제118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1항)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	자료 제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법률 제118조 제3항).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이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때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2항)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재무제표 등의 제출 (법 제118조 제2항)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8조의 규 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 이내에 제 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 표 등을 제출한 때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법 률 제209조제1 항) 보험회사의 발 기인·설립위 원·이사·감 사·검사인· 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	자료 제 출/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자 문서의 방법으 로 제출 할 수 있 다(법률 제118조 제3항).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항의 직무대행 자 또는 지배인 이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 여 재무제표 등 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 로 작성된 재무 제표 등을 제 출한 때 -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2항)	
14	정관변경의 신고(법 제126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기초서류변경의 신고(법 제127조, 시행령 제71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1항)	신고
16	보고사항(법 제130조, 시행령 제72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	제1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 5백만원 이하의 과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3.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때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4의2.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그 밖에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태료(법률 제 209조제2항)	
17	자료제출 및 검사 등 (법 제133조 제1항)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	보고/ 자료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p>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 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 할 수 있다.</p>	<p>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 한 때 - 1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률 제 209조제1항) 보 험 회 사 의 발기인·설립 위 원 · 이 사 · 감 사 · 검 사 인 · 청 산 인, 『상법』 제 386조 제 2 항 및 제407조제 1항의 직무대 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p>	<p>제출</p>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지배인이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2항)	
18	자료제출 및 검사 등 (법 제133조 제3항)	보험회사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1항) 보험회사의	보고/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발기인·설립 위원·이사· 감사·검사인 ·청산인, 『상 법』 제386조제 2항 및 제407 조제1항의 직 무대행자(제 59조 및 제73 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포 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제 133조의 규정 에 의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5백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09조제2항)	
19	자료제출 및 검사 등 (법 제134조 제6항)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0	정리계획서의 제출 (법 제155조)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1	조사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62조 제2항)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22	보험계리사(법 제 182조 제1항)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
23	보험계리업(법 제 183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의 규정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2조)	
24	손해사정사(법 제186)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1항)	되고자 하는 자			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5	손해사정업(법 제187조 제1항, 시행령 제 97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률 제202조)	

(19) 상호저축은행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신고사항 등(법 제 1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10조의2제 1항 또는 같 은 조 제7항 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4. 기타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하의 과태료 (법률 제40조 제1항)	
2	신고사항 등(법 제 10조의2 제7항, 시행령 제7조)	상호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 1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보고/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시행령)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개정 2001.3.28, 2007.7.19, 2008.2.29> 1. 대통령이 정하는 주 주가 변경된 경우 1의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1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1 이 상 변동된 경우 2.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 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 하는 경우 3.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 를 정지하거나 재개하 는 경우 4.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 한 경우	과태료(법률 제40조제1항)	제26조)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법 제1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상호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0조제1항)	보고
4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상호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	제12조의2제2항·제3항을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등(법 제12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 조의4 제2항)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 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위반하여 금 융 위 원 회 에 보고를 하지 아니 하 거 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 축은행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40조제1항)	
5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구 등(법 제22조의 4 제1항)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 행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 12조의2·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4 제 1항에 따른 금 융 위 원 회 의 자료제출 요구 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 출한자-500만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 40조제1항)	
6	검사(법 제23조 제 2항)	상호저축은행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40조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20) 신용보증기금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검사(법 제 43조)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		자료 제출/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 있다.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신고 및 보고 사항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신용정보회사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회사가 제4조제 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	제8조를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 52조제3항)	신고/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법 제10조 제4항, 시행규칙 제4조)	신용정보회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률 제52조제2항)	신고
3	신용정보협의회(법 제26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협의회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협의회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 무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종사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법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37조)	채권추심회사	금융위원회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취소(법률 제27조제6항)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벌금(법률 제 50조제2항)	
5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 조 제5항)	신용평가회사	금융위원회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실적서등 해당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 5항을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2조제3항)	서류 제출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 한 동의(법 제32조	신용정보회사등	법원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항 제5호, 시행령 제28조 제9항)						
7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법 제32조 제4항 제6호)	신용정보회사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출
8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법 제32조 제4항 제7호, 시행령 제28조 제9항)	신용정보회사등	조세 관할 관서의 장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9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법 제32조 제4항 제8호, 시행령 제28조 제9항)	신용정보회사등	외국의 금융감독기구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출
10	개인 식별정보의 제공·이용(법 제34조 제4항)	신용정보회사등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 조세 관할 관서의 장, 외국의 금융감독기구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자료 제출
11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법 제38조 제7항)	신용정보회사등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38조 제7항을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47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22) 신용협동조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법 제81조 제4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위원회		중앙회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3항의 규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위	자료 제출/금융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한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99조 제2항)	감독원장에 게 위탁(시행령 제24조 제1항)
2	금융위원회의 감독등(법 제83조 제3항)	조합과 중앙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자료제출/중앙회에 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
3	업무보고서의 제	중앙회	금융감독원장		조합은 매월의 업무내용	제83조의4의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법 제83조의4 제3항)				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101조제1항)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	----------	---------	-----------	--------------	------------------	----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탁(법 제25조 제3항)	공탁명령을 받은 자 (신용카드업자)	금융위원회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2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법 제50조 제3항)	여신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72조 제1항)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법 제50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 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 제50조제3항 · 제4항을 위 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72 조제1항)	보고
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법 제50 조 제7항)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 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 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 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 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 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독(법 제53조 제 2항)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 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 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 를 하게 할 수 있다.		보고/금 융감독원 장에 게 위탁(시 행령 제 23조의2)
6	검사(법 제53조의2 제3항)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 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 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	검사(법 제53조의2)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		자료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항)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출
8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법 제54조 제 1항)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법률 제 72조제1항)	
9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법 제54조 제 2항, 시행령 제19조의15)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보고/금융감독원장에 위탁(시행령 제23조의2)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률 제72조 제1항)	
10	약관의 개정 등(법 제54조의3 제1항 본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법률 제72조제1항)	신고/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제23조의2)
11	약관의 개정 등(법 제54조의3 제1항 단서)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4조의3을	보고/금융감독원장에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제7항의 변경 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법률 제72조제1항)	계 위탁 (시행령 제23조의2)

(24) 예금자보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 구등(법 제21조 제 1항)	부보금융기관	공사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 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 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 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5 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 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특 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보험금등의 계산 및 지급,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법률 제41조)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법 제38조의5 제5항)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기관	공사		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3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법 제21조의4 제1항)	해당 금융기관의 장	사장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41조)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 보등”이라 한다)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 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 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 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 이 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은행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금융기관 해당여부의 결정(법 제7조 제2항)	법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 제출
2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이 정관의 변경(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69조제2항)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법 제10조 제2항)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4조의2)	동일인	금융위원회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금융기관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법 제15조 의2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비금융주력자	금융위원회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 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 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 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6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법 제	사모투자전문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 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 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제69조제1항)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조의3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7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법 제15조의4)	사모투자전문회사	금융위원회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69조제1항)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법 제16조의3 제1항)	비금융주력자	금융위원회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자료 제출
9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법 제35조의2 제5항, 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69조제1항)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법 제35조의3 제4항, 시행령 제 20조의6 제4항)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 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 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한다.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제69조제1항)	보고
11	대주주에 대한 자 료제출요구 등(법 제35조의5 제1항)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 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 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 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2	대주주에 대한 자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자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료제출요구 등(법 제35조의5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8)	대주주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채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 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출
13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법 제 37조 제4항)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야 한다.		
14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법 제42조)				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법 제47조 제 1항, 제3항)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장		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률 제69조제2항)	자료 제출
16	검사(법 제48조 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7	검사(법 제48조 제3항)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8	약관의 변경 등(법 제52조 제1항)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9	인가취소 등(법 제 60조 제2항)	외국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법 제23조 제4항)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금융위원회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 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 조제2항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재무건전성 유지(법 제30조 제3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1개월 이내(시행령 제3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
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45일(시행령 제3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	제33조제1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한다)을 위반 하여 업무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자 -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13호	
4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법 제33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 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 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	제33조 제3 항 (제350조, 제 357조 제2항 또 는 제361조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보 고 또는 공시를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15호	
5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법 제33조 제4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5천만원	자료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 조제15의2호	
6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법 제34조 제4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17호	보고
7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법 제34조 제5항, 시행령 제39조 제2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	제34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17호	
8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법 제34조 제6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18호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법 제36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 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 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에 따른 자료 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18호	자료 제출
10	금융투자업자의 다 른 금융업무 영위 (법 제40조,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이 법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 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무의 대리,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449조 제19호	
1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법 제 41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19호	
1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46조)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13	약관(법 제56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신고/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1항제24호, 제25호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천만</p>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과 태료 - 법률 제 449조제2항	
14	약관(법 제56조 제 4항)	협회	금융위원회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 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 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신고/ 보고
15	집합투자재산에 관 한 보고 등(법 제90 조 제1항, 시행령 제94조)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및 협회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 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	제90조제1항 (제186조제2 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34호	
16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법 제90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및 협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	제90조 제1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34호	
17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법 제93조 제2항, 시행령 제96조)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항)				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법 제100조 제5항)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금융위원회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9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법 제101조 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금융위원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항, 시행령 제102조)	하는 자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 449조제2항	
20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법 제101조 제 2항)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수익증권(법 제110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신탁업자	금융위원회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22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법 제114조 제2항, 시행령 제116조)	민간법인 또는 단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법 제119조, 시 행령 제120조 내지 제128조)	증권 발행인	금융위원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증권신고서상 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 에는 2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 법률 제 429조제1항 5년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4조 제12호 5년이하의 징	신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119조제5 항 또는 제159 조 제 7 항 (제 160조 후단 또 는 제16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에 따른 서명 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 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 문으로 하는 자) - 법률 제444 조제제13호	
24	정정신고서(법 제 122조, 시행령 제 130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	증권신고서상 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 에는 2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 법률 제 429조제1항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5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법 제123조 제1항, 시행령 제131조)	증권발행인	금융위원회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 공개매수설명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제21호	
26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법 제123조 제3항, 시행령 제131조)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	금융위원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다. - 법률 제 429조제1항	
27	증권발행실적보고서(법 제128조)	증권의 발행인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8조 또는 제 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 449조제2항	자료 제출
28	보고 및 조사(법 제 131조 제1항)	증권신고인 발행인 매출인 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제131조제1항, 제 146조 제 1항, 제151조제 1항, 제158조 제1항, 제164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p>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p>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2항	
29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법 제134조 제2항,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자료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429조 제1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4조 제15호	
30	정정신고·공고 등 (법 제136조제1항,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공개매수 신고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날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429조제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4조 제15호	
31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공시(법 제137조 제1항, 시행령 제148조)	공개매수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 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자료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 429조제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4조 제15호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 제21호	
32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법 제138조 제2항, 시행령 제149조)	주식 발행인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3	공개매수의 철회 등(법 제139조 제2항)	공개매수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4	공개매수결과보고서(법 제143조)	공개매수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	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2항	
35	조사 및 조치(법 제 146조 제1항)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 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제 131조 제 1항, 제146조제 1항, 제151조 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제	보고/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52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261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제281조 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요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구에 불응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 조제2항	
36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법 제147 조 제1항,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 153조 내지 제155조, 시행규칙 제17조)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 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 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 지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 금 - 법률 제 444조제18호 보고를 하지 아니한자-3년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p>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p>	<p>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5조 제20호</p>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야 한다.		
37	조사 및 정정요구 등 (법 제151조 제1항)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5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또는 제419조 제5항 (제43조 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제252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261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제281조 제2항, 제292조, 제306조,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2항	
38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법 제153조, 시	의결권권유자	금융위원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령 제164조, 시행규칙 제18조)				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 446조제21호	
39	(법 제155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정정요구 등(법 제 156조, 시행령 제 165조)	의결권권유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 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 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 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정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4조 제19호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 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 법률 제446조제27호	자료 제출
41	조사 및 조치(법 제 158조 제1항)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31조 제 1 항, 제146조제	보고/ 자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1항, 제151조 제1항, 제15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또는 제419조 제5항(제43조 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제252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261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제281조 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p>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2항	
42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법 제159조, 시행령 제167조 내지 169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429조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제3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을 기재한 공 인회계사·감 정인 또는 신 용평가를 전문 으로 하는 자) - 법률 제444 조제제13호 제159조, 제 160조 또는 제 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업보고서·반 기보고서·분 기 보고서 나 주요사항보고 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 446조제28호	
43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법 제160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p>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 429조제3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 119조제 5항 또는 제 159조 제 7항 (제 160조 후단 또는 제 161조제 1항 각 호 외의</p>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에 따른 서명 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 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 용평가를 전문 으로 하는 자) - 법률 제444 조제제13호 제159조, 제160 조 또는 제161 조제1항을 위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 446조제28호	
44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법 제161조, 시행령 제171조, 제172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다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p>	<p>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률 제429조 제3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p>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p>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이하의 벌금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p>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평가를 전문 으로 하는 자) - 법률 제444 조제제13호 제159조, 제160 조 또는 제161 조제1항을 위 반하여 사업보 고서·반기보 고서·분기보 고서나 주요사 항보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 446조제28호	
45	조사 및 조치(법 제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제 131조 제 1	자료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64조 제1항)		제출대상법인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요구에 불응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2항	
4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법 제165조의17, 시행령 제176조의18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신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7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법 제173조 제1항, 시행령 제200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 제31호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48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법 제173조의2 제 1항, 시행령 제200 조의2)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제2항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49	투자신탁의 해지(법제192조 제1항, 제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항, 시행령 제223 조, 제224조)				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 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0	투자신탁의 합병(법 제193조 제5항)	투자신탁을 실정한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거래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 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 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1	청산(법 제203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21조)	청산인	금융위원회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 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 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 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자료 제출
52	청산(법 제203조 제 2항)	청산감독인	금융위원회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 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 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3	청산(법 제203조 제 5항)	청산인	금융위원회 및 협회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4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법 제221조 제 1항, 시행령 제238조)	청산인	금융위원회		투자조합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총회의 결의, 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5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법 제 240조 제2항, 시행령 제263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정을 위탁받은 민간법인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56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법 제 240조 제4항, 시행령 제265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금융위원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7	최저순자산액 미달 사실의 보고 등(법 제243조 제1항, 시행령 제267조)	투자회사	금융위원회		투자회사는 그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58	운용행위감시 등(법 제247조 제3항, 시행령 제269조 제2항)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금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감독이사 투자 회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9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법 제	신탁업자	금융위원회 및 협회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 248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48조 제1항, 제2항)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 제40호	
60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법 제249조의2 제6항,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제5항)	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	금융위원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	제249조의2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년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구인 투자회사 등			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 제41의2호	
61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법 제249조의2 제7항, 시행령 제271조의2 제6항)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2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1의2호	
62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방법(법 제270조 제6항, 시 행령 제294조 제5항)	사모투자전문회사	금융위원회	1개월 (시행령 제294조제5항)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 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최 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 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다른 자(그 사모투자전문 회사와 출자관계를 가지 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3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법 제276조 제2항, 시행령 제299조 제1항)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금융위원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446조제51호	보고
64	업무규정의 보고(법 제290조)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65	업무규정의 승인·	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보고(법 제305조 제3항)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6	증권등의 관리(법 제322조 제3항)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등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67	정관·규정의 보고(법 제333조)	증권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8	인가사항 등(법 제 339조 제2항)	종합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사는 정관의 변경,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폐쇄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9조 제 2항(제357조 제 2항 또는 제 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 449조 제2항	신고/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9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법 제343 조 제3항, 시행령 제338조 제4항)	종합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
70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법 제343 조 제7항)	종합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71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법 제343조 제8항)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2	공시규정(법 제391조)	주권등상장법인	거래소등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자료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령 제36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출
73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법 제404조, 시행령 제 355조)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진술요청을 거부하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74	분쟁의 자율조정(법제405조 제2항)	분쟁당사자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요구할 수 있다.		
75	보고사항(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 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 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8 조 (제 350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 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 법률 제449조 제2항	보고
76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제419조 제2항)	금융투자업자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 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 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 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 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체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7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제419조 제5항)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 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 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 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1조제1 항, 제146조제 1항, 제151조 제1항, 제158조 제1항, 제164 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제 252조제2항, 제256조제2 항, 제261조제	보고/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2항, 제266조 제2항, 제281 조제2항, 제292 조, 제306조, 제 334조, 제353 조, 제358조, 제 363조, 제368 조 또는 제371 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 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 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 구에 불응한 자 -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률 제449조 제2항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자산양도 등의 등록(법 제6조 제2항)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	금융위원회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 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 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 6 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 한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 를 허위로 작 성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39조)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법 제34조)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동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8) 전자금융거래법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법 제25조 제1항)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거나, 교부하거나, 게시하거나, 통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51조 제1항)	보고/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시행령 제30조)
2	감독 및 검사(법 제39조 제2항)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감독 및 검사(법 제 39조 제3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51조제1항)	
4	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 한 감독 및 검사(법 제40조제3항)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휴 또는 외 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 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 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 (제29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40 조제3항의 규 정에 따른 검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1조제1항)	자료 제출
5	한국은행의 자료제 출 요구 등(법 제41 조 제1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 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법제42조 제1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1조제1항)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전자금융거래 통계 조사(법 제47조 제1 항, 시행령 제29조)	정부기관, 금융기관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기관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 제3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회계법인인 감사인	증권선물 위원회와 한국공인 회계사회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법 제4조의2 제3항)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법 제4조의4, 시행령 제4조의3)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2조의2 제4항)	보고
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법 제4조의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제2항)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의 권한 등 (법 제6조 제5항)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6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조 제5항)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조제4항)	자료 제출
8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8조 제3항)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자료 제출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1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8조)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조제4항)	보고/자료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률 제20조의2제2항)	

(3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법 제3조 제3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금융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주택저당채권의 양 도등의 등록(법 제 5조 제2항)	채권유동화회사	금융위원회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 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률 제23조)	자료 제출
3	감독(법 제16조 제 2항, 시행령 제7조)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자료 제출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자료제출등(제22조 제1항, 제2항)	채권유동화회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금융기관등	금융정보분석원장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14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보고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7조제1항)	
2	금융기관등의 고액 현금거래보고(법 제 4조의2, 시행령 제8 조 내지 제8조의7)	금융기관등	금융정보분석 원장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 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14조) 제4조제1항제 1호·제2호 또는 제4조의 2제1항·제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아	보고

II.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니한 자 -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7조제1항)	

(3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복지사업자의 의무 (법 제25조 제2항)	복지사업자	재단		복지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